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2026학년도 광주특수 교육운영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주요 변경 사항	01	5.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계획	152
★ 2026학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	03	6.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계획	162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04	7.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가·적성교육 지원계획	171
 광주특수교육의 방향	08	8.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계획	203
 중점 추진 과제	12	9.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계획	214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5	10.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지원계획	216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9	1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계획	222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44	12.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계획	228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84	13. 특수교육실무사 지원계획	232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운영계획	87	14.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계획	244
2.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지원계획	128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252
3. 특수학급 운영 지원계획	145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255
4. 통합교육 운영 지원계획	149	2. 특수교육 관련 연수(안)	258
		3. 기타 행정사항	259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6년 주요 변경 사항	쪽
[중점 추진 과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기준 변경 변경 - 상급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사본 - 재배치/전출입: 개별화교육계획 원본	50
[중점 추진 과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 변경 - (기존 인력) 연 1회 방학 중 2일 이상 확보 노력 (17차시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활용) ■ 특수통학실무사 용어 변경 변경 - 특수학교 통학차량실무사 → 특수통학실무사 ■ 신체적 피해(3일 이내) 발생 시 교직원 복지비로 치료비 지급 가능 추가 -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통학실무사, 돌봄교실전담강사 등	71 75
[중점 추진 과제]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참여방안 및 안전대책 수립 신규 - 수련활동, 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 방안 및 안전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	78
[중점 추진 과제]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광주선광학교 학교기업회계 처리 안내 신규 -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및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기업 수입금은 학교회계에 편성 - 특수학교 학교기업회계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사용하여 예·결산 및 집행 업무 처리	81
[세부 운영 계획]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운영 계획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서식 변경 및 추가 변경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서식 변경 - 진단평가 카드 삭제(※ 결과 통지 시 진단평가 검사지 사본 제공)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서식 추가 (서식10-3)	102 ~ 122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6년 주요 변경 사항	쪽
[세부 운영 계획] 특수학급 운영 지원계획	■ 직업교육운영비 변경 - 고등학교 특수학급 급당 800천원→500천원	145
[세부 운영 계획] 통합교육 운영 지원계획	■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 통합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신규 ■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공모·운영 추가 -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 유치원 (동·서부교육지원청별 1개원, 교당 5,000천원)	150
[세부 운영 계획]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계획	■ 행동중재 지원단 컨설팅 요청서 추가 - 행동중재 지원단 컨설팅 요청서 서식 추가(서식1-2)	156
[세부 운영 계획]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방침 변경 - 교내 방과후학교(늘봄학교 방과후교육)와 외부기관 방과후학교(개별지원) 중 택1 *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 방과후특기적성 개별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운영(2026.3.)	171
[세부 운영 계획]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지원계획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어린이집 이동 관련 안내 추가 - 유치원 → 교육여건을 갖춘 어린이집 전출 시 보고 - 교육여건을 갖춘 어린이집 → 유치원 전·입학 시 보고	219
[세부 운영 계획]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계획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운영 변경 - 연 10일 특별휴가 부여	244

2026학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

특수학교 (2026.2.1.기준)

학교명	설립	장애영역	학급 수(순회학급 수)						
			영	유	초	중	고	전공	계
광주선광학교	공립	지적	1(1)	1	22(1)	17(1)	15(1)	4	60(4)
광주선명학교	공립	지적	1(1)	2(2)	20(1)	9	12(1)	4	48(5)
광주선우학교	공립	지적	0	2(1)	22	10	11(1)	4	49(2)
		청각	0	0	1	1	3	0	5
선예학교	공립	지적	1(1)	1	21(1)	11	11(1)	4	49(3)
광주세광학교	사립	시각	1	4(3)	9(2)	5(1)	5(1)	4	28(7)
은혜학교	사립	지체	0	1(1)	18(4)	15(2)	7(1)	0	41(6)
총 계			4(3)	11(7)	113(9)	68(4)	64(6)	20	280(29)

특수학급 현황

과정	구분	설치 학교명(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유치원	동부	광주학운초병설유(1), 광주서산초병설유(2), 광주양산초병설유(1), 정덕유(1), 신용유(1), 건국유(1), 지한유(1), 새미르유(1), 삼각초병설유(1), 효동유(2), 광주수창초병설유(1), 참미르초병설유(1)	12	14
	서부	광주광천초병설유(1), 새별초병설유(1), 성진초병설유(1), 불로초병설유(1), 봉산유(1), 진남유(1), 예향유(1) , 빛고을유(1), 화운유(1), 방림유(1), 효천다솜유(2), 광주극락초병설유(1), 수완초병설유(1), 대촌중앙초병설유(1), 송정서초병설유(1), 운수유(2), 첨단초병설유(1), 고실초병설유(1)	18	20
	신1 갑1	계	30	34
초·중·고	동부	교대부설(1), 광주서석(1), 광주계림(2), 광주서림(1), 광주효동(3), 광주남(2), 광주동(1), 광주지산(1), 광주서산(1), 광주동산(1) , 광주양산(1) , 광주중흥(1), 광주산수(1), 광주문화(2), 광주창원초(1), 광주학운(1) , 광주동운(1), 광주용봉(1), 광주풍향(1), 광주운암(1), 광주우산(1), 경양초(1), 무등(1), 광주용산(1), 각화(2) , 태봉(2), 대자(1), 문흥(1), 오치(2), 삼정(1), 문흥중앙(1), 율곡(1), 문산(1), 오정(1), 매곡(1), 일곡(1), 삼각(2), 동림(2), 서일(1), 용두(2), 일동(1), 용주(1), 문우(1), 본촌(1), 연제(2), 양지(2), 한울(1), 신용(2) , 건국(2), 광주북(1), 지한(1), 문정(1), 광주수창(1), 참미르(1)	54	69
	서부	광주대성(1), 광주학강(1), 광주양동(1), 광주극락(1), 광주효덕(1), 광주백운(1), 광주방림(2), 광주월산(1), 광주상무(1), 광주광천(2), 광주농성(1), 광주화정(1), 광주봉주(2), 광주서(2), 주월(1), 봉선(1), 염주(1), 서광(2), 장산(1), 광주제석(1), 성진(1), 화정남(2), 진월(1), 금호(2), 송정동(1), 송정서(1), 송정중앙(2), 송정(1), 송우(2), 비야(1), 산월(1), 하남(2), 하남중앙(1), 월곡(2), 여등(2), 임곡(1), 평동(1), 금부(2), 삼도(1), 풍암(1), 대촌중앙(2), 목련(1), 송학(1), 월계(1), 정암(1), 운남(2), 운천(1), 미산(1), 유덕(1), 화개(1), 금당(1), 마재(1), 금구(1), 치평(1), 마지(1), 신암(2), 진만(1), 풍영(1), 계수(1), 윤리(1), 대반(1), 첨단(1), 어룡(2), 봉산(1), 영천(1), 월봉(1), 신창(1), 선창(2), 만호(1), 도산(1), 진남(1), 수완(1), 고실(1), 장덕(2), 큰별(1), 성덕(2), 빛고을(1), 광림(1), 선운(2), 은빛(1), 새별(1), 효천(2), 유안(2), 빛여울(1), 수문(1), 운수(1)	86	109
	신2 증1 갑5	계	140	178
중학교	동부	전대사대부중(2), 광주충장중(2), 무등중(1), 운림중(1), 운암중(2) , 우산중(1), 용봉중(1), 신광중(1), 문화중(2), 두암중(2), 각화중(1), 문흥중(1), 양산중(2), 일곡중(1), 일동중(2) , 지산중(1), 용두중(1), 신용중(1) , 광주북성중(1), 일신중(1), 광주동신중(1), 금호중앙중(1), 문산중(1)	23	30
	서부	광주무진중(1), 봉선중(2) , 상무중(1), 광주서광중(1), 광주효광중(1), 광주화정중(2) , 광주중(1), 주월중(1), 금당중(2), 송정중(1), 광산중(2), 상일중(1), 하남중(1) , 월곡중(1), 금호중(1), 월계중(1), 운남중(2), 광주동명중(1), 풍암중(1), 금구중(2) , 천곡중(1), 전남중(1), 송광중(2), 영천중(1), 신가중(2), 윤리중(1), 신창중(1), 유덕중(1), 월봉중(2), 수완중(1), 진남중(2), 산정중(1), 장덕중(1), 대자중(1), 선운중(1), 수완하나중(1), 효천중(1), 고실중(1), 정광중(1), 대촌중(1) , 성덕중(1)	41	51
	신3 증4 갑3	계	64	81
고등학교	동부	전대사대부고(2), 광주고(2), 광주제일고(2), 전남여고(1), 광주자연과학고(4), 광주공고(1) , 문정여고(1), 빛고을고(2), 조대부고(1), 송의과학기술고(2), 광주수피아여고(2), 고려고(1)	12	21
	서부	전남고(2), 광주여고(2), 광주전자공고(4), 상무고(3), 운남고(3), 풍암고(3), 첨단고(2), 상일여고(1), 수완고(2), 장덕고(1), 전남공고(1), 명진고(2) , 정광고(2), 광덕고(1), 문성고(1), 보문고(1)	16	31
	신2 증1 갑1	계	28	52
총 계			262	345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광주교육 기본 방향

교육상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교육 지표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

5대 주요시책





광주특수교육의 방향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광주특수교육의 방향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추진방향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역량 강화



중점 추진 과제

-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중점 추진 과제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중점 추진 과제

구 분	세부 추진 내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2-4. 장애학생 인권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3-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3-4. 순회교육 지원 강화 3-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3-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3-7. 특수교육대상자 늘봄·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3-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3-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3-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3-1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부서: 유초등교육과(유아교육팀, 유보통합센터)

추진목적

- 영아단계부터 장애특성, 교육 요구에 따른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26조(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의 상실)

1) 영유아기 조기발견·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 영유아기 발달 촉진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조기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체계 확대

-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검사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지원 강화

※ 유아특수교사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확대, 지역복지기관, 의료기관 연계 등

★ 참고 영유아 선별검사 제공

- *영유아발달지원 플랫폼(www.k-sied.org, 육아정책연구소)
- 우리아이발달지원단(m.woorii114.org,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보호자 동의하에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및 기타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위험*** 및 **장애영유아 실태 파악**

* 발달 지연이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어 특별한 지원과 조기 개입이 필요한 영유아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단계부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영유아기 특수교육 홍보 리플릿,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누리집 연계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중심 발달지원 협의체*** 운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 장애(위험) 자녀 양육정보 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개발·보급

- 장애자녀 보호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양육자료 개발 및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온맘) 탑재*

* 장애(위험)자녀 양육 콘텐츠 8종('24.,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생애주기별 부모 이음교육 매뉴얼 1종, 콘텐츠 10종('25., 국립특수교육원)

- 보호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온맘)**과 영유아기 발달 지원 관계기관 누리집 연계

★ 참고 장애자녀 양육정보 연계 누리집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장애유형·발달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보급**

★ 참고 교수·학습지원 자료 안내

-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국립특수교육원) 교수·학습 지원 탑재 자료 활용
- i-누리-누리과정 포털 사이트(www.i-nuri.go.kr, 육아정책연구소) 활용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영아학급 운영**

※ 학기 중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0.8.7. 시행)

- 의료기관, 복지시설 및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제공**

- 영아기 발달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가족지원 강화

- 장애정도 및 생활연령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수 **탄력적 감축 조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2조 참조

★ 참고 장애영아 양육 및 교육지원 관련 자료

- 장애영아 양육 가이드북 6종('16.,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영아용 교사용 지침서('17.,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
- 장애영아 교육활동 자료집(0~2세) 12종('20.,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영아 교육지원 운영 가이드·사례집('24., 교육부·경상북도교육청)

○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26)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2개원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일반 유아의 협력 수업 우수사례 일반화 보급

* 통합교육 협의체 구성(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정보공유, 애로사항 협의 및 문제해결 모색 등)

★ 참고 유치원 통합교육 관련 현장 지원 자료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22.,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24., 국립특수교육원)
- 통합유치원 운영 안내자료('25., 교육부·울산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과후 및 돌봄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중심 방과후과정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참여를 위한 여건 개선

* 특수교육대상유아 방과후과정 참여 시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 노력

- 2026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지원' 반영

○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격차 단계적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영아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연수 확대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영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 영아기 특수교육 및 가족지원, 장애영아 유·보·초 연계 이음교육 관련 등

- 어린이집 장애영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추진
- 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확대
 - ※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 협력과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 실시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3) 특수교육대상영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이음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를 통해 초등학교를 적령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특수교사-학부모 간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련 정보공유, 초등학교 방문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취학유예·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등·하교 및 순회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 고려
- ※ 취학 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 보류
- 유보통합포털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 '유보통합포털'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 우선 배치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 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 ▶ 입학 전 적응지원 프로그램
 - 입학 예정 장애유아 부모 대상 입학 전 사전상담,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
 - 입학 전 초등학교 사전 방문 계획 수립·추진
 - ※ 특수교육대상유아 대상 초등학교 체험 프로그램, 부모 대상 교사 상담 및 선·후배 부모 간 부모 간담회 등 운영
- ▶ 입학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 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참고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활동지원 자료(국립특수교육원, 2022)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치원 특수학급 소속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 및 관리

※ 다만,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서는 이전의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2025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3쪽 참조)

※ 유치원 나이스 사용 관련 「유아 나이스 업무안내서」 참고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간 이동 시 유치원생활기록부에 전출 및 전입학 처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 유치원 학적 처리 관련 「[부록]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도움자료」 52쪽 참고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기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학 절차 등 적극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상시 홍보
 - 행정복지센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보건소, 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단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②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지자체, 보육기관, 어린이집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특수교육교원, 통합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실시
 -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내 유치원과정에 배치 및 영아학급 운영
 - 장애영유아 부모를 위한 양육 정보 제공 및 교육자료 보급
- ③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및 초등학교 이음교육 지원
 -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충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현황 조사('26.1월)

※ 참고: 초등학교 입학 전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가이드북('23., 충북특수교육원), 「미리미리 미리학교」학부모 대상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에듀잇슈)('23.,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운영 열두달의 빛깔 「특수학급운영 길라잡이」('24. 광주광역시교육청)
- ④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배치교]**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26. 11월)
- ⑤ **[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의 나이스 사용 의무화
- ⑥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 합의 후 운영
 -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학급에서의 교육활동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유아의 참여 가능 정도에 따라 결정하되 최소 1일 1시간 이상 확보
 - ※ 참고: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사를 위한 유치원 통합교육 길라잡이(교사용, 관리자용)('24.,경상남도교육청),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지원 실행 도움자료('25., 서울특별시교육청)
- ⑦ **[유, 초, 특수학교]**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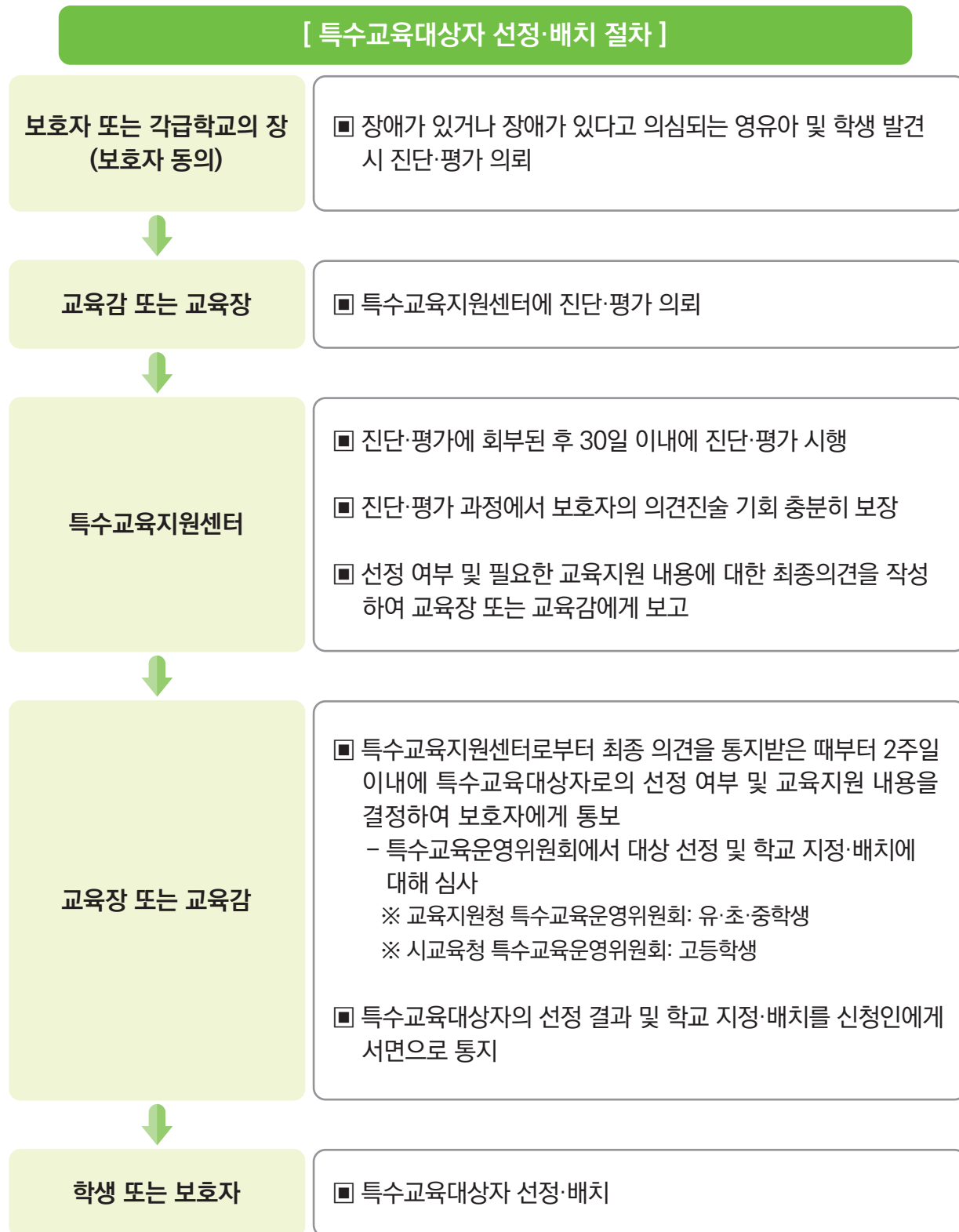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 선정·배치 절차, 관내 특수교육기관 정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가족지원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전문 의료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보호자 상담 및 면담·관찰** 등을 통해 **진단·평가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진단 실시**
- **진단·평가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
 - *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습능력검사(NISE - B·ACT), 적응행동검사(NISE - K·ABS), 정서행동검사(NISE - K·EBS) 등
 - **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습능력검사 실시 방법의 이해, 적응행동검사 바로 알기, 정서행동검사 바로 알기

2)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관계기관 및 산업체 등
- 교육(지원)청 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업무지원 센터(Wee 센터 등)와 협업**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지원 기반 마련**
 - * 행동중재, 인권, 상담, 가족지원, 재활, 수어, 점자, 보조공학기기, 보건·의료 등

4)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교육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 지역사회 기반 체계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비 확충 및 전문인력 배치 확대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역할 분담·분산 등 기능 구조화 및 광주 특수교육원 설립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 업무 관련 필수 영역(진단평가 검사도구 이해와 결과 해석 및 교육적 활용, 보조공학기기, 행동 중재, 교육과정, 등) 연수 이수, 외부 전문가 연계 교육 지원 등
 - ** 승진가산점 부여, 전보 우대, 학습휴가, 유연근무제 인정, 연수지원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등
 - ※ 순회교사 학습휴가[중등교육과-2004(2023.1.29.)] 연 5일 범위 내 부여
-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성화**하고 **전문적 교육 지원 강화**
 - * 시각 및 청각장애, 문화예술·체육, 진로·직업교육, 행동중재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장애 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평가팀*** 구성·운영, 학습 자료 제공 및 수업 활동 지원 강화
 -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의료 및 보조공학 분야 전문가, 담당 교원,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심리상담사 등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내실화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전문성 강화
 -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적합배치 가이드북」 (경남교육청, 2017) 활용
 - 진단·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외에 보호자, 담임교사로부터 과도한 구비서류 요구 금지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및 행정 지원 인력 확보
 - * 전문상담사, 행동중재전문가, 청능훈련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보행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③ 모든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필수적으로 수업 실시
- ④ 경력 교원 배치 및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자체 규정 마련
- ⑤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및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⑥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장애인학대, 성범죄 경력자 점검* 결과 보고('26. 하반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0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급))

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관련부서: 행정예산과(고·특수학교설립팀)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다양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교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국정과제 101-4(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부담 완화 및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 하는 정원 초과 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
 -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 ※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우선 설치 계획 수립
 - 장애유형별(시·청각장애 등) 또는 특정 분야별 중점 특수학급 등 학급 운영 다양화

2)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와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교급별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 대학·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운영모델 확산
 - 직업교육, 예술, 체육 등 분야별 중점 특수학교 및 특성화특수학교* 운영 확대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참고 분야별 중점 특수학교 추진 사례

▲대구예아람학교('21. 개교, 예술) ▲대구이룸고등학교('22. 개교, 직업) ▲국립공주대 부설 특수학교('24. 개교, 직업) ▲대전서남부학교('26. 개교 예정, 직업) ▲전북 동부권 특수학교('26. 개교 예정, 직업)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28. 개교 예정, 체육)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28. 개교 예정, 예술) ▲울산 제3공립 특수학교('28. 개교 예정, 체육·예술·직업) ▲전남 온미래학교('29. 개교 예정, 직업)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수요와 학급당 학생 수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 특수학교 신설 시 기존 학교와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교급별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 택지개발 예정지에 학교 용지 확보, 폐교 부지 활용 등 부지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②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 ③ 정원 초과 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학급 설치 기준* 준수 철저
 - * 학급당 학생 수 유 4명, 초·중 6명, 고 7명 초과 시 학급 증설
- ④ [각급학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에 협조

1-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정원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교원 연수 확대 등 전문성 신장으로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제5호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국정과제 101-4】(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정원 확충

- 시·청각장애교육 전문성 등 사회적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일반학교)에 교원과 학생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 전보 유예 방안 마련
 - * 점역·교정사/보행지도사, 한국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 능력 평가) 등
- 공간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이 불가능하거나 학기 중 재배치 등에 따라 정원 초과 학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등 직무부담 해소를 위한 교원* 추가 배치
 - * 정규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강사 등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보직교사(특수교사) 임명 권장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학교 단위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하는 학교문화 조성
 - '권역별 특수교육 협의회(연구회)'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 운영 관련 정보 공유 등 교실 수업 개선

※ 인근 지역별 특수학급(교) 담당교사 중심의 협의회(연구회) 구성·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확대

–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국립특수교육원】 ▲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 / 3-4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교과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신규·원격)

– 학교급별 통합교육 및 학급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국립특수교육원】 ▲ 함께 행복한 학교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신규·원격)

–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국립특수교육원】 ▲ 시각장애 교직원 K-에듀파인 ▲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 지도 ▲ 피질(뇌성)시각장애·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 ▲ 의료지원 인력, 병원학교 교사 등 역량 강화 ▲ 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한국수어의 이해와 활용(신규·원격)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관련부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교원·법무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단위 개인상담, 집단상담, 치유크amp 등 다양한 유형의 심리상담 지원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 참고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고시 및 메뉴얼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23.9.1. 공포·시행)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24.4.)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25.2.) ▲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24.10.)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25.5.) 참조

– 산림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사 마음 건강 회복 연수 확대

* 숲체원(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

※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교원을 위한 동·하계 산림교육 체험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 특성별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②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통합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지원
- ③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 ④ 권역별 특수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⑤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가급적 경력교사 배치 및 신규교사 배치 시 경력교사 멘토링 지원
- ⑥ [각급학교]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보직교사(특수교사) 임명 권장
- ⑦ [각급학교] 정보공유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권역별 특수교육 협의회에 적극 참여
- ⑧ [각급학교] 국립특수교육원, 광주교육연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에 적극 참여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 교사 자격 전환 연수 과정」에 기간제 교사 연수 참여 협조

0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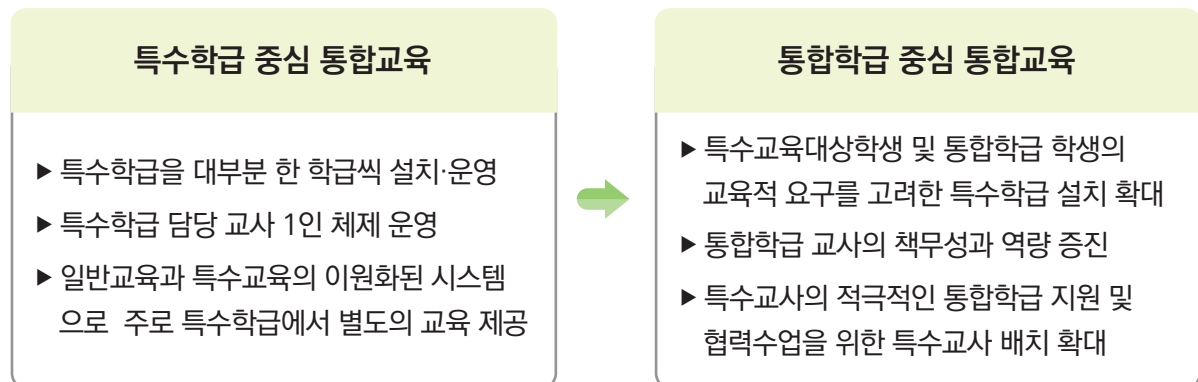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101-4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교 통합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 목록 마련 및 적용
-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등 통합학급의 보편적 학습설계 적용을 위해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조정* 노력

*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1~5명 감축 노력(교육부고시 제2023-34호, 2023.9.1. 시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개정안)(2025.2.)

○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통합교육 인력풀 구성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관계기관, 대학 등과 상시 협조 체제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 권장
-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참고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역할

- *(위원 구성)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로 위원 구성
* 대학교수, 특수교사, 통합학급 담당교원,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지원전문가, 보호자, 학교관리자, 치료사, 교육전문직 등
- *(역할)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진단·평가 기능,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학습·정보 지원 기능과 연계 운영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멘토)과 초·중·고교 특수교육대상학생(멘티)을 1:1로 연결하고, 멘티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수업, 학교 행사, 체험학습, 기타 생활 적응 등)을 지원

-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양성 대학과 연계한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등 교육활동 지원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를 확대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2)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모형개발 '통합학급 협력 수업'운영

- 통합학급 협력수업 모델 개발 및 일반화를 위한 통합학급 협력 수업 운영
- 통합교육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특수-일반교사 협력교수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운영
※ '학교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모델 개발'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19) 활용

○ 특수-일반교사로 구성된 특수(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 특수-일반교사로 구성된 특수(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특수(통합)교육 운영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 제4회 광주수업페스티벌(특수) 내 통합교육 분과 운영

3)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활용

- 학생 및 교원의 장애 인식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위해, 통합교육 실시학교 대상 '학교 장애인식 검사' 적용 확대

※ '학교 장애인식 검사' 참여 방법 및 활용 방안(연계 프로그램 등)은 별도 안내 예정

'학교 장애인식 검사' 기본 구성 내용

구분	내용		
대상	• 일반학교 초등학생(3~6학년)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각 5종		
구성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4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7가지 상황 41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5문항
활용	1 장애인식수준 진단	2 지표별 수준 확인	3 결과 활용
	온라인 검사 시스템* 활용 대상자별 인식지수 진단 *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시스템 주소 추가 예정)	• (상) ACES • (중) MIDD • (하) RASE	지표별 인식 수준 결과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적용 ※ 예) '실천' 지수 낮을 경우, '장애·비장애 상호작용 프로그램 적용' 등

※ 연계 프로그램: 학교 장애인식 검사 지표별 · 학교과정별 40개 쇼츠 콘텐츠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대학 연계 지원 확대
- ③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교에서는 학생 및 학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통합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④ [각급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 ⑤ [각급학교]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포함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정원 감축 권장
- ⑥ [각급학교] 특수학급 운영 관련 자체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희망학교에서는 학교 요청 컨설팅 실시(155쪽 참조)
- ⑦ [각급학교] 통합교육 실시학교(초·중·고) 대상 '학교 장애인식 검사' 적용 안내(별도 안내 예정)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추진목적

- 교원의 통합교육 연수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에 대한 현장 역량 강화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체계 강화로 통합교육 활성화 도모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101-4】(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감,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1과목)로 편성하여 매년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

※ (근거)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 (통합학교 교(원)장·감 연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원)* 교(원)장·감은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연간 3시간 이상 이수**

* 2026.4.1.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원) 전체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포함. 단, 법정 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은 연수 실적에 미포함

- (통합학급 교사 연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이수(60시간 이상 권장)*, 특히 순회교육 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10년 이내 연수 이수 누적 실적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권장

- (특수학급 교사) 학교과정별 · 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포함 권장

* 보편적 학습설계, 협력교수, 장애공감프로그램 운영 등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통합학급 협력수업’ 운영 성과 일반화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학교과정별 보편적 학습설계, 문화예술체육, 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모형 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에듀넷: <http://www.edunet.net>) > 연구 > 연구학교 > 연구학교 자료)

– 학교 구성원 간 통합교육 공감대 형성·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통합교육연구회 조직·운영 활성화**

– 보편적 학습설계 및 장애공감 교육활동 등 통합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통합교육 담당 교원 연수 운영**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 참고 유치원 통합교육 관련 자료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교육부·인천교육청, 2017)
-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교육부·전북교육청, 2017)
-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국립특수교육원, 2018)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21)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국립특수교육원, 2021)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국립특수교육원, 2022)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일반학교 교(원)장·감이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집합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워크숍 포함) 지원
 - 교직원 대상 연수 시, ‘장애이해교육’에 ‘장애인교원 이해’에 관한 내용 포함
 - ※ 「교육부-함께하는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단체 협약」 제34조, 제35조
- ②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워크숍 실시
- ③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연수 이수자 등 우선 배치
- ④ 통합교육 연구학교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성과 일반화
 - ※ 2026 통합교육 연구학교 성과공유회(26.12. 예정)
- ⑤ 통합교육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운영 지원 및 성과 공유
- ⑥ **[각급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연수 이수자 등 우선 배치
- ⑦ **[각급학교]** 예비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 관련 내용 포함
- ⑧ **[각급학교]** 일반학교 교(원)장·감 특수교육 관련 집합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 당해 연도 연수 실적은 차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⑨ **[각급학교]**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관련 집합·원격연수 15시간 이상 이수(추후 조사 예정)
 -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교육 연수 과정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권장
- ⑩ 2026 통합교육 핵심교원 연수(주관: 충청남도교육청)

추진목적

•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조성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19. 10. 15.)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교육부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장애이해교육 2회 이상 실시 안내
- 교육과정 연계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발굴·확산
- 유·초·중·고 일반교사 대상, 교과용 도서(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와 연계한 다양한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 운영
- 장애 당사자 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학생 동아리 운영 권장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장애인의 날(4.20.)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유(유아용 3D 애니메이션), 초(대한민국 1교시), 중·고(장애이해교육 드라마)
※ 초·중·고교 특별기획방송 활용 수업 시 2차시 분량의 시간 확보 권장
-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인력풀 구성 및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장애예술인(단체) 초청공연 등] 지원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을 이용해 교직원 대상 교육 결과를 실시 기관에서 자체 제출(장애인식개선교육 후 30일 이내)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 학교 자체 행사* 등을 활용해 전문강사 초청, 우수 콘텐츠 활용, 문화예술공연**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 실시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학부모 연수 등

** (예) '23년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위리(Wiri)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경기도교육청)

★ 참고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자료

-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공감 자료 활용(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듀에이블-장애공감)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 활용
- 장애인 공연단 문화공연 행사 콘텐츠 등(예: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보꼬 아 보꼬’ 음악회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교육 자료실 내 인권 자료 활용 등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학교구성원, 지역민 대상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을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하는 동아리

★ 참고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활동 사례

- ▲콘텐츠 제작(오디오북, 베리어프리 디자인, 작곡, 영상 제작·공유, 순수창작 도서, 팸플릿·포스터, 카드뉴스) ▲문화예술 연계(독서토론, 독후, 연극, 공연, 영화감사)
- ▲장애·비장애 통합활동(e-스포츠, 드론 축구대회, 퍼즐동아리, 창작영상 제작, 영화감상, 요리, 바리스타, 카페 운영) ▲법·제도 탐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탐구, 인권교육) ▲캠페인(방송부 연계 공감라디오 on-air, 공모전, 미션 챌린지, 장애인스포츠 체험부스 운영, BF 캠페인, 교내 점자부착) ▲기타(점자 명함 제작, 수어 배우기, 사랑의 편지)

4)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기반 마련

-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 실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제정('19.10.15.)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예산 편성 및 운영
※ 2026 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참조

5)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전문가 콘텐츠 개발, 학생·교직원 공모전 및 백일장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
- 인터넷, 방송, 인쇄물을 활용한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을 이용해 결과 제출(교육 후 30일 이내)
 - ※ 광주교육연수원에 개설된 해당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 ② [각급학교] 모든 학교(유치원 포함)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을 이용해 결과 제출(교육 후 30일 이내)
 - ※ 광주교육연수원에 개설된 해당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③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권장)
 -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등에서 전문강사, 우수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 실시
- ④ [각급학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대상(전교생)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을 실시
 - ※ 장애이해교육 시, 특정 장애유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급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을 고려해 다양한 장애유형별 이해교육 실시
- ⑤ [각급학교]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제출 (11월)
- ⑥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비 편성 및 운영
 - ※ 관련 근거: 2026 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⑦ [각급학교]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교육부·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및 '제4회 전국 장애공감포스터 공모전(국립특수교육원)' 안내 및 참여 독려
- ⑧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확대 운영

2-4

장애학생 인권 강화

추진목적

- 장애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성)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3항,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운영
 - * 사용자 위치 기반(GPS) 기관 정보(법률, 상담, 교육, 의료 등) 제공 및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 (국립특수교육원·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사안 접수 및 조치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지원기관 정보 등록* 및 사용자 안내·홍보
 - * 시도교육청 기관별 계정으로 지원기관 직접 등록 및 현행화
 -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운영
-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참고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개요

- (목적)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응 지원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내용) 2025년 2학기부터 2026년 1학기 동안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 조사표는 3개 영역(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으로 구성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초등학교 4학년 ~ 전공과) 및 보호자, 교원
- (시행) 17개 시도교육감(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 관계부처(청) 주관, 장애학생 인권 관련 실태 점검 협조

인권실태조사(온라인) 결과에 따른 후속 업무

- **(교육(지원)청)**
 - 온라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단위학교로 안내
 - 단위학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이행 여부 수시 점검
- **(단위학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대응교육 실시
 - 학교차원의 안전대책 마련 및 여건 개선
 -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인권실태조사(대면) 결과에 따른 후속 업무

- **(교육(지원)청)**
 - 대면 조사 서술형 문항 응답 데이터 및 후속 절차 단위학교 안내
 - 단위학교의 (의심)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지도·점검
- **(단위학교)**
 - 서술형 문항 응답 데이터 관련 (의심) 사안 조사 실시
 - ※ 조사 과정 중 학생 신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안 관련 가·피해자에 적절한 후속 조치
 -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원책 마련

★ 참고 관계부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 **(보건복지부)**
 - 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시설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면담조사 포함
 - ②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 **(병무청)**
 - 정기 복무점검 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면담조사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 참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구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역할 명시
 - **(필수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연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특수학교(급) 교장(감) 또는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학교폭력·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 **(기타위원)**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 **(역할)** 현장지원(정기/특별), 교육 및 연수, 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직무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 현장지원(정기지원, 특별지원) 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연수와 가·피해 학생 대상 학교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 지원 실시

* 개별 맞춤 지원, 지역 전문기관 연계 등

-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특수학교는 매 학기 1회 이상) 일반·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 및 장애학생, 교사 상담 실시

※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이 필수 참여하되, 팀장(계장) 참여가 곤란할 경우 팀원 참석 가능

-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월 현장지원 결과 제출(매월 5일까지) → 교육청 결과 승인 처리(매월 15일까지)
→ 국립특수교육원 시도별 취합·점검(매월 30일까지) → 교육부 보고(매월 말일)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협의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협의체 구성 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활용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유·초·중등학교의 관리자·교원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연수를 집중 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토 조성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 **함양**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참고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참고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교육자료실: 별별이야기 등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장애공감: 인권 교육 자료, 장애공감 교육자료 및 장애공감 공모전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 관련 자료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학습 장애)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규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자료* 신규 보급
 - *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중·고) 기반 성 인권 교육 콘텐츠('26., 국립특수교육원)
- 제46회 장애인의 날 맞이 「2026 장애 인권 주간」운영
 -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감 서한문 게시
 -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식 개선 기여 유공자 표창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2026년 시교육청 인권침해 예방·대응 계획 수립 및 제출('26.1.)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26. 3.)
- ③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교육(지원)청]**
 - 온라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및 관내 각급학교로 안내, 각급학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이행 여부 수시 점검
 - 대면 조사 서술형 문항 응답 데이터 및 후속 절차 각급학교 안내, 각급학교의 (의심)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지도·점검
 - **[각급학교]**
 - 온라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대응교육 실시, 학교차원의 안전대책 마련 및 여건 개선,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 대면 조사 서술형 문항 응답 데이터 관련 (의심) 사안 조사 실시 및 사안 관련 가·피해자에 적절한 후속 조치,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원책 마련
 - 교원·보호자 대상 실태조사 안내 및 안내 영상(콘텐츠) 상영 등 홍보 강화
- ④ 매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 결과 보고(시스템 입력)
- ⑤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언어폭력·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포함) 실시(연간 3차시 이상)
 - 시도교육청 국가 시책 추진 평가 점검 지표* 항목에 포함
 - * 4. 학교공동체 회복(4-3. 학교폭력 근절 노력)
 - ※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 실행계획 안내」 참고
- ⑥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신고)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홍보 및 지역 관계 기관 현행화 추진(수시)
- ⑦ **[각급학교]** 장애학생 대상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 학교폭력 발생: 관할 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안 동시 보고

0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관련부서: 미래교육기획과

추진목적

•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초·중등교육법」제29조의 2(교육자료)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AI교육 중심의 **활용 환경*** 구축 및 관련 기기** 보급 확대

* 스마트패드, 노트북 등 AI교육을 위한 기기 구비(26학년도 초등 5,6학년 디바이스 보급), AI스피커 등 AI활용 교육 환경 조성 등

** SW교육 교구(코딩봇, 모듈형 교구 등), AI형 스마트 기기 등

- 의사소통, 정서안정 및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기기 활용 확대**

※ AI기반 챗봇, 음성 인식 스피커 등(커뮤니케이션 스킴):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대화 문맥 및 상황인지 분석이 가능하여, 일상생활 장면(장소, 대상)별 의사소통 훈련 시 활용

- 장애학생의 **기초 학습 능력 신장 및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 **기본 교육과정** 기반의 **AI·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확대**

○ AI기반 에듀테크 활용 우수사례 발굴·확산

○ AI 활용·융합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AI 교육 선도 특수학교(급)’ 지정·운영을 통해 미래교육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AI 교육 전문가 양성, AI 교육 컨설팅 및 성과 관리 실시, AI 융합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특수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사례 발굴 등

※ 성폭력 발생: 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마음·사회정서팀), 관할 교육지원청 체육인성 교육지원과,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안 동시 보고

※ 유치원 (성)폭력 발생: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유아교육팀),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사안 동시 보고

※ 전담기구에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장애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기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권고

※ 전담기구 심의시 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 청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 피해 또는 가해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⑧ 「장애인복지법」제59조 3, 제59조의 4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연 1회 이상 확인·점검

⑨ [각급학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연 1회(1시간) 이상 실시

※ 광주교육연수원에 개설된 해당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⑩ [각급학교] 일반학교의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 포함 하여 수립

※ 특수학급 운영 계획에 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 및 성교육 계획 포함하여 수립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 활용

○ 장애학생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콘텐츠* 보급**

* 무인정보단말기 활용 콘텐츠(요식업, 교통, 공공기관, 유통점포, 문화생활시설, 의료기관), 기본 교육과정 일상생활 활동 VR콘텐츠(신체활동, 여가활동, 자립생활)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 에듀테크' 자료 활용

○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선도교원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

*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활용하기 ▲SW·AI교육 수업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만들기 ▲AI 활용 특수교육 수업하기 ▲AI기반 에듀테크 활용하기 등

** ▲장애유형별 디지털 북 활용하기 ▲교육과정과 SW, AI 융합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

★ 참고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콘텐츠'

• 국립특수교육 누리집(nise.go.kr) > 에듀에이블(eduable.net) > 멀티미디어북, 에듀테크

멀티미디어북	• 기본 및 공통 교육과정 교과* 기반 영상·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 SW 코딩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메이커융합 및 AI융합교육 지원 자료
실감형(AR/VR) 교육자료	• 기본 교육과정 교과* 기반,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교육콘텐츠 * 과학, 일상생활(신체·여가) 활동
무인정보단말기 교육자료	• 교과 연계, 다양한 업종*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활용 교육콘텐츠 * 공공기관, 유통점포, 문화생활시설, 의료기관, 요식업, 교통

2)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 기본 교육과정 기반 초등3~4학년 수학, 3~6학년 국어 교과 개발 완료(국립특수교육원)

** 교육자료 특성상 활용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한 학교장 최종 승인

○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열린배움터)* 운영**

*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맞춤형 수업 설계, 학습 현황 관리, 보완대체의사소통 서비스 등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에듀에이블)** 운영

- **사용 경험 제고와 편의 증진**을 위한 UI/UX 재구성, 웹접근성 강화 등 **기능 개선**

※ ('25.10. 기준) 교수·학습 자료 42,677종 제공, 회원 수 48,333명

3)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 체험·실습 중심의 SW·AI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민간 인프라* 활용 및 방학 중 장애학생 SW·AI캠프 등 운영**

* 지역 SW교육 전문기관 활용,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대상 SW대회 개최 등

○ VR·AR 콘텐츠, AI 로봇 등 **에듀테크 기반 체험 기회 확대**로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실감형 체험교실' 등 활용

* 버스와 트럭의 구조를 변경해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댄스로봇, 홀로그램, 가상 현실 모션 플랫폼을 이용한 어트랙션, 확장현실(XR) 등 첨단기기를 탑재한 이동형 체험공간

○ 특수교육지원센터 '메타버스(가상공간)' 운영 및 '실감형 체험 콘텐츠'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 교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맞춤형·참여형 교육지원 확대

★ 참고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시교육청- 메타버스(가상공간) 홈페이지

시교육청- 상상누리터

서부교육지원청-상상 체험교실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특수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운영, 연구회 지원
* 디지털 북 활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AI 융합 교육 방법 등
- ② 특수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연구회 지원, SW, AI 선도 교원을 통해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역량 연수, 학교별 적용 사례 안내 등 컨설팅 제공
- ③ 지역 내 유관 및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해 장애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 ④ **[각급학교]** 장애유형별 디지털 리터러시, 실감형 콘텐츠, 일상생활활동 콘텐츠, 메타버스 활용 교육자료 및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적극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 [에듀테크]
- ⑤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기반 **초3~4수학, 초3~6국어 AI·디지털 자료 적극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승인함을 원칙으로 함.
- ⑥ 실감형 콘텐츠, SW·AI 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
- ⑦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에듀에이블) 활용 및 홍보



추진목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확대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부 고시 제2015-3호(교육부 고시 제2022-3호 일부개정 포함),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학교의 특성 및 여건,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초1~6, 중1~2, 고1~2】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공통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중3, 고3】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공통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고1~2】 (기본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학점의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교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자율 이수 학점의 30% 이상을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권장

* 【고3】 (기본 교육과정)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 교과로 편성 가능

2)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확대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장애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통합교육용 교수·학습자료 등 활용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2026학년도 적용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초5~6, 29책) 신규 보급

※ 【중3, 고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활용

-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보급을 통한 교육과정적 통합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군 국어, 수학, 사회 교수·학습 자료(서책 6책, 전자저작물 6종) 보급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군 국어, 수학 교수·학습 자료(서책 4책, 전자저작물 4종, 예정) 개발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용도서 활용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대상 연수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실시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기본 교육과정 성취수준 개발 자료* 활용

* 고등학교 성취수준 개발 자료 1종 보급, 중학교 성취수준 자료 개발('26., 국립특수교육원)

5)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지원 확대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운영 모델학교**를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지원

*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 특수학교

**('26.) 제주(3교)

-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학부모 연수*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3-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추진목적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절차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구성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는 학기마다 실시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상급학교 진학: 사본, 재배치 및 전출입: 원본

※ [출처]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지원' (2022, 국립특수교육원)

- 지역 및 학교 현장에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컨설팅, 학부모 연수*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기본 이해는 교육부 제작 자료(예: 교육TV 등)를 활용,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별도 적용 사항을 중점으로 안내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용 자료 활용*** 및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24,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방안('24, 교육부),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도움 자료 2종('24, 교육부·경기도교육청,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기본 교육과정 성취수준 개발 자료('25,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이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등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이해와 실제(원격)

- 특수학교의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지원

- 2026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교육환경 구축비' 반영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특수학교(급) 컨설팅 실시,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국립특수교육원)' 참여

- ②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지원

- ③ 특정 교과(체육, 예술 등)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점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④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연구·연수 및 현장 지원 활성화

- 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제출('26.3월)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구성·운영계획 포함

- ⑥ [각급학교]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특수학급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 ⑦ [각급학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 계획 포함

- ⑧ [각급학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 ⑨ [각급학교] 특수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 적극 참여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교육과정과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 유치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안내 및 운영 사례 활용
 - ※ 유치원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육진단 및 평가 방안 연구('25. 국립특수교육원)
- 교과 또는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예시** 등 현장성 강화 자료* 활용
 - *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25., 국립특수교육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안내 자료 보급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교육부고시 제2023-34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3항)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인근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관리 강화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강화
- ③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연수·컨설팅 내실화
- ④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구회 운영 지원,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우수사례 확산
- 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여 처리 * 안내
 - * (참고)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지원 자료 개발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22)」
- ⑥ **[각급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 ⑦ **[각급학교]** 일반교육교원과의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방안 강구
- ⑧ **[각급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 보호자 참여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 준수***
 - * 예)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관한 사항,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결과 등에 대해 보호자와 공유
- ⑨ **[각급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지원 사항** 등을 포함, 학교 내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의료지원 사항 포함**
- ⑩ **[각급학교]** 학년의 시작일(3.1.)로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⑪ **[각급학교]**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⑫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 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 등을 14일 이내에 송부***
 - * 상급학교 진학: 사본(원본대조필) 송부(최근 1년)
 - * 재배치 및 전출입: 개별화교육계획 원본(전학년) 송부
 - ※ 원본 송부 시 최근 1년간 개별화교육계획 사본(원본 대조필) 학교 보관
 - ※ 개별화교육계획을 NEIS로 전송할 때에는 다운로드 후 비전자문서 등록 및 출력물 보관
 - ※ 개별화교육계획 비전자문서 등록은 각 학교급 과정 졸업 이후 실시
 - ※ 국가기록원 '학교공동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표'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보존 기간은 30년임



추진목적

-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 등에 대한 진단·평가 및 적절한 교육 지원으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재택·순회교육 실시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순회교육 실시
- ※ 일반학교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확대
- 순회교육 담당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교육의 지원 범위와 내용 결정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참고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배치 학생 지원 모델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비고(공통)
교육과정적 지원	협력교수	통합학급 교사의 교수적 수정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행 지원 ·담임교사 자문
사회적 관계 지원	또래관계 지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학생 및 교직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자원 연계 지원	특수교육대상 조기발견 지원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 '2026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순회교육(75쪽) 참조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하여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통학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하도록 유도
- ※ 순회교육 학생 중 학교 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 ②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③ [특수학교] 순회교육은 학교교육계획 내 반영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 제공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 ④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은 센터운영계획 내 반영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순회교육 제공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학생당 수업 지원 횟수 조정 가능
 - ⑤ [특수학교]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관련부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체육교육팀)

추진목적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재능 발굴 및 여가생활 다양화 도모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1인 1문화예술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문화예술 체험활동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
 - 문화예술행사(공연, 전시회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국내교류 활동**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향유권 보장**
 -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계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기회 제공**
 - ※ 【한국관광공사】열린관광지 연계 취약계층 나눔여행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과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방안** 마련 권장
 - 장애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보급
 - ※ (음악활동) 광주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합창동아리, 꿈꾸는 문화예술제 등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위한 **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건강증진 도모**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력회복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지역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25. 20개소) 등과 연계·협력

- 관계기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개발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적극 장려

* 장애·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스포츠(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 통합체육 교구나 운영비가 필요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통합체육수업 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 적극 활용

- 지역 및 장애 영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미래 체육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 특기와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 제공 확대**
 - 체육 인재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여적극 권장**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은 학교의 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 가능**(「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4.10.18.)

* 기준 성적의 하향,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결과 반영, 학생 개별 맞춤형 대체 과제 제시 등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연수 확대**
 - 통합체육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수업 지원**
 - * 【대한장애인체육회-국립특수교육원】 초·중등교사, 특수교사 대상 통합체육 연수 및 우수 교사 해외연수
-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대상 특수교육(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관련 직무연수 실시**
 - ※ 스포츠강사 등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인력이 직무연수를 이수할 경우, 재채용 시 우대 권장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장애학생 체육인재 발굴을 위한 장애 관련 체육대회 적극 참여 지원
- ②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체력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③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초·중등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④ 관계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등)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및 홍보
- ⑤ [각급학교] 학교별 예술동아리, 영화·연극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 ⑥ [각급학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 ⑦ [각급학교]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동아리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손에 잡히는 PAPS-D 핸드북' 및 영상 활용(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및 유튜브 탑재)

3-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목적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건강장애 등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적 지원 및 행동중재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학생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등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2.6.)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에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 ※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자료' 참고('23.7.7.,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2761)
-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 운영
 - ※ 【국립특수교육원】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이해와 지도(신규-원격연수)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9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해 교내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 지원인력 배치·확대**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 건강·안전에 관련 컨설팅 제공**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에서 지원받는 **의료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예시) ▲가래흡인(석션) 지원 시간과 횟수, ▲섭식 지원 형태와 방법, ▲호흡 상태, ▲복용 약물 종류 및 방법, ▲의료적 지원 제공자 등

-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의료적 지원 인력**(의사, 간호사, 치료지원 인력)의 **참여와 소견 반영**

- 의료 지원인력을 통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실시**

★ 참고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참고자료

- 중증소아 돌봄제공자 교육매뉴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특수학교 학생 건강관리 매뉴얼(서울시교육청, 서울대학교병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 가이드북(인천시교육청)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가이드북('24.,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 교내 의료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제도 개선 사항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948(2022.9.8.) 참조)

① 의료기관과의 계약 간소화

- **(애로사항)** 교내 의료적 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며, 공익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이끌어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 난항
- **(제도개선)**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제123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2.8.31.)에 따라 교육청(학교)에서 의료기관과 계약 시 수익계약 적용 검토 가능

②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처리

- **(애로사항)** 의료인력의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주체 불명확
- **(제도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률 검토 결과('22.8.4.)에 따라 교내 의료행위 중 사고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검토 가능

③ 교내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인력의 범위 확대

- **(애로사항)** 「의료법」 상 의사, 간호사 등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교내 배치에 한계
- **(제도개선)** 복지부 유권해석('22.3.17.)에 따라 간호사 보조수행시간조무사도 의료 행위 가능

④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적 지원 근거 마련

- **(애로사항)** 학교 내 간호사 배치 등 의료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대한 학교와 의료기관의 소극적 참여
- **(제도개선)**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신설로 교육감(국립학교는 학교장)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 가능('24.2.27. 공포, '25.2.28. 시행)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및 대체학습 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설치·운영**

* (시각장애) 점자·확대문자(디지털 형태 포함) 등 / (청각장애) 수어·자막 서비스 등

-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역할 강화**

-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한국수어, 점자·보행 지도, 시·청각장애교육 이해 등

-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시·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 및 교육자료 접근성, 교육환경 등 교육실태 파악 및 적절한 교육 지원* 강화

* 수어·문자통역, 점자·확대 교재, 보조공학기기(FM 송수신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지원

- 청각장애특수학교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수어 연수 및 학생 수어 교육 강화(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

*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마련,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 지원

- 시청각장애(deaf-blind) 학생 평가지원 자료집 현장 활용 지원('24., 광주광역시 교육청 개발)

4) 건강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

-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병원학교 추가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병원학교 설치·운영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 (한국교육개발원-국립특수교육원 연계) 병원학교 및 스쿨포유(초등)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 【전국병원학교 누리집】 <http://hospital.s4u.kr>
- 건강장애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안 마련** 및 학습 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신청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지원 내실화
 - ※ 【한국교육개발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콘텐츠 개발 및 원격수업 운영
 - ※ 교육디지털원피스 도입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학적 관리의 편리성 및 연속성 확보
 -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서 **학적 처리**
 - **(출결)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 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 초등은 1일 1시간 이상 중등은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 시 출석 인정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을 원칙**(병원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대상자 등 포함)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의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병원학교 학생 등을 위한 대학생 보조강사 및 전문상담 지원** [교육감 공약사업 22]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위탁 건강장애학생 맞춤형(학습·심리·정서)멘토링 운영
 -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는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 ※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과 또래 친구를 포함하여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권장
 - ☞ (예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5) 행동중재 지원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에 대해 체계적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전문가 연계 강화 및 지원 환경 조성 확대
 - 전문적 지원체계 중심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확대
 - * (구성) 교수, 의사, 치료사, 상담교사, 특수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 (역할) 컨설팅, 교사 연수, 학부모(가족) 상담·교육, 팀 사례 회의 주관·참여, 상황별 진단을 통한 전문기관 연계, 가족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 문제행동 진정,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따른 행동중재계획 실행을 위해 특수(일반)학교 내 심리안정 환경* 조성

★ 참고 행동중재 지원 환경조성 사례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교원, 학부모의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대학 연계 실습중심) 및 프로그램 운영
 - 대학 협력 실습 중심의 연수과정* 개발·운영, 민간자격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 등과 연계하여 양성 방안 다양화 등 전문성 제고
 - * (운영과정) 전문자격증 과정, 집중 연수과정 등
 - ※ 행동중재전문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안) 개발(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연구보고서)
-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강화
 - 학교,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 정보·상담 제공 및 자녀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 참고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참고자료

-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자료(서울시교육청, 2021)
-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운영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20)
- 장애학생 위기상황별 대처 행동 매뉴얼(인천교육청, 2019)
-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부산교육청, 2014)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가이드북 2종 개발(충북교육청)
- 함께 행복한 학교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원격 연수(국립특수교육원)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특수학급) 행동중재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강화
 - 학교,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 정보·상담 제공 및 자녀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가족(부모, 형제) 지원 프로그램 제공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진단·평가 및 선정
- ②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
- ③ 특수학교가 지역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의료적 지원 및 행동중재 연계망 구축 지원
- ④ 교내 의료인력, 병원학교 교원 대상 연수 운영(국립특수교육원) 안내 및 추천
- ⑤ 특수교사 및 유·초·중등교사의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참여 안내
- ⑥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행동중재 지원 분야) 운영 및 관리 계획 제출('26. 3.)
- ⑦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과 연계한 '행동중재 지원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⑧ [각급학교]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 보건교사 대상·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 실시
- ⑨ [각급학교] 건강장애 신청 서류 제출 전,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상담 후 선정·배치 서류 제출
 - ※ '건강장애학생 지원계획' 참조
- ⑩ [각급학교]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 ※ 매월 1회 이상 학부모 또는 학생과 교육상담 실시
- ⑪ [각급학교]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학교(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 ⑫ [각급학교]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컨설팅 요청 및 협력 지원
 - ※ 학생·교사의 안전 및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체계적·전반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하여 개별 학생행동중재계획 수립
- ⑬ [특수학교] 의료적 지원을 시행하는 학교는 학교 자체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하고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 구축 운영
- ⑭ [특수학교] 특수학교 행동중재지원팀 운영 및 학교행동중재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 실시
 - ※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24.10.), 특수·일반학교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북 (2종) 참고



관련부서: 유·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 시민협치진흥원 지역교육협력과

추진목적

- 장애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늘봄·방과후·돌봄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도모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국정과제 101-2】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 및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1) 늘봄·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 초등 늘봄학교 지원(26. 초1~2학년)에 따라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현장 지원단 구성 및 방문·점검·컨설팅 지원 등)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강화

※ (초1~2) 희망학생 대상 정규수업 시간 외 매일 2시간 이내 무상 맞춤형교육 지원

-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방학 및 학기별 운영 준비 상황 점검 및 지원**

* 연초에 2~5명 내외로 구성하여 신학기 전후 집중 지원

** ▲수요조사 현황 ▲공간 및 시설 ▲실무인력 및 지원인력 ▲프로그램(강사 포함) ▲안전관리 ▲홍보·소통 ▲늘봄지원실과 행정업무 협력 컨설팅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발달 수준과 특성, 희망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 교내·외 우수 자원 발굴·연계 지원 확대

★ 참고 맞춤형교육 지원 사례

- 초등 저학년의 수준과 흥미, 보호자 희망 수요를 고려하여 요일별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운영
 - ※ (월) 튼튼체육교실 (화) 맛나 요리교실 (수) 발달놀이교실 (목) 손말수어교실 (금) 상상미술교실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늘봄 강사 및 지원인력 확보하여 운영 내실화 도모
 - 대학 연계 강사 및 프로그램 확보, 자원봉사자 활용 /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지원인력 지원/ 온마을다봄터 외부위탁기관 활용 등

- 특수학교 늘봄실무사 배치·운영(24.~)에 따른 늘봄실무사 대상 컨설팅 운영으로 늘봄·방과후·돌봄 내실화 추진

- 늘봄학교 실무 인력 대상 행정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늘봄지원실과 특수교사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돌봄교실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협력 사례) 학기 초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학생 특성, 생활지도 사항, 문제행동 대처방안 등) 등

2)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발굴·지원 확대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환경 구성 및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확대

*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유형·발달단계별 교재·교구 구비, 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 등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참조하되, 프로그램의 특성, 강사 전문성, 학교 및 지역 여건, 참여 학생 수, 예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비장애학생과 어울려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지원

※ (사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통합하여 학교 적응 늘봄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은 자체 또는 지역 내 자원을 발굴·보급하여 늘봄·방과후학교·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

- 지역 내 전문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협업하고 각 학교 필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산림복지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온마을다봄터 등

3) 장애학생 맞춤 지원 강화

- 특수학교 늘봄·방과후·돌봄 늘봄지원연구사 및 늘봄실무사 등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이해하고 원활히 지원하도록 지역 여건에 맞춘 교육(연수) 지원 및 정보 제공 추진

- 담당인력 연수, 워크숍 개최 등 역량 강화 추진, 비장애학생과 통합참여 시 방과후학교 컨설팅* 등 지원

*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 활동 구성 시 유의 사항, 통합참여를 위한 지원방안 등

- 방과후·돌봄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관리 체계 구축**

- 학생 동선 관리, 개별 맞춤형 귀가 등(예. 대면 인계지점까지 인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예. 학부모 알림서비스, 인턴폰·비상벨 설치), **기록물관리 철저***

* 출석부, 학생 관리카드, 위임장, 비상연락처,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동의서 등

- 강사 대상 **범죄경력 조회**(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및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유지** 준수, **행동중재 및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활동 보조,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신변처리, 이동 등)할 때 **다양한 유형의 인력풀*** 운영 및 **단위학교 배치·지원**

*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 실무사, 사회복무요원), 보조강사, 자원봉사자(특수교육 예비교사, 학부모 명예교사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 관내 학교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사전교육 실시***를 안내(예. 지원학생의 특성 이해, 지원 내용과 방법 등)하고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등 소통

*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지원 대상의 장애학생에 대한 기초 정보 공유, 학교 및 학급 특성, 장애학생 특성, 자원봉사 관련 전반적 운영 방식, 참여 자세와 태도, 활동 형태, 학급 내 지원인력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등 실질적 지원 방법 전달 등

4) 지역사회 방과후·돌봄기관 연계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교육 활성화 및 돌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등 지역 내 돌봄 지원 사업 연계 확대**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학생의 참여 여건 개선**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등 지역 내 돌봄 지원 사업 연계 확대**

- 방학 중에도 장애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및 돌봄사각 지대 방지를 위해 장애학생 방학학교 위탁 운영(10개 기관)

★ 참고 장애학생 방과후 교외 교육·복지 서비스

부처	서비스	돌봄 등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시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대상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일일 최대 9시간까지(월~토요일 09시~21시, 일요일·공휴일 제외) ※ 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 유사서비스 확인서 발급 -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과 중복 이용이 불가하여 발급 불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대상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돌봄서비스: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연간 1,08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연간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대상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 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발달재활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음악·행동발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 재활영역 서비스(바우처) 지원 ※ 9세 미만 아동은 의뢰서 및 소견서가 있을 경우 장애미등록 아동도 이용 가능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만 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건강 취약계층 운동서비스)과 중복 불가(방과후특기적성과 중복 가능)

5)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적성을 계발하고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 교내강좌 개설 및 위탁, 개별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늘봄·방과후·돌봄교실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26. 2월, 공문 안내)
- ② [각급학교] 안정적인 방과후·돌봄을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수요조사 및 준비상황 통계 조사(별도 안내)
- ③ [각급학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내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지원
※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운영체계를 통합·개선한 단일체계'로서 근무시간 동안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해당(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700(2018.8.6.) 참조)
- ④ [각급학교] '26학년도 공·사립 특수학교 늘봄지원실 운영 현황 조사('26. 4월, 10월)
※ 사립 특수학교 늘봄 기간제교사 배치
- ⑤ [각급학교] '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돌봄 만족도 조사('26. 10월)
- ⑥ [특수학교] 늘봄지원연구사·늘봄실무사 역량강화 워크숍(별도 안내)
- ⑦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방과후·돌봄 운영 현황 조사(학기별 1회)
- ⑧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유치원 및 중등 방과후·돌봄 우수사례 발굴·공유
※ 2026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참가 협조(12월 개최)
- ⑨ 초등 늘봄학교, 방과후·돌봄 참여 시, 이동시간 전후 안전지도 체계 마련 추진
- ⑩ [각급학교]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 연계형 제공기관 및 방과후활동 협력 학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및 방학 프로그램 등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추진
※ 국립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지원)청에서 실시(지원)하는 방학 프로그램 및 방학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3-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각급학교의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참여 보장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 장애학생 지원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교육부) 마련을 통해 지원인력 관리·운영 지원
- 특수교육 지원인력 채용 시, 장애인 학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조사 등을 통해 자격조건 관리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주기적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를 실시

★ 참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항
☞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 방과후학교 지원은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내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지원 가능(2026년 특수교육운영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주요업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지원 역할 담당
 -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 욕구 보조)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
 - (학교 적응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등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기본, 고급) (원격)

- (신규 인력)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의무 실시(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기본)(30차시) 등 활용

- (기존 인력) 방학 중 연 15시간 이상 온라인 직무연수 교육*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고급)(17차시) 활용

* 단체협약 사항: 특수교육실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직무연수를 방학 중 2일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연수기간 보장) 신규직원 직무연수 및 기존 인력 방학 중 연수 시 별도의 연수 기간**을 지정하며, 연수 기간 근무 인정 및 각종 임무에서 제외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기본, 고급) 활용 시 ① 기본 과정 수강 시 최대 5일(신규), ② 고급 과정 수강 시 최대 3일 보장

** 기존 인력의 온라인 직무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의 '고급' 과정을 활용하며, 반드시 방학 중 수강 (특수교육실무사 단체협약 사항)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관련 부서: 안전총괄과(비상대비팀)]

★ 참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고려한 배치
 - 제25조(특정 자격·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 [별표4] 특정자격·전공자 등 소집 순위: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 (1순위) 특수교육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자격 취득자
 - (2순위) 교대·사범대 재학 및 졸업자, 교사 자격 취득자

★ 참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장애학생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재배치 금지
 -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제11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이하 이 항에서 “복무기관”이라 한다)로 재지정 할 수 없으며, ...
 - 5.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초·중·고등학교

-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 (기본방향) 기존요원 연 2회 이상 직무연수 및 국립특수교육원의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 고급)' 연수 이수 계획 수립

- (신규요원) 배치 3개월 이내, 복무기본교육이 끝난 직후 또는 방학기간 중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 과정 수강

※ 방학기간 중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 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도 배치 3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하여야 함

- (기존요원) 기존요원 직무교육 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고급)' 과정 수강

- (연수기간 보장)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고급)' 과정 수강 시에는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연수 기간***을 지정하며, 연수 기간 근무 인정 및 각종 임무에서 제외

* ① 기본 과정 수강 시 최대 5일, ② 고급 과정 수강 시 최대 3일

★ 참고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근거와 내용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관련 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용**
 -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무교육과정(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장애 인권교육과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별표1] 사회복무요원 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 (세부과업)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 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 식사 등

4) 치료지원 내실화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지원 강화
 -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
 -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
-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여건 개선
 -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인프라 확장**
-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 실시**
 - 치료지원 대상자의 치료지원 내용, 방법, 발달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

5)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관련부서: 시설과(미래학교복합시설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9]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각급학교는** 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
 - * 평가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의 제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시간, 검사 환경 등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평가 전·중·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력
 -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16) 참고
 -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방안 강구**
 - ※ (참고)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자료(‘25., 교육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 통학지원 강화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통학차량 신고(「도로교통법」 제52조),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조치(동법 제53조), 운전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동법 제53조의3)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현장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이동 등 편의 제공**

○ 각급학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담당자 교육**** 및 실태점검 철저

* **(적정 설치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전부 충족하여 설치한 비율

(단순 설치율)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설치 기준에 미달한 비율

** 국립특수교육원(원격,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과 한국장애인개발원(집합/원격,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에서 실시하는 교육 적극 참여 권장

-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 수립·시행**

- 적정·단순 설치율 50% 이하인 유·초·중·고·특수학교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후속조치 결과 관리(3월, 9월)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 복무 관리 및 연수 등 운영 관리 철저
 -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매뉴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협의체 운영 협조
- ② 사회복지요원 배치·관리 및 교육 강화
 - 사회복지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
 -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
 - ※ 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확인
 -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지요원 대상,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현장 점검(연 2회)
 - 신규배치 사회복지요원들의 업무 적응을 위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③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자체 계획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

- ④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수요 파악을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 예산확보, 개·보수 추진
- 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정보공시 안내('26.5.)
- ⑥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 제출('26.11.)
- ⑦ 중증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및 순환근무제 실시
- ⑧ 사회복지요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연 2회)
- ⑨ [각급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수립 및 근무평정 철저(학기별 1회)
- ⑩ [각급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 대상 자체 연수계획 수립·시행
 - ※ 신규 배치 사회복지요원들의 업무 적응을 위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 대상으로 복무, 역할,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 활동지원 방법 등 직무교육 월1회 이상 실시(장애인권 교육 연2회 이상 포함), 분기 1회 이상 고충상담 실시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 지원계획(244쪽)' 참조
- ⑪ [각급학교]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은 학기 중 특수교육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방학 기간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및 복무 관리 가능
 -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여학생 개별 지원 금지)
 - ※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지요원 대상,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현장 점검 실시 확대(연2회)
 -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요원도 학교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활동지원 및 학교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 ⑫ [각급학교] 특수교육실무사는 방학 중 원격 연수로 연간 15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며, 직무연수 기간에는 각종 업무에서 제외함(국립특수교육원 '[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17차시)' 활용)
- ⑬ [각급학교]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통합실무사, 특수학교 돌봄교실전담강사가 교육활동 중 신체적 피해(3일 이내)가 발생 시에는 교직원 복지비로 치료비 지원 가능

3-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관련부서: 안전총괄과(안전기획팀), 시설과(학교시설1,2팀), 체육건강예술교육과(학생건강팀)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 통학로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 인력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자기 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 장애학생 등·하교시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 해당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한 안전 훈련 실시 권장
-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재난 상황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 참고 안전 교육 참고 자료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2016, 교육부·경남특수교육원)
- 학교 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2026.1., 교육부)
-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점검 강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에 따라 안전 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미달 특수학교는 시설 연간 정비계획 수립·시행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 환기·소독실시 등
- 특수학교(급)의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지원
-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에 간이체육시설, 체육관 등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 피해 예방

4) 특수학교 학생 안전 관리 강화

- 재특수학교 학생 생활지도·관리 방안 및 대책 마련
 - 학생들의 교육활동·급식·쉬는 시간 및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 등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발생하는 생활지도에 있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의 담임과 부담임 간의 명확하고 세분화된 업무분장, 업무지원 등 실효성 있는 학생 지도·관리 방안 및 대책 마련
 - **[특수학교]** 학생 생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운영
 - ※ 수업시간, 등하교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을 포함한 학생 생활 안전 관리, 유사 시 대응 체계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및 운영
 - **[특수학교]**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계획 수립·운영
 - ※ 학교 교실을 포함한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취약요소 점검 및 관리, 교직원 비상주 특별실 및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유사시 대응체계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및 운영

5)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 학교보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및 수업환경 개선 지원
- ② **[특수학교]** 특수학교 학생의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 및 운영
- ③ **[특수학교]**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운영
- ④ **[특수학교]**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년별 안전교육(교육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과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
- ⑤ **[특수학교]**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철저
- ⑥ **[특수학교]** 학생 생활 안전 관리 계획 및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계획 수립·운영
- ⑦ **[일반학교]** 수련활동, 체험학습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 및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 배치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 방안 및 안전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마련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 미래생활 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 역량 등) 강화
-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 참여 기회(진학, 취업, 평생교육 참여 등) 확대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학협력법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직업교육훈련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다양한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교육과정 및 학교급 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 진로설계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 ▲진로연계교육 ▲직업교육 중점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문화·예술분야, 지역 내 특화 산업분야 연계 특화 교육과정 등

○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지원 강화

*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취업지원 관계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지역 내 산업체 등으로 구성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26.2. 예정)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연구회 및 연수 운영 권장

○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대학생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공·교양 수업 체험, 진학 정보제공 및 컨설팅, 부대시설 이용 등(교육청-대학 협력)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통한 현장실습 지원

* ▲학교 내 일자리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범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 취업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대학,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 현장실습 유형별 운영 절차 및 실시 시기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마련 및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사전교육 콘텐츠 활용 등 학생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현장 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추진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 수립(3월)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및 교육청 차원의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학교·공공기관·대학 내 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등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사업 추진 계획 포함하여 수립
- ② 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전공과 대상 대학 생활 체험 지원 사업 운영('26.3~)
- ③ [각급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진로 및 직업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권장)
- ④ [광주선광학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계획 및 결과 제출(3월, 12월)
- ⑤ [광주선광학교]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및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기업 수입금은 학교회계에 편성, 특수학교 학교기업회계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사용하여 예·결산 및 집행 업무 처리
- ⑥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및 전공과 현장실습 시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현장실습 계획 마련
- ⑦ [고등학교, 특수학교] 장애학생 진로·직업 이력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시스템' 활용 안내('26.3.)
- ⑧ [고등학교, 특수학교]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점검('26.4.~11.) 및 결과 제출('26.12.)

3-1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부서: 진로진학과(평생교육팀)

추진목적

·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제고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2조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정과제 101-4】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1)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학력보완 등 맞춤형 교육 및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17.7.1.)

※ (예시) 학습지원프로그램 이수, 방송통신중·고 과목 등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 → 이수 시수 인정 → 학력인정

○ 장애인 문해교육 기회 증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보급을 통한 평생학습 촉진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평생교육 7대 영역* 중 1개 영역에 대한 연차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① 학력보완, ② 기초문해, ③ 직업능력, ④ 인문교양, ⑤ 문화예술, ⑥ 시민참여, ⑦ 성인진로

- 장애인 **문해교육 기회 증진** 및 **학력인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반응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

※ ('25) 중등 수학 1·2단계 → ('26) 중등 수학 3단계, 초등 사회·과학 3단계 → ('27) 초등 영어 2·3단계

- 장애학습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과정 개발·보급

※ ('25) 기초연구 → ('26) 교육과정 개발 → ('27) 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

2)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장애인 대상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장애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기반 강화

- 지역·기관별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 및 참여율 분석을 위해 「2026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본조사 추진
 - 기관조사(장애인평생교육기관) 및 면담조사(장애인학습자) 병행으로 통계 신뢰도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체계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협력 사항

- 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② 장애인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력보완 기회 제공
- ③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지원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운영계획
- 2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지원계획
- 3 특수학급 운영 지원계획
- 4 통합교육 운영 지원계획
- 5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계획
- 6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계획
- 7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
- 8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계획
- 9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계획
- 10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지원계획
- 1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계획
- 12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계획
- 13 특수교육실무사 지원계획
- 14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계획



1 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광주광역시 거주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각급학교(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배치 및 그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함

2 관련 근거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3 기본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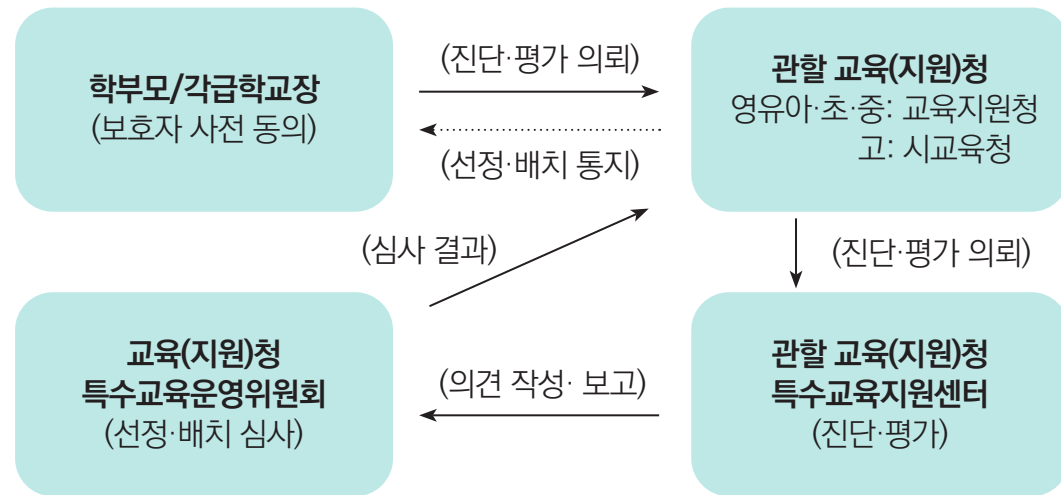
-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거쳐 기관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배치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는 정기심사 외 수시(서면)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진단평가팀 조직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는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적 조치 및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바. 특수학교(급)의 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학교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사. 특수교육대상유아를 10월 말까지 배치 완료하여 정원 내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학생이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반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함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적은 일반학급에 편성되어 관리함
- 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적 조치 및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참고서류, 보호자 의견진술 및 소속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 담당 교사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함
- 라. 보호자의 조기교육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받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결과에 따라 특수학교 내 유치원과 과정 및 영아학급 등에 배치할 수 있음
- 마. 만 3세부터 유·초·중·고등학교 과정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내역: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
- 바.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또는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 유예 및 면제자에 대한 취학 및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 1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사.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은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



※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지원청, 고입·고교과정은 시교육청에서 선정·배치함

가.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1)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신청자

가) 신청 절차

구분	신청 절차	참고자료
유치원 및 학교에서 신청	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상담 ◦ 기초학력과 지능을 고려하여 최하위 5~10% 이하인 자 ◦ 기초학력 평가의 특정교과(영역)가 극히 부진한 자 ◦ 언어장애, 적응행동 어려움, 신체 및 감각기관에 이상이 있는 자 ② 명단 작성 ③ 보호자와 상담 - 예비 진단 결과 및 교육조치 등에 대한 보호자 상담(보호자의 동의 필요) ④ 진단·평가 의뢰서 서류 작성(신규<서식1-1> 또는 '신규진학<서식1-2>', <서식2>, <서식3-1>, <서식11>) - 장애영역별 추가 서류 제출 ◦ 건강장애: <서식4-1> ◦ 학습장애: <서식4-2> ⑤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 및 서류 접수 ⑥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진단·평가 의뢰자 접수 명부 작성 ⑦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6개월 이내) ◦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 (6개월 이내)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6개월 이내) 등
보호자가 직접 신청	①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의뢰 ◦ 예비 진단 및 교육적 조치사항 등에 대한 상담 ② 진단·평가 의뢰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접수(<서식2>, <서식3-2>)	

나) 신청 시 유의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시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 포함 작성
- 보호자가 학교에 선정·배치 및 입학 문의 상담 시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진단·평가 절차 등의 안내를 받도록 조치

2)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가)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입학) 배치 신청서」<서식5-1> 등을 교육장에게 제출

3) 특수교육 대상 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가)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입학) 배치 신청서」<서식5-1> 제출

나) 중학교 입학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후 입학 원서 작성 시 일반학생과 동일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작성

다)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응시분류 구분란의 우선배정-특수교육 칸을 선택하고 우선배정 희망학교 란에 배치 결과 통지서의 배치학교명을 기록 (단, 특수학교 배치 학생은 입학예정 대상자 예외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함)

라) 기 선정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이더라도 장애유형 및 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진단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4) 특수교육 대상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가)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입학) 배치 신청서」<서식5-1> 제출

나)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후 해당 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고)별 입학 원서 작성 시 일반학생과 동일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작성(특수교육대상자는 전형료 면제, 특수학교 진학 시 입학원서 미작성)

다) 고등학교 입학 원서 작성 시 일반계 고등학교는 응시구분 란의 특수교육 칸에 '○' 표시하며,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형 구분 란의 특수교육 칸에 '○' 표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정원 외로 배정함)

※ 특성화 고등학교 배치 학생은 학교만 배정이 되고, 학과는 학교에서 배치 기준에 따라 추후 결정 함(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

라) 기 선정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라 할지라도 장애유형 및 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진단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5) 진단·평가 의뢰 시 제출 서류

구분	참고자료
- 신규·장애유형 변경 - 신규 진학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신규, 장애유형 변경)(서식1-1)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신규 진학)(서식1-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서식2) ◦ 학교장 의견서(서식3-1) ※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장애 신청자: 기초조사서(건강장애) (서식4-1) ◦ 학습장애 신청자: 기초조사서(학습장애) (서식4-2) ◦ 신규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리 동의서(서식11) ◦ 기타 참고서류(복지카드, 병원 발행 진단서,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 임상심리평가서 등) ※ 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등 해당 장애 영역의 의사 진단서 - 진단에 사용된 주요 검사항목, 검사결과 및 장애정도가 진단서 또는 관련 서류에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 ◦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 재배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재배치)(서식1-1) ◦ 학교장 의견서(서식3-1)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서식10-1) ◦ 재배치 신청 사유서(서식10-2) ◦ 타시도 전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리 동의서(서식11) ◦ 기타 참고서류(주민등록 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 기존 진학(진학 시 배치유형 변경 포함)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기존진학)(서식1-2) ◦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입학) 배치 신청서(서식5-1) ◦ 기타 참고서류(개별화교육지원팀 의견서 등) 사본(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참고서류(개별화교육지원팀 의견서, 주민등록 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 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 배치 유형을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특수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일반학급)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실시한 후 (서식5-2) 작성하여 제출

※ 현재 의무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기 선정·배치 대상자에 해당함

6) 서류 제출처 및 제출 방법

구분	제출처	제출 방법	제출 기간
중학교 이하	◦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유·초·중) 학부모 ⇒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 스캔(PDF) 후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원본 문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규(분기별), 전학 등(수시)
고등학교, 특수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고) 학부모 ⇒ 재학 중인 학교 ⇒ 시교육청		신규(분기별), 전학 등(수시)
고입 대상자	◦ 중학교 학부모 ⇒ 중학교 ⇒ 시교육청 ◦ 특수학교(중학교) 학부모 ⇒ 특수학교 ⇒ 시교육청		8월 중 (별도 안내)

나. 진단·평가 실시

1) 진단·평가 실시 절차

구분	제출 방법	제출 기간
특수교육 지원센터 (진단·평가)	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 명부 작성 ② 각종 진단 평가 검사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도구 사용 ◦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확인 (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관련)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 필요시 추가 참고 서류 제출 요청 가능 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의견 작성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최종 의견 제출	★ 접수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 각종 진단·평가 도구 ◦ 진단·평가 결과 및 의견(참고1)

2) 진단·평가 실시 후 제출 서류(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감 또는 교육장)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의견(참고1)

나) 기타 진단·평가 관련 서류

3) 진단·평가 실시 시 유의점

가) 검사(조사)는 정확성을 기하고 기록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와 진단·평가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가 있거나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진단·평가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발달지체이고 만 9세 이상인 학생은 별도의 진단·평가 실시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장애영역을 재심사한다.
(3학년 2학기 때 진단평가 실시를 통해 장애유형 변경 심사 실시)

다) 진단·평가 결과서 작성 시 교육지원 내용은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6조 ③항)

4) 학교(급)별 진단·평가 실시 기관

구분	참고자료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동구, 북구 지역 내 영·유·초·중학교 ◦ 광주선우학교, 은혜학교의 영·유·초·중학교 과정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서구, 남구, 광산구 지역 내 영·유·초·중학교 ◦ 광주선광학교, 광주선명학교, 선예학교, 광주세광학교의 영·유·초·중학교 과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광주 관내 고등학교 ◦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내용

1)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 진단·평가 결과 및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면접 또는 서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의 부합 여부 검토

2) 교육지원 및 학교 배치요구 내용 검토 사항

- 보호자의 의견, 입·전학 여건(대상자의 거주지, 해당 학교의 여건)
- 특수교육기관의 수용 능력, 운영 실태
- 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학습 및 생활능력

3) 선정·배치 심사 후 교육감(장)에게 제출할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참고2〉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참고3〉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결과」〈참고4〉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선정배치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또는 서면심사 결과)

라.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

1) 선정·배치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학교장은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

2) 통지 서류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참고2〉
-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참고3〉
- 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결과」〈참고4〉

3)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학교의 유의사항

- 가) 통지서 원본 학교 보관(학부모에게 사본 전달)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관련 서류** 등을 참고로 적절한 교육적 조치
 - *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 기재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 관련 서류는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 계획 송부
 - ※ 상급학교 진학: 사본(원본대조필) 송부(최근 1년), 재배치 및 전출입: 개별화교육계획 원본(전학년) 송부

마. 심사 청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1) 절차

- 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조치(선정·배치 및 교육 지원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
-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심사
- 다) 심사결과 통지서 청구인에게 교부 〈서식13〉

2) 심사청구 서류

-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서식12〉

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재배치)

1) 시기

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선정·배치 취소 시기는 수시로 가능하나 가급적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실시

2) 선정·배치 취소 대상

가)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된 자

- 학습활동: 교과별 성취목표 달성 수준, 통합학급에서의 학습 가능성
- 생활능력: 사회적응능력의 변화된 상태, 부적응 행동의 교정 상태, 자립능력
- 기 타: 담임교사의 수용자세, 학생들의 이해 및 협력적 태도

나) 진단·평가의 오류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학생(발견 즉시 선정 취소)

다) 학부모가 선정 취소를 요청한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배치 취소 가능. 다만, 선정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단·평가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 후 조치

3) 재배치 대상

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어 있는 현재 유형(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다른 유형의 교육 환경에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기초생활능력, 학습능력, 학교(급) 적응력,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보호자의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다) 거주지 이전에 따라 학교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4) 선정·배치 취소(재배치) 신청 절차

가) 해당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취소(재배치) 관련 학부모(학생) 상담

나) 해당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재배치)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후 취소(재배치) 신청 여부를 결정

다) 해당 학교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재배치 신청서, 재배치 신청 사유서)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라)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유치원으로 배치를 희망 하는 경우 이동현황 보고 또는 배치 신청서 제출

- 기존 유치원으로 복귀: '이동현황'(<참고>공문 예시 p220)을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 센터로 제출

- 타 유치원으로 배치 희망: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를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마)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배치 취소(재배치) 심사

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취소(재배치) 결정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배치를 취소(재배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통보 방법은 문서로 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 계획과 관련 서류(진단평가 카드, 진단평가 검사지 사본 등)를 14일 이내에 송부*

* 상급학교 진학: 사본(원본대조필) 송부(최근 1년)

* 재배치 및 전출입: 개별화교육계획 원본(전학년) 송부

※ 원본 송부 시 최근 1년간 개별화교육계획 사본(원본 대조필) 학교 보관

※ 개별화교육계획 비전자문서 등록은 각 학교급 과정 졸업 이후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타 시도 전입 및 주소지 이전 등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심의 전에 우선 배치(등교)를 할 수 있다. (공문 안내)**

5) 제출 서류

- 선정·배치 취소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6-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보호자용)<서식6-2>

- 재배치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서식10-1>, 재배치 신청 사유서<서식10-2>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배치 대상: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서식10-3>

사.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 14조)

1)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대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하거나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무교육대상자

2) 취학의무 유예 신청 절차

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 유, 초, 중학교: 동·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

* 고등학교: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취학의무 유예 심의

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취학 유예 심의가 결정이 되면,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통보(통보 방법은 문서로 함)

3) 취학의무 면제 신청 절차

가) 해당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면제 관련 학부모(학생) 상담

나)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후 면제 신청 여부를 결정

다) 해당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 심의

마)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면제 결정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 면제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통보 방법은 문서로 함)

4) 제출 서류

- 취학유예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 신청서<서식7>

- 취학의무 면제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서식8>

아.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후 유예, 면제, 재취학, 유급

1) 입학 후 유예 대상 및 신청 절차

가) 대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무교육대상자

나) 입학 후 유예 신청 절차

(1) 초·중학교·특수학교: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

(2) 고등학교: 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생의 유예 심의가 결정이 되면,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통보(통보 방법은 문서로 함)

※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유예(면제) 절차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취학의무 유예(면제) 처리 절차 준용

다) 제출서류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 신청서<서식7>

2) 특수교육대상자가 정원 외 관리(수업일수 1/30이상 장기 결석에 따른 유급)의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초,중,특수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고등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생 변동 현황 제출 <참고5>

- 특수학교(급)의 유·초·중학교 과정 학생 변동 현황: 동·서부교육지원청

- 특수학교(급)의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학생 변동 현황: 시교육청

※ 학교별 정원외 특수교육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원 외 관리 된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에게 매 학년도 시작 한 달 전(1월말)까지 재취학을 하도록 필히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 5항)

※ 고등학교 학칙(정원 외 관리) 내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유급을 위한 조항 삽입

※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원외 관리 결정

※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유급) 결정

3) 입학 후 면제 대상 및 신청 절차

가) 대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무교육대상자

나) 입학 후 면제 신청 절차

(1) 해당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면제 관련 학부모(학생) 상담

(2)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기준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후 면제 신청 여부를 결정

(3) 해당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4)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 심의

(5)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면제 결정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면제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통보 방법은 문서로 함)

다) 제출 서류

- 입학 후 면제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서식8>

※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사망에 따라 면제된 경우, 교육(지원)청에 학생 변동 현황 제출

- 특수학교(급)의 유·초·중학교 과정 학생 변동 현황: 동·서부교육지원청

- 특수학교(급)의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학생 변동 현황: 시교육청

- 제출 서류 : <참고5>(학생 변동 현황 보고)

4) 유예, 면제, 재취학, 유급 관련 제출 서류

- 유예: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 신청서<서식7>

- 면제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서식8>

- 재취학*: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서식9>

* 취학유예, 면제 승인을 받은자가 재취학 신청하는 경우

- 유급 : <참고5>(학생 변동 현황 보고)

8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관련 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만9세 미만의 아동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개정 2021. 12. 2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2022. 6. 29. 개정)

중도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요건

요건 2 \ 요건 1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	○	○	X	X	X	X

※ 요건 1과 요건 2에 해당하는 장애 모두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 함

9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관련 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구분		참고자료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2. 적응행동검사
진단 · 평가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2. 시력검사
	지적장애	1. 지능검사 3. 적응행동검사 5. 운동능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4. 기초학습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3. 행동발달평가	2. 성격진단검사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3. 언어발달검사	2. 음운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의사 진단서(임상심리평가서 포함)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여유
이름
다
철크
공
나
나
인
노
※
교육(지원)청
↑↑
〈서식1-1〉(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신규, 재배치, 장애아동 평점)

작성지(담당자) 서명 (인양문)인양문), 연락처 ()

연 번	구 분	재학학교			성 명	성 별	생년 월 일	주 소 (도포명)	연락처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 복지카드	배치 희망학교(희급)						특이 사항
		학교명	학급 유형	학 년					보호자명	담당 교사명			1회만		2회만		3회만		
													학교명	학급 유형	학교명	학급 유형	학교명	학급 유형	
1	신 규	광주 ○○ 중학교	3	○○○	남	2000. 0.0	광주광역시 서구 ○○○로 00	간111 010-○○○ -○○○	내111 ○○○-○○○ ○○○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광주 ○○ 중학교	광주 특수 학급	광주 일반 학급	광주 특수 학급	광주 일반 학급	광주 특수 학급		
2	재 배 치	광주 ○○ 초등학교	6	○○○	남	2000. 0.0	광주광역시 동구 ○○○로 00	010-○○○ -○○○	○○○-○○○ ○○○	장애 장애	장애	없음	△△ 초등 학교	광주 ○○ 초등 학교	광주 일반 학급	광주 초등 학교	특수 학교		

[작성 방향]

※ 구분: 신규, 재배치, 정경, 좌식, 좌하유예(우예), 좌상유예(우예), 면제, 제척완중, 재입양, 노인, 사망, 입양

※ 제하 학교명: 정성[○○초등학교, 광주○○중학교, ○○고등학교로 정확하게 작성]

※ 제 1 차 하급유형: 일반학교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또는, 일반학교) / 특수학교는 작성(신규 신청은 제외) / 특수학교는, 순회하급유형, 평안각성

[illegible]

✧ 주신: 도로명 주소로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특수교육교과목 평가 방법, 예, 표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기입(장애정도: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작성)

※ 배지 희망학교: 반드시 보호자와 상담 후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를 작성(정신 학교 명칭 작성)

-건강장애 신규 신청 시 학교명에 위탁교육 희망기관* 작성(*호선초등학교, 국립수령원 노니무 병원학교, 전남대학교 학비를 병원학교)

※ 『지평』 평양영화학교 학생 평양영화학교 교장: 임반하, 교사: 박수환, 또임반하, 임반하, 증에서 작성 / 특수학교는 경안만 작성

※특이사항: 장애인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학교 배치, 지원인력 지원 필요, 진단평가 필요성 등 기록

[유의 사항]

※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시본,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제출 시 서면심사료 대체 가능, 증명서류 미제출시에는 출석심사 실시

이
양
기
임
하
지
민
교
한
히
망
의
배
경
아
신
정
의
면
영
야
선
좌
정
판
정
야
하
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기존진학, 신규진학)

작성(재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연 번	학 년 도	구 분	재학학교		성 명	성 별	생년 월일	주 소 (도로명)	연락처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영역	장애 정도	배치 희망학교(학급)						특이 사항		
			학교명	학급 유형					학급 유형	학급 유형				거리 (시간)	학교명	거리 (시간)	학교명	거리 (시간)	학교명		거리 (시간)	3회망 학급 유형
1	2027	기존 진학	○○ 중학교	○○ 특수 학급	3	○○○	남	2000. ○○.○○ 광주광역시 서구○○○○로 ○○○○	김○○ 010-○○○-○○○○	내○○ ○○○-○○○-○○○○	지적 장애	중증	○○ 고등 학교	○○ 고등 학교	1.4km (자동차10 분)	○○ 일반 학급	1.4km (자동차10 분)	△△ 특수 학교				
2	2027	신규 진학	○○ 초등 학교	○○ 초등 학교	6	○○○	남	2000. ○○.○○ 광주광역시 동구○○○○로 ○○○○	김○○ 010-○○○-○○○○	내○○ ○○○-○○○-○○○○	지적 장애	없음	△△ 중학교	○○ 중학교	200m (도보 7분)	○○ 중학교	○○ 중학교	500m (도보 10분)	□□ 중학교	○○ 특수 학급	800m (도보 15분)	

[작성 방법]

- ※ 학년도: 다음 학년도 기입
 - ※ 구분: 상급학교 진학(기존진학, 신규진학) 중 해당하는 사항 입력
 - ※ 재학 학교명: 정식 학교 명칭을 작성[○○초등학교, 광주○○중학교, ○○고등학교로 정확하게 작성]
 - ※ 재학 학급유형: 일반학교는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 을 작성(신규진학 신청은 작성 제외) / 특수학교는 ‘순회학급’일 경우만 작성
 - ※ 학년: 초·중·고등학교는 해당 학년을 기입 / 영·유아는 만 나이를 기입
 - ※ 주소: 도로명 주소로 작성
 -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장애유형 중 가장 우선하는 유형 기입
 -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기입(장애정도: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작성)
 - ※ 배치 희망학교: 보호자와 상담 후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를 작성(정식 학교 명칭 작성), 거주지 근거리 학교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학교 배치 시 특이사항에 사유 기입
 - ※ 배치 희망 학급유형: 일반학교는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 중에서 작성 / 특수학교는 ‘순회학급’일 경우만 작성
 - ※ 거리(시간): ‘네이버 길찾기’도보 거리 및 시간 작성(1km 이하 거리는 m로 작성)
 - ※ 특이사항: 장애인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학교 배치, 지원인력 지원 필요, 진단평가 필요성, 근거리 외 1회망 사유 등 기록
- [유의 사항]**
- ※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뇌종진단) 및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제출 시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하나,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출석심사를 원칙으로 함

<서식2>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신규·장애유형 변경 신청자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대상자

성명

주 소

소 속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추정)

배치 희망 학교

성명

주 소

성별

학년

반

장애등록
(복지카드)

장애유형

장애정도

1회망

2회망

3회망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집-학교
거리(km)
[신규
진학시 기입]

00.0km

00.0km

00.0km

보호자

성명

주 소

대상자와 관계

대상자의 ()

연락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인)
소속 학교장: (인)

광주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작성시 유의사항]
1.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중 추정되는 영역 작성
2. 배치 희망학교: ○○학교 일반학급, ○○학교 특수학급, ○○학교(특수학교)로 작성
소속 학교로 배치 희망하는 경우, 집-학교 거리 작성하지 않음
3. 집-학교거리(km):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의뢰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 속

학 생 명

성 별

비 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교육감(장) (인)

103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IV.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104

I.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II. 광주특수교육의 방향
III. 중점 추진 과제
IV.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V.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학 교 장 의 견 서

대 상 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연락처	
	소 속	학 교 학년 반				
	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 지원 여부		☐ 기초학력책임지도 등 ☐ 상담 ☐ 기타() ☐ 없음			
학 교 장 의 견	신체기능 운동능력 (건강상태)	* 통합학급에의 이동 가능 여부, 수업 시간 이동 여부				
	학습수행 능력	*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수행 수준 기록				
	행동특성 및 요인	* 일반 학생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교사의 유의가 필요한 행동, 부적응 행동 기록 * 친구들과의 관계,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가능 여부, 독립적 통학의 여부 등				
	기타	* 신변관리·자립 능력 및 약물복용 여부 등				
위 학생은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또는 사인) ()교육감(장) 귀하						

보호자의견서

대 상 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연락처	
	교육 및 치료 이력					
신체기능 운동능력 (건강상태)						
학습수행 능력						
행동특성 및 요인						
사회생활 적응능력						
기타						
종합의견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교육감(장) 귀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성 별	
특수교육대상자 장 애 유 형		생 년 월 일	
현재 배 치 유 형	()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선정 배치 연도	
주 소			
보 호 자 명		관계	대상자의()
		연락처	

1. 특수학급(통합학급) 담임교사 의견

영 역	종 합 의 건
학습 활동	
생활 능력	
기타	

2.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의견

심의 일시		참석자	
선정·배치 취소 사유의 타당성			

위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받아 특수교육을 받아왔으나, 일반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교육감(장) 귀하

유의 사항	- 신청서 제출 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선정·배치 취소 관련 심의 필히 개최 - 첨부 제출 서류 (※ 신청서 등은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 보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보호자용)<서식6-2> (참고 자료 필수 제출)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보호자용)

학생명		학교명			
학년, 반		생년월일			
장애유형		복지카드 유무	장애의 정도(있을시)	없음	
			심한	심하지 않은	
보호자 의견					
보호자 자필로 사유 기재					
▶ 관련 서비스 정지 안내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일로부터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통학비, 특기적성비)를 이용할 수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 상자 선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및 교육서비스 지원 관련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 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 신청서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성 별	
특수교육대상자 장 애 유 형		생 년 월 일	
현재 배치 유 형	()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선정 배치 연도	
주 소			
보 호 자 명		관계 대상자의() 연락처	

1. 유예사유

예) 00발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을 하게 되어 유예를 신청함

2. 유예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교육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유예] 관련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 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유의 사항

■ 신청서는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 보관

■ 진단서 등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면제[면제] 신청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일시			2025. 00. 00.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성 별		
특수교육대상자 장 애 유 형		생 년 월 일		
현재 배치 유 형	()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선정 배치 연도		
주 소				
보 호 자 명		관계 대상자의() 연락처		

1. 면제사유

2. 보호자 의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면제/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 ○ 학 교 장 (직인)

()교육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면제 관련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유의 사항

■ 신청서 제출 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의무교육 면제 심의 필히 개최

■ 신청서는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 보관

■ 학교장 직권 면제 사안일 경우, 보호자 의견란에 학교장 직권면제라고 작성 후, 학생 및 보호자 성명란을 공란으로 제출

〈서식9〉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특수교육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학업 중단 이력	학업 중단 학교		학년		
		배치 유형		학업 중단기간		
	중단 사유	* 보호자가 직접 기록하되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담임교사가 작성할 경우 보호자의 정확한 확인을 거쳐 작성해 주세요.				
	재취학 신청 사유			재취학 희망 학교		
		배치 유형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위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취학유예, 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재취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교육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관련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 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식10-1〉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학생 성명		성 별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현재 배치유형	()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보 호 자 성 명		관 계	대상자의 ()	연락처	
전 주소					
현 주소	거주지 이전 재배치일 경우만 작성				
배치 변경	학교명		학급유형	집-학교 거리 (회망교가 소속학교인 경우 및 특수학교의 경우 거리 미기입)	
	1회망				
	2회망				
	3회망				
사 유			재 배 치 회 망 시 기		
위와 같이 재배치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학교장(직인) ()교육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유의 사항	■ 신청서 제출 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재배치 관련 심의 필히 개최 ※ 필요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첨부 제출 서류(※ 신청서 등은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 보관) ◦ 재배치 신청 사유서 1부(서식10-2, 양식 참고 필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변동자에 한함)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재배치의 경우 ‘재배치 신청 사유서’ 제출 생략				

〈서식10-2〉 (학교 ⇒ 교육(지원)청)

재배치 신청 사유서		
기초 생활 능력	신변 관리 및 자립 능력	
	대인 관계	
	의사소통 능력	
학습 능력	교과 학습 성취도	
	읽기, 쓰기, 말하기, 수리 능력 등	
특이 사항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활동현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현황	
재배치 시 보호자의 특별 지원 요구 사항		
개별화 교육지원팀 심의 의견	심의 일시	참석자
	재배치 희망(신청) 사유의 타당성	
	학생수준 및 학교생활 고려시 타당한 배치 학교(학급) 유형	
년 월 일		
담임교사 성명: (인)		
특수교사 성명: (인)		
()교육감(장) 귀하		

〈서식10-3〉 (보호자 ⇒ 교육지원청)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어린이집 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보 호 자 성 명		관 계	대상자의 ()	연락처	
주소					
배치 변경	유치원 명		학급유형	집-유치원 거리(km)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기준)	
	1희망				
	2희망				
	3희망				
사 유			배 치 희 망 시 기		
위와 같이 배치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어린이집원장(직인) ()교육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의료적 진단명,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 기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유의 사항	■ 기존 유치원으로 복귀 시 작성하지 않으며, 타 유치원으로 배치 신청 시 보호자가 작성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첨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리 동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필요한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목적	항목	보유기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진단·평가,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특수교육 관련 업무 추진 등	본인 및 보호자 성명, 소속,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등본), 연락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의무 보존기간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목적	항목	보유기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특수교육 관련 업무 추진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사본, 진단평가 결과 및 행동관찰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의무 보존기간까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항목	보유기간
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 타시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 진단평가 협력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의무 보존기간까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우리교육청(타시도 교육청간 포함)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학 생 명 : _____ 보호자명 : _____ (서명)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교육감(장) 귀하

119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서식12> (보호자 ⇒학교 ⇒ 교육(지원)청)

(앞 면)

심 사 청 구 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 건

② 청 구 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성별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소속학교

학교장

성명

학교명

_____ (전화번호: _____)

③ 피 청 구 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 이 되는 처 분 내 용

⑤ 심사청구의 취지

⑥ 심사청구의 이유

⑦ 기 타 입 증 자 료

⑧ 근 거 법 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IV.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120

I.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II. 광주특수교육의 방향

III. 중점 추진 과제

IV.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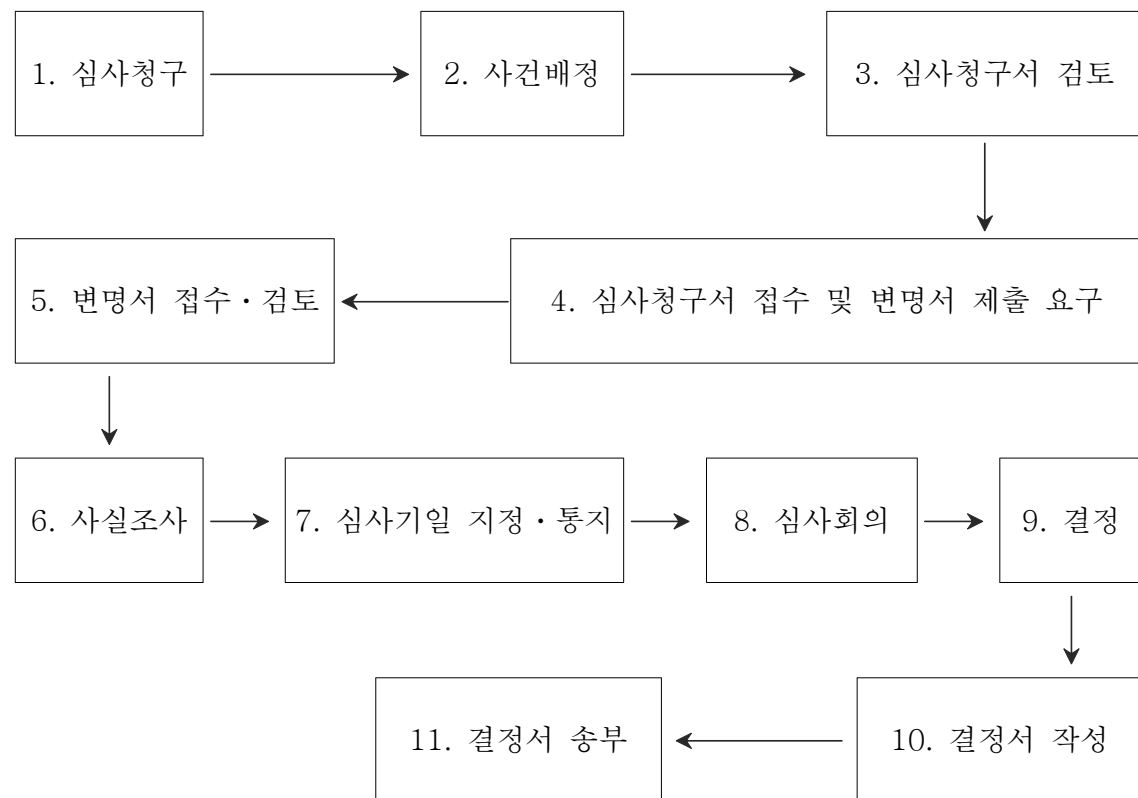
V.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 ① 사 건 명: ○○ 처분 취소 청구
 -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
 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
 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
 리적으로 기술
 -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서식13〉 (교육(지원)청 ⇒ 학교 ⇒ 보호자)

심 사 결 과 통 지 서 (고 등 학 교 과 정 이 하)				
① 사 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 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의견-예시

연번	학교명	학년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1					

진단평가 결과 및 의견

☐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 (적격)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됨
- (보류)
진단평가 결과,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적인 진단평가 등이 요구되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이에 대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함.
- (부적격)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함.

☐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

- 장애유형 및 학습발달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제공
-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위한 생활기능 중심의 지도 필요
-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
- 장애 특성에 적절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 (유·직업) 놀이를 통한 다양한 직업 체험 제공
- (초·직업) 학교 교육과정 참여 및 체험을 통한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 제공
- (중,고·직업) 진로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 작업기초능력 훈련 필요
- (감각장애)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건강장애) 필요에 따라 병원학교 위탁교육 및 원격수업 제공

☐ 진단평가(또는 표준화검사) 실시 결과

검사영역	검사명	검사결과		
적응행동 검사	NISE-K·ABS	영역	표준 점수	적응행동 수준
		개념적 기술	66	상당히 저조한 수준
		사회적 기술	68	상당히 저조한 수준
		실제적 기술	72	저조한 수준
		적응행동	66	상당히 저조한 수준
지능 검사	K-WISC-Ⅴ	지표	점수	분류
		언어이해		매우낮음
		시공간		평균하
		유동추론		매우낮음
		작업기억		경계선
		처리속도		
		전체IQ	69	매우낮음

자폐성 검사	CARS	총점 33.5	진단적 분류 경증-중간 자폐				
기초학습 기능검사	KNISE-B·ACT	지표 읽기학력 쓰기학력 수학학력	지수 47 46 49	분류 지체 지체 지체			
진단서 (감각장애)	00병원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인공와우 이식술로 청력 검사상 우측 농, 좌측 90dB 소견과 청각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언어치료 등 활동 지원이 필요함					
진단평가일		진단평가위원					
2025.00.00.		김○○, 나○○, 우○○, 노○○ (4명 이상 기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감(장) 귀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교부번호: 20〇〇-〇000〇

예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됨

☐ 교육지원 내용(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지원 관련서비스 등)
◦장애유형 및 학습발달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제공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위한 생활기능 중심의 지도 필요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
◦장애 특성에 적절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유·직업) 놀이를 통한 다양한 직업 체험 제공
◦(초·직업) 학교 교육과정 참여 및 체험을 통한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 제공
◦(중·고·직업) 진로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 작업기초능력 훈련 필요
◦(감각장애)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건강장애) 필요에 따라 병원학교 위탁교육 및 원격수업 제공
※ 해당 대상자는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호자는 자녀를 의무교육기간 동안 취학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상교육: 전공과와 만 3세 미만
◦의무교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과정)
* 필요에 따라 아래 문구 사용
- 발달지체: 만 9세가 되기 전 장애유형 변경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상급학교 진학 시 재심사 필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현재소속기관: 학교제학년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

년월일

()교육감(장)

※ 시교육청 교부번호: 선정·배치 20〇〇-1000〇/ 진단평가 20〇〇-1100〇
동부교육지원청 교부번호: 선정·배치 20〇〇-2000〇/ 진단평가 20〇〇-2100〇
서부교육지원청 교부번호: 선정·배치 20〇〇-3000〇/ 진단평가 20〇〇-3100〇

125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참고3> (교육(지원)청 ⇒ 현 소속학교 ⇒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교부번호: 20〇〇-〇000〇

장애유형:

배치학교: 학교제학년(〇〇학급)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현재소속기관: 학교제학년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선정·배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

년월일

()교육감(장)

※ 선정·배치 심사 결과에 따라 미선정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교부
※ 통지서 원본은 학교 보관(보호자에게 사본 전달)하고,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송부

IV.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126

I.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II. 광주특수교육의 방향

III. 중점 추진 과제

IV.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V.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결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순	구분	결과통지 교부번호	진단평가 교부번호	현 소속학교명	현 배치 유형	현 학년	학생명	배치 학교명	배치 유형	배치 학년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유형	심사 결과			비고
												자격	부적격	재심	
1	재배치								특수학급			○			
2	신규								일반학급			○			
3															

- ※ 선정·배치 심사 결과를 현 소속학교와 배치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 ※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원본은 현 소속학교로 우편 발송하고, 학교에 서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본을 전달
(단, 타 시·도에서 광주 관내로 재배치되는 학생은 재배치 학교로 결과통지서를 발송)
- ※ 통지서 원본은 학교 보관 후 전학(재배치)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 해당학교로 송부
- ※ 결과통지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해당 학교 교육활동 이외에 사용 금지

〈참고5〉 제출 공문 양식(예시)

○○○ 학교

수신자 ○○○○교육감(교육장)
(경유)
제 목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외 관리(유예, 면제)에 따른 학생 변동 현황 제출

1. 관련
 - 가. 중등특수교육과-0000(2026.00.00)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 나. 00중학교-0000(2026.00.00) 의무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2.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외 관리(유예, 면제)에 따른 학생 변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사유(비고)
유예	○○○	2000.00.00.	○○학교	초 3-1	건강이 좋지 않아 ○월 ○일자로 유예를 함.
면제	○○○	2000.00.00.	○○학교	중 2-1	사망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처리(2000.00.00.)

끝.



목적

- 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으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인 학교 복귀 지원

지원 근거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기본 방침

- 가. 건강장애학생의 선정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나.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무상 지원
- 다. 건강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 라. 건강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통학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치료지원비)
- 마. 장기결석학생은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 또는 병원학교 등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지원

세부 지원계획

가.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선정·배치

1) 선정 기준

가) 건강장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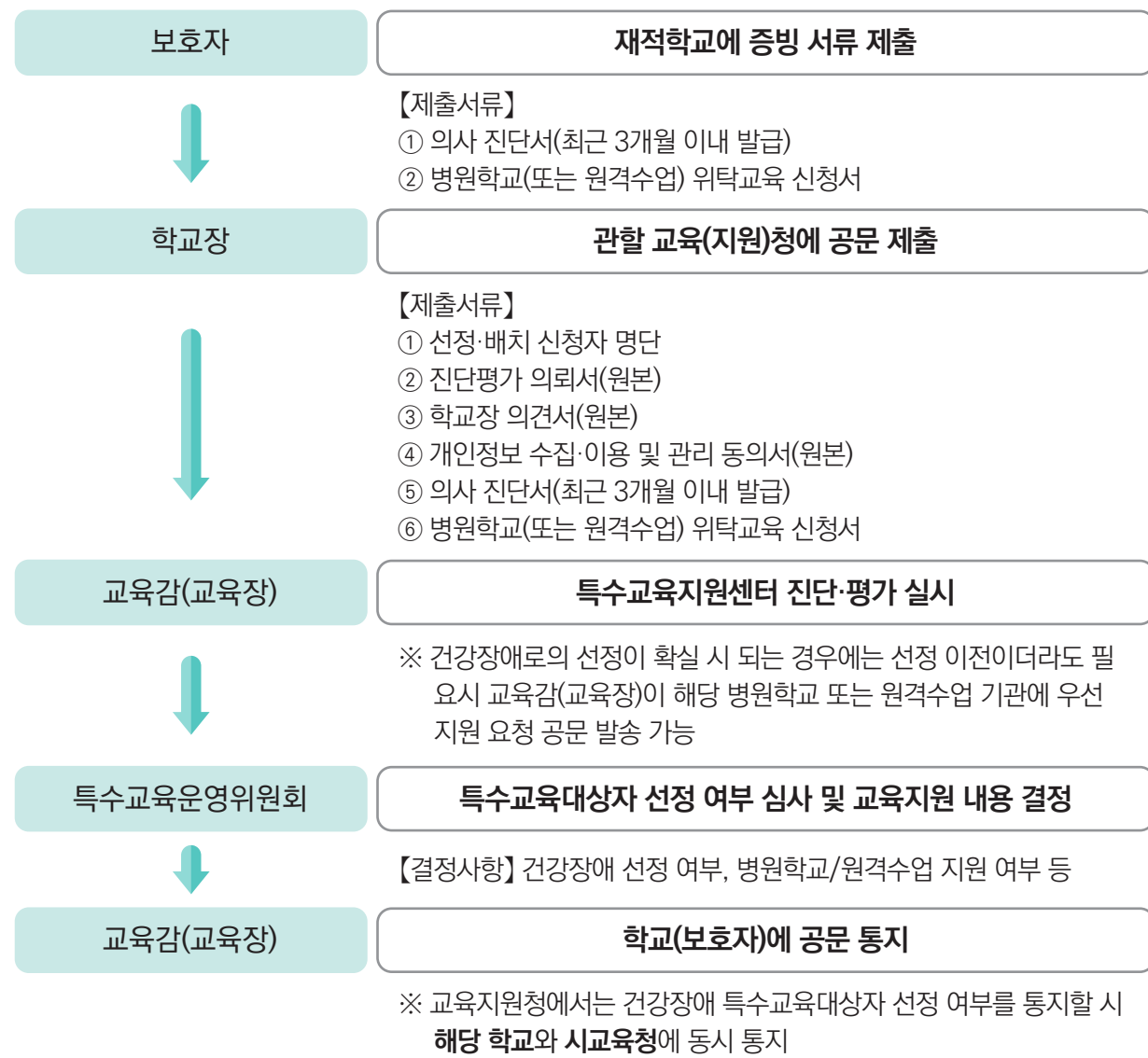
* 만성질환이란 백혈병, 소아암, 각종 종양 등 장기적인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을 말함 (다만, 소아당뇨, 아토피, 뇌전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은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학교에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강장애학생 선정에서 제외)

나) 장기결석

- 건강장애학생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 화상, 교통사고 등 외상적 부상일지라도 심각한 신체·기능상의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의료적 처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음

2) 건강장애학생 선정·배치 절차



나. 건강장애학생 선정·배치 취소

1) 선정·배치 취소 사유

가) 건강장애학생 선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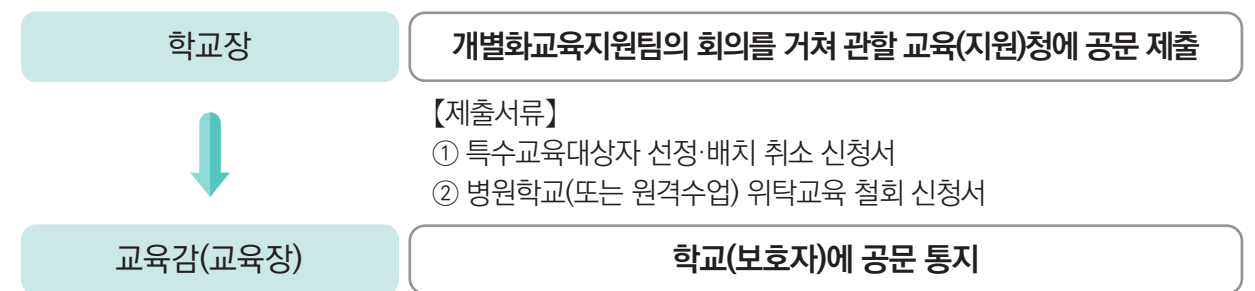
나) 소속학교로 복귀하여 정상 출석하는 경우

※ 치료 또는 진단을 위해 월 1~2회 외래 치료하는 경우 포함

다) 소속학교(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건강장애학생은 의무교육대상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후 자퇴할 수 있음

2) 선정·배치 취소 절차



다. 건강장애(장기결석)학생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1) 병원학교 위탁교육

병원학교명	설치 장소	운영 학교	연락처	관할교육청
학마을 병원학교	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내)	광주선명학교	062-220-5335	광주광역시 교육청
여미사랑 병원학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오성초등학교	061-379-7935	전라남도 교육청
		화순제일중학교	061-379-7945	
느티나무 병원학교	국립나주병원	나주이화학교	061-330-4234	

2) 원격수업 위탁교육

기관명	지원 대상	연락처	위탁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초·중·고 재학생 및 신규 대상자 (상급학교 진학생 포함)	043-530-9747	전국 16개 시·도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초·중·고 재학생 (기존 수강자 중 희망자)	055-266-4416	광주 외 12개 시·도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절차

절차	업무 처리	내용
전자문서 제출	- 초등·학교, 중학교 → 해당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특수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제출서류】 ① 병원학교/원격수업 위탁교육 신청서 ② 학교장 의견서 ③ 의사 진단서 (기 선정자는 기 제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시 제출 필요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 등록	교육청(교육지원청)	전자문서 발송
출석 통보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 → 학교	병원학교: 병원학교에서 출석확인서를 학교로 송부 원격수업 기관: 담당교사가 원격수업 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출석확인서 직접 확인
출석 인정	학교	학교는 출석확인서를 반영하여 출석 인정

라. 학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

※ 202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반드시 확인

1) (학적)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2) (출결) 소속 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 ※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또는 원격수업),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중복 수강일은 1일로 산정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3)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마.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학교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복귀 교육지원 방법 및 내용은 「2026학년도 건강장애(장기결석 포함)학생 교육 지원 업무 매뉴얼」참고하여 운영

5

행정 사항

가. 선정·배치 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건강장애학생 선정·배치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서식1-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서식2> - 학교장 의견서<서식3-1> - 기타 참고서류(복지카드, 진단서 및 임상심리평가서 등)
	장기결석 학생	- 학교장 의견서<서식3-1> - 기타 참고서류(병원 발행 진단서 등)
선택	병원학교 신청	- 병원학교 위탁교육 신청서<서식4> ※ 초·중·고등학교 해당
	KEDI(스쿨포유) 원격수업 신청	- 한국교육개발원(KEDI) 입교 신청서<서식7> ※ 초·중·고등학교 해당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신청	-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신청서<서식9> ※ 기존 꿈사랑학교 수강자 중 계속 수강 희망 학생 해당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동시 신청	- 병원학교 위탁교육 신청서<서식4> - 해당 원격수업 신청서<서식7>(또는 <서식9>)

나. 선정·배치 취소(철회)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건강장애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5-1> - 해당 위탁교육 철회 신청서 - 병원학교 위탁교육 철회 신청서<서식6> - 한국교육개발원(KEDI) 스쿨포유 퇴교 신청서<서식8> -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철회 신청서<서식10>
장기결석학생	- 해당 위탁교육 철회 신청서 - 병원학교 위탁교육 철회 신청서<서식6> - 한국교육개발원(KEDI) 스쿨포유 퇴교 신청서<서식8> -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철회 신청서<서식1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명단(신규, 재배치, 장애유형 변경)

작성자(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연번	구분	재학학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소 (도로명)	연락처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유형	장애인 복지카드		배치 희망학교(학급)						특이 사항			
		학교명	학급 유형	학 년					보호자명	담당 교사명		영역	장애 정도	1 희망			2 희망				3 희망		
														학교명	학급 유형	학교명	학급 유형	학교명	학급 유형		학교명	학급 유형	학교명
1	신규	광주 ○○ 중학교		3	○○○	남	2000. 00 00	광주광역시 서구 ○○로 00	김○○ 010-○○○ -○○○	내○○ ○○○ ○○○	지적 장애	중증		광주 ○○ 중학교	○○ ○○ 중학교	특수 학급	△△ 특수학교						
2	재배치	○○ 초등학교	특수 학급	6	○○○	남	2000. 00 00	광주광역시 동구 ○○로 00	010-○○○ -○○○	○○○ ○○○ ○○○	지적 장애	없음		△△ 초등학교	○○ 초등학교	일반 학급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초등학교	특수 학급

[작성 방법]

- ※ 구분: 신규, 재배치, 장애유형 변경, 취소, 취학유예(유예), 면제, 재취학 중 해당하는 사항 입력
 - ※ 재학 학교명: 정식 학교 명칭을 작성[○○초등학교, 광주○○중학교, ○○고등학교로 정확하게 작성]
 - ※ 재학 학급유형: 일반학교는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 을 작성(신규 신청은 작성 제외) / 특수학교는 ‘순회학급’일 경우만 작성
 - ※ 학년: 초·중·고등학교생은 해당 학년을 기입
 - ※ 주소: 도로명 주소로 작성
 -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장애유형 중 가장 우선하는 유형 기입
 -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기입(장애정도: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작성)
 - ※ 배치 희망학교: 반드시 보호자와 상담 후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를 작성(정식 학교 명칭 작성)
 - 건강장애 신규 신청 시 학교명에 위탁교육 희망기관명* 작성(*화순전남대학교 여미사랑 병원학교, 국립나주병원 느티나무 병원학교, 전남대학교 학마을 병원학교)
 - ※ 배치 희망 학급유형: 병원학교/원격수업 중에서 작성
 - ※ 특이사항: 장애인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학교 배치, 지원인력 지원 필요, 진단평가 필요성 등 기록
- [유의 사항]
- ※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및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제출 시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출석 심사 실시

〈서식2〉 97쪽 참조

〈서식3-1〉 (학교 ⇒ 교육(지원)청)

학교장 의견서

대 상 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소속 학교	학교 제 학년 반 (재학·졸업)				
	배치 희망학교(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신청 유형 (해당 칸에 ○ 표시)		건강장애		기타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결석
질병명 또는 장애영역						
위탁교육 희망기관명 (해당 칸에 ○ 표시)		화순전남대학교 여미사랑 병원학교		국립나주병원 느티나무 병원학교	전남대학교 학마을병원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원격수업(KEDI)
						꿈 사랑 학교 원격수업
학 교 장 의 견		* 학생의 예상되는 치료 기간을 토대로 작성일 현재까지의 결석일수 및 학업수행에서의 특수교육 지원 요구 필요성과 지원 내용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기록				
위 학생은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교육감(장) 귀하						

병원학교 위탁교육 신청서

신청 유형		☐ 건강장애	☐ 장기결석	☐ 기타 특수교육 대상자
위탁교육 희망기관명		☐ 화순전남대학교 여미사랑 병원학교 ☐ 전남대학교 학마을 병원학교		☐ 국립나주병원 느티나무 병원학교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퇴교 시,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6-1> 반드시 첨부
학생	소속 학교		학년-반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병 명		치료병원	
	연락처		E-mail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 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집 전화		휴대전화	
담임교사	성 명		연락처	
유의사항	※ 학교장의견서, 병원진단서 등과 함께 첨부(스캔)하여 공문 제출 ※ 건강장애 신청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 ※ 건강장애학생의 건강이 회복되어 학교로 복귀하면 반드시 병원학교 철회신청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본 기관이 학생의 학적 자료(학교, 학년반, 연락처, 주소 등) 및 건강 자료(병명, 치료 병원 등),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인적사항(성명 및 연락처)을 위탁교육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탁교육 업무처리 및 관련 교육 제공, 관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월일

보호자 (인)

담임교사 (인)

()교육감(장) 귀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성 별	
특수교육대상자 장 애 유 형		생 년 월 일	
현재 배 치 유 형	()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선정 배치 연도	
주 소			
보 호 자 명	관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락처

1. 특수학급(통합학급) 담임교사 의견

영역	중 합 의 견
학습 활동	
생활 능력	
기타	

2.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의견

심의 일시		참석자	
선정·배치 취소 사유의 타당성			

위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받아 특수교육을 받아왔으나, 일반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 ○ 학 교 장 (직인)

()교육감(장) 귀하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선정·배치 취소 관련 심의 필히 개최

■ 첨부 제출 서류 (※ 신청서 등은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 보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보호자용)<서식6-2> (참고 자료 필수 제출)

〈서식7〉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입교신청서

학생 정보	신청유형	☐ 스쿨포유 입교		☐ 병원학교 학생 콘텐츠 이용		
		※ ‘병원학교 학생 콘텐츠 이용’은 병원학교 위탁 학생의 스쿨포유 동영상 콘텐츠 이용으로 1.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스쿨포유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참여가 지원되지 않음 2. 스쿨포유에서의 출결관리 및 상담이 지원되지 않음(병원학교 병행 개념과 다름)을 의미함.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		
	당해 학년 수업일수 (입교 전)	※ 입교신청서 작성일 전까지 발생한 소속학교의 수업일수		당해 학년 수업일수 (연간)	※ 소속학교의 연간 총 수업일수	
	출석일수 (입교 전)	※ 입교신청서 작성일 전까지 발생한 학생의 출석일수				
보호자 정보	성명			관계		
	연락처					
관리교사 정보	성명			직책	담임 / 특수교사 / 기타 (기타:)	
	연락처	교무실 직통전화				
		휴대전화				

위 학생은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스쿨포유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	성명(학생, 보호자, 관리교사),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반, 수업일수, 결석일수, 전화번호(학생, 보호자, 관리교사), 학교 전화번호,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수집 및 이용목적	① 본인 확인 및 학습지원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년/반, 전화번호,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② 출결 처리 및 학습관리에 이용 : 보호자 및 관리교사 정보, 수업일수, 결석일수
보유기간	졸업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

항목	병명
수집 및 이용목적	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습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보유기간	졸업 후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위탁 받는 자	한국교육개발원
업무내용	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및 학적 관리 ※URL:s4uhs.onlineschool.or.kr(고) / s4ums.onlineschool.or.kr(중)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제 요구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14세 미만인 학생) 법정대리인: (인)

학교장 귀하

〈서식8〉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퇴교신청서

나이스(NEIS)
위탁 종료 일자

※ 소속학교에서 나이스(NEIS) 위탁학생 등록 메뉴에서 입력한(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종료 일자를 기재

퇴교 사유

☐학교복귀

☐졸업

☐사망

☐기타

※ 기타 사유:

성명

학교

학년/반

위 학생은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퇴교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학교장 (직인)

〈서식9〉 (보호자 ⇒ 학교 ⇒ 교육(지원)청)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신청서

* ID발급은 꿈사랑학교 홈페이지(http://www.nanura.org)에서 직접 회원 가입(수강 신청)

신청 유형		☐ 건강장애 ☐ 장기결석 ☐ 기타 특수교육대상자		
학 정 생 보	이름		생년월일	
	성 별		병 명	
	발 병 일		치료병원	
	학 교		학년-반	
	장래희망		취미/특기	
보 호 자 정 보	이름		관 계	☐ 친권자 ☐ 법정대리인
	연 락 처		학생연락처	
담임교사 정 보	이름		직 책	
	연 락 처		학교연락처	
개 인 정 보 수 집 및 활 용 동 의	학 생	본인(학생)은 본기관이 학적 자료 (학생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교육(지원)청명, 휴대전화, 자택전화, 주소) 및 건강 자료 (병명, 발병일, 치료병원, 건강장애여부)를 학적기록부 기재, 이용자수 통계, 물품배송 및 원격수업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위하여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만 14세 미만 아동의 위와 같은 자료 를 본 기관이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법정대리인의 성명: (인)		
	학부모	본인(학부모)은 본기관이 학교 교육 관련 내용 및 원격수업 교사의 아동에 대한 연락 사항 알림과 관련하여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담임교사	본인(담임교사)은 본 기관이 학교 교육 관련 내용 및 학생의 수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연락을 위한 SMS 문자 서비스와 관련 서류 발송 을 위하여 본인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꿈사랑학교 원격수업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학 생: (인) 보 호 자: (인) 담임교사: (인) ()교육감(장) 귀하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장 귀하				



가. 특수교육 운영비

- 1) 목적: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 2)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학교
- 3) 지원액: **학교표준교육비의 1% 이상 권장**(학교장 판단 사업)
- 4) 집행내용: 장애체험 및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통합교육 교재·교구 구입비, 사회통합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등
- 5) 비고: 예산 편성 현황을 1학기 중에 조사할 예정이며, 집행결과는 별도 제출하지 않음

나. 특수학급 운영비

- 1) 목적: 유·초·중·고에 설치된 특수학급 운영 지원
- 2) 지원대상: 특수학급
- 3) 지원액: 유치원은 급당 3,000천원, 초·중·고교는 급당 1,500천원
- 4) 집행내용: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구입, 체험학습 관련 경비, 단기 지원 인력 지원, 정보화기기 구입, 학습용 보장구 구입, 유치원 역통합교육 등
※ 협의비(업무추진비)는 사업비의 **7%이내** 편성 가능
- 5) 결과 제출: 집행결과<서식>를 **2026.12.24.(목)까지** 제출(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 6) 집행 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인 경우): 시기, 방법 등은 <서식>(148쪽) 하단 참조

다. 직업교육 운영비

- 1) 목적: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직업교육 운영 지원
- 2) 지원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 3) 지원액: 고등학교 특수학급 급당 500천원
- 4) 집행내용
 - 교내외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교재교구 및 실습재료비, 기관이용 및 체험활동비 등)
 - 현장실습 활동비(교통비, 사업체 연계활동비, 직업훈련비, 상해보험료 등)
 - 기타(직업위탁교육 등 사업 추진 운영비)

5) 결과 제출: 집행결과<서식>를 **2026.12.24.(목)까지** 중등특수교육과로 제출
(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6) 집행 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인 경우): 시기, 방법 등은 <서식>(148쪽) 하단 참조

가. 목적: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급의 교육 환경 구축

나. 지원대상: 신·증설 및 노후(환경개선) 특수학급

다. 지원액: 신·증설비 급당 50,000천원, 환경개선비 급당 40,000천원

※ 교실 여건등에 따라 지원액은 증감될 수 있음

라. 집행내용: 특수학급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비, 교재·교구 및 비품 구입비 등

구분	구입 항목
교실 환경구성비	싱크대, 전기온수기, 냉난방기, 전기공사 관련, 천장, 벽체 도장 및 인테리어, 출입문 교체, 창문 커튼 설치, 바닥 난방 공사, 정보화기자재(TV 및 교사용 컴퓨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재·교구비	자료함, 책장, 사물함, 실습용 작업대, 책상 및 의자, 교재·교구, 학생용 컴퓨터, 프린터, 직업교육용 기자재, 스캐너, 코팅기, 세절기 등
기타	냉장고, 전자렌지, 탈의 코너장, 옷장, 파티션, 청소용구 등

마. 집행결과 제출: 가능한 1학기에 집행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집행결과<서식>을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바. 집행 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인 경우): 시기, 방법 등은 <서식>(148쪽) 하단 참조

가. 신설된 학급

1) 학급 개설에 따른 관련 장부 준비

- 학교(년) 교육과정, 학급 교육과정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 특수학급 연혁지(권장)

- 개별화교육계획,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원본 또는 사본)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원본 또는 사본)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원본 또는 사본)
 (※2026학년도 이후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진단평가 검사지 사본)
- 특수학급 비품 대장(에듀파인 활용하여 출력 보관)
- 학부모 상담 기록부
- 기타 특수학급에 필요한 장부

2) 특수학급 교실 환경 정비

- 교실은 정규 교실 확보
 - 가급적 통합학급과 가까운 곳에 배치
- 교수·학습 시설 및 자료의 확보
 - 학교의 잔여 시설 및 자료 활용
 - 부족분은 학교 교육비(급당 경비 등)로 구입

3) 교육과정 운영 준비: 2~3월 중

- 통합학급과 시간표 조정, 분리교육 교과와 통합교육 교과의 확정
 - 분리교육 교과: 특수학급 교육과정과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통합교육 교과: 통합학급 교육과정 적용

나. 폐쇄된 학급

- 1) 관련 장부: 교무부에 인계
- 2) 학습 자료 및 교재 교구류: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협의하여 처리
- 3) 특수학급 교실: 당해 및 다음 연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당해 및 다음 연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를 고려하여 학급 존치 보존(최소 3년) 또는 특수 교육 교육활동 공간 활용(통합교육지원실, 직업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등)

〈서식〉 (학교 ⇒ 교육(지원)청)

○○○○ 운영비 집행결과 보고

_____학교

□ 집행 총괄

(단위: 원)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비 고

□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항 목	금 액	세부 산출(집행)내역
프로그램 운영비		· 점토공예 강사비: 70,000원*1명*2회=140,000원 ·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50,000원*3종*2회=300,000원
교재·교구구입비		· 학급 물품 구입: 200,000원*1식=200,000원
체험학습비		· 프로그램 참가비: 20,000원*6명*1회=120,000원 · 교통비: 3,000원*6명*1회=18,000원
협의회비		· 개별화교육협의회비: 2회*50,000원=100,000원 ※ 협의회비(업무추진비) 7% 이내 반드시 준수
합계		

※ [특수학급 운영비, 직업교육 운영비, 신·증설비, 환경개선비,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비,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결과 보고

- 집행결과는 각 운영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 2026.12.24.(목)까지(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 (중요) 집행 잔액(10만원 이상) 변경 시에 집행결과를 수정 제출: 2027.2.5.(금)까지
- 수신처: 고·특수학교는 중등특수교육과, 유·초·중학교는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집행 잔액 반납(10만원이상인 경우): 수기 고지서가 아닌 가상계좌를 통한 반납

- 반납 시기: 재정과에서 별도 안내
- 가상계좌는 반납일 내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반납기간 외에는 입금불가
- 반납 가상계좌 등록방법: 재정과에서 안내하는 ‘반납처리 업무매뉴얼’ 참조
- 비고 : 반납 공문 제출 불필요



1 목적

수요자 중심 교육활동 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 통합교육 역량 강화와 특수·일반교사 협업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통합교육 현장 확산 도모

2 기본 방침

가.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통합교육 운영 계획 수립·운영

나. 통합교육지원단 등 전문가 및 관계기관 연계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다. 특수·일반교원,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 확대

3 세부 운영계획

가. 통합교육 계획 수립·운영

- 1) 대상: 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유·초·중·고등학교
- 2) 내용: 통합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대상자 수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설계 및 지원방안, 일반·특수교사 협력교수,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한 평가조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 등
- 3) 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특성 및 학교(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기관)별 자체 통합교육 운영(지원) 계획 수립·운영

나.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의무교육 운영

- 1) 대상: 비장애 학생, 교직원, 보호자
- 2) 내용: 다양성 이해 및 장애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 학생 대상 장애이해(인식개선)교육(연 2회 이상, 의무)
 - 교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 학부모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연 1회, 권장)

3) 방법

- (학생) 교육과정 연계 활동, 관련 공모전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참여 등
- (교직원) 전문 강사 및 우수 콘텐츠 활용 집합·원격 교육 연수 운영
- (학부모)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학부모 연수 운영

다.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공모·운영

- 1) 대상: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 유치원 ※ 동·서부교육지원청별 1개원
- 2) 지원 예산: 10,000천원(교당 5,000천원) ※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내용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 및 유·초 연계교육 지원
- 장애·비장애 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유치원 교사와 연계한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자료 공유
- 유아·보호자·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연수 운영 등

4) 방법·절차

- 공모 안내(3월) → 희망 유치원 공모 신청(3월) → 선정 심사(3월) → 선정 결과 안내(3월)
→ 예산 교부(4월) → 통합교육 운영·컨설팅(4~11월) → 사례 나눔, 결과 보고(11월)

라. 통합교육 동아리 운영

- 1) 대상: 통합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
- 2) 지원 예산: 19,000천원(팀당 1,000천원, 19팀)
 - ※ 신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3) 운영 내용
 - 일반·특수교사 자발성을 바탕으로 학습공동체 구성 및 주제 선정
 -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기적 모임 운영(월 1회 이상)
 - 보편적 학습설계를 적용한 협력 수업, 장애 공감 교육활동 등 운영
 - 통합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과정별 협력교수 모형 개발 등

4) 방법·절차

공모 안내(3월) → 공모 신청(3월) → 심사, 선정 결과 안내(3월) → 예산 교부(4월) → 동아리 운영(4~11월) → 결과 보고, 사례 나눔(12월)

마. 통합학급 협력수업 운영

- 1) 대상: 4교(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유치원 2교, 초등학교 2교 예정)
- 2) 지원 예산: 8,000천원(팀당 2,000천원) ※ 신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3) 운영 내용: 협력수업 설계 및 운영, 협력수업 관련 협의회, 컨설팅, 연수 등 운영
- 4) 운영 방법

공모 안내(3월) → 공모 신청(3월) → 심사, 선정 결과 안내(3월) → 예산 교부(4월) → 통합학급 협력수업 운영(4~11월) → 결과 보고, 사례 나눔(11월)

4 행정 사항

가. 통합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일반학교(유치원)
- 2) 내용: 특수·일반교육 교원의 협력을 통해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 연수 등 포함
※ 공문안내 [서식]참고, 학교 교육과정(특수학급)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
- 3) 행정사항: 자체 내부 결재, 특수교육 현황 조사 시 통합교육 계획 수립 여부 조사

5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계획



1

목적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활동 개선,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 통합교육 지원 강화 등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2

기본 방침

- 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육청 단위의 지원단 통합 구성
- 나. 교육과정(학급경영) 운영 지원, 진단·중재 연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행동 지원 등 지원 중심의 지원단 운영
- 다. 지원단 운영 영역 따른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 추진 및 수당 지급
- 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별학생에 적합한 진단·중재 연계 지원 강화

3

세부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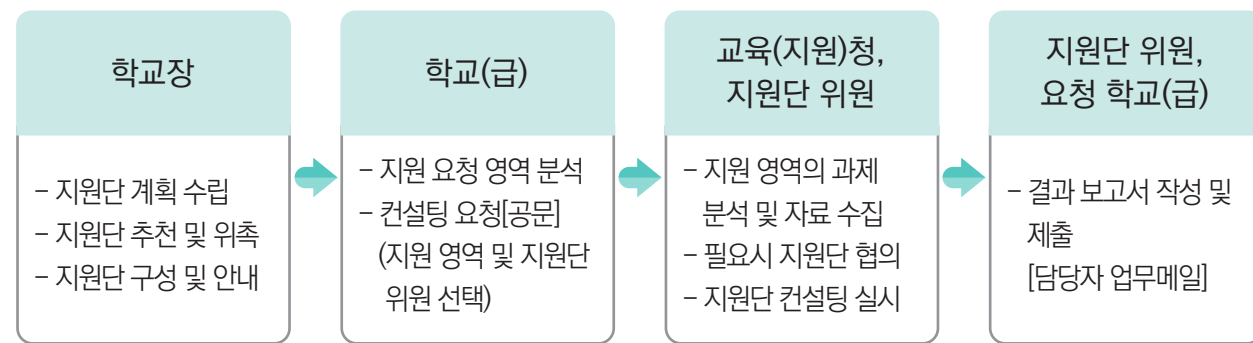
가. 대상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교 교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그 가족 등

나. 지원단별 운영 영역 및 내용

지원단	영역	내용(주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단	교육과정 및 학급 경영 운영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수업, 개별화교육계획,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학급경영, 통합교육, 특수학급 신·증설 에듀테크 활용 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진단·중재연계 지원단	진단·중재연계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육환경 재구성 지원, 학습 코칭 등 중재 지원, 심리상담 지원, 가족지원, 진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동중재 지원단	특수교육대상자 행동 중재 지원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문제행동 대처 지원,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가정 및 학교 환경 재구성 등

다. 추진 절차



라. 지원단 위원 수당 지급

- 1) 지원단 지도(컨설팅) 수당 지급: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기타 수당'(162쪽) 기준으로 지급
- 2) 수당 지급 기준: 지원단 컨설팅 요청 의뢰 1건당 수당을 말함
- 3) 지급 방법: 지원단 컨설팅 결과(서식2, 3)를 수합한 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수당 지급

4 행정 사항

가. 학교 요청 컨설팅

1) [학교] 지원단 컨설팅 요청서 제출

가) 제출처

- 교육과정 운영 및 진단·중재연계[서식1-1], 행동중재지원단[서식1-2] 요청 시
 -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지원단 소속 학교(기관)로 공문 발송
 - 고등학교·특수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지원단 소속 학교(기관)로 공문 발송

나) 제출자료: 지원단 컨설팅 요청서(서식1-1, 서식1-2)

다) 제출기한: 컨설팅 요청일의 2주 전까지 제출

- 라) 비교: 요청 영역에 따라 지원단(1~3명)과 사전에 일정 협의, 요구 및 내용에 따라 장학사, 사회복지사 등 업무담당자가 추가 참석 가능
※ 지원 영역 및 일정 협의가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

2)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 요청 학교(급): 컨설팅을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서식2)를 담당자 업무메일로 제출
- 지원단 위원: 컨설팅을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서식3)를 담당자 업무메일로 제출

3)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위원 컨설팅 횟수 제한

- 지원단 위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소속 학교의 업무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단 컨설팅 요청 횟수를 월 3회로 한정

나. 특수학급 운영 활성화 지원

- 1)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중 특수학급을 처음 운영하는 교사
- 2) 시기 및 횟수: 1차(2~3월중), 2차(필요시)
- 3) 방법: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단 위원과 연계하여 실시
- 4) 비교: 1차 컨설팅 결과에 따라 2차 필요 학교에서는 '학교 요청 컨설팅' 실시

다. 특수학급 운영 관련 자체 점검 실시

- 1)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전체
- 2) 시기 및 횟수: 1차(6~7월중), 2차(11~12월중)
- 3) 방법: 특수학급 운영 관련 자체 점검 목표표(서식5)을 활용하여 자체 점검 실시
- 4) 비교: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희망 학교에서는 '학교 요청 컨설팅' 요청

라.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컨설팅

- 1) 대상: 특수학급 설치교
- 2) 시기: 정기(4월, 12월 예정) 및 수시
- 3) 방법: 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 특수교육 협의회 중심으로 컨설팅 실시
- 4) 내용: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학급 경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특수학급 운영 지원 및 자료 공유
- 5) 비교: 사안 발생 시 별도 컨설팅 실시

〈서식1-1〉 지원단(교육과정 및 진단·중재) 컨설팅 요청서

(※ ‘4. 행정사항’의 제출처를 참고하여 해당 학교(기관)로 공문 발송)

지원단(교육과정 및 진단·중재) 컨설팅 요청서

요청자	소속		컨설팅 요청 일시	(년 월 일)	
	직위		컨설팅 실시 장소		
	성명		컨설팅 참석 예정자(학교)		
	연락처				
컨설팅 요청 영역 (해당 영역 선택)		☐ 교육과정(학급경영) 운영 지원 ☐ 진단·중재연계 지원			
컨설팅 요청 내용(주제)					
컨설팅 요청 세부 내용	현황(실태)				
	요청 내용				
지원단 요청 인원 ()명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와 같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〇〇. 〇〇. 〇〇.

〇 〇 학교장 [직인생략]

〈서식1-2〉 행동중재 지원단 컨설팅 요청서

(※ ‘4. 행정사항’의 제출처를 참고하여 해당 학교(기관)로 공문 발송)

행동중재 지원단 컨설팅 요청서

요청자	소속		컨설팅 요청 일시	(년 월 일)	
	직위		컨설팅 실시 장소		
	성명		컨설팅 참석 예정자(학교)		
	연락처				
컨설팅 요청 영역 (해당 영역 선택)		☐ 수업방해 ☐ 신체상해 ☐ 기물파손 ☐ 성 ☐ 기타			
컨설팅 요청 내용(주제)					
컨설팅 요청 세부 내용	현황 및 문제점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 도전행동, 지원이 필요한 영역 등)			
	강점	(학생의 강점과 관심사 등)			
	요청 내용	(구체적 지원 요구 방향 제시)			
지원단 요청 인원 ()명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와 같이 행동중재 지원단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〇〇. 〇〇. 〇〇.

〇 〇 학교장 [직인생략]

〈서식2〉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서(학교용)

(※ 7일 이내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담당자 업무메일)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서(학교용)

요청자			컨설팅 일시	컨설팅 요청 영역	컨설팅 요청 내용(주제)					
소속	직위	성명								
지원단 참석 위원			컨설팅 받은 내용							
소 속	직위	성명	※ 구체적인 내용 개조식 작성							
평 가 항 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지원단 컨설팅 절차 및 진행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았다.										
성실하게 컨설팅을 받았다.										
충분한 면담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										
교육활동에서 개선할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전과 이후의 교육활동 변화가 기대된다.										
원하는 영역과 내용에 대한 컨설팅은 효과적이었다.										
주위 학교나 교사에게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										
다른 영역((행동·정서·학습 등)에서도 컨설팅을 받고 싶다.										
※ 해당란에 ○로 표시										
컨설팅 후기		※ 위의 ‘평가 항목’ 외에, 지원단 컨설팅 만족도 및 향후 발전적인 컨설팅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기술(분량은 자유)								

〈서식3〉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서(지원단 위원용)

(※ 7일 이내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담당자 업무메일)

지원단 컨설팅 결과 보고서(지원단 위원용)

컨설팅 학교명			컨설팅 요청자		
컨설팅 일 시			실시 장소		
컨설팅 참 석 위 원	소속	직위	성명	실제 컨설팅 시간	비고
				00:00~00:00	
				00:00~00:00	
				00:00~00:00	
요 청 영 역			요청 내용 (주제)		
컨설팅 내 용 (구체적으로 기술)	학교 질의 내용				
	※ 학교에서 질의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컨설팅 내용				
	※ 학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컨설팅 위원의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0〇〇. 〇〇. 〇〇.
지원단 위원 (대표) 〇 〇 〇 (서명)

〈서식4〉 지원단 위원 카드

(담당자 업무메일로 제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위원 카드

성명	한글:	학교(기관)전화		
	한자:	휴대전화		
생년월일		E-mail		
소속			직위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컨설팅 분야 (해당 영역에 모두 체크)		☐ 교육과정(학급경영)운영 지원단 ☐ 진단·중재연계 지원단 ☐ 행동중재 지원단		
소개사항	1. 주요 경력			
	2. 연구 경력 (저서, 논문)			
	3. 컨설팅 실적 (컨설팅 분야 관련 실적)			
	4. 기타 참고 사항			

〈서식5〉 유·초·중·고 특수학급 자체 점검 목록표

특수학급 운영 관련 자체 점검 목록표

(※ 유치원 등 학교급의 특성 및 운영방법에 따라 서식(내용) 변경 사용 가능함)

학교명	특수교사 성명	자체 점검 일시	2000.00.00.(0) 00:00~00:00
구분	자체 점검 항목	자체 점검 결과	비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의 요구와 특성 등을 반영하여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하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성교육 및 인권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운영 계획에 수립하여 운영하는가?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장애이해와 통합 교육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호자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 하고 있는가?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가?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특수학급 교외체험활동 시 안전지도 계획이 포함되었는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을 2주 이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에게 개별화교육 계획을 안내하고 있는가?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		
	매 학기 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학생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특수교육		

구분	자체 점검 항목	자체 점검 결과	비고
	대상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행동중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개별 학생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여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였는가?		
특수학급 교수-학습 활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제공과 촉진을 하고 있는가?		
	교수-학습 활동 시에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통합학급 교수-학습 활동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교수-학습 활동 시에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가 반영 되어 있는가?		
	학교규칙(학칙)에 장애학생 차별금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가?		
통합교육 환경조성	통합학급 교사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와 통합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가?		
	일반학생 대상으로 장애이해 등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보호자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비가 학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가?		
총평 및 향후 계획			

6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계획



1

목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과 동행하는 보호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교육복지 증진

2

지원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3

세부 운영계획

가. 지원대상자

1) 일반학교 지원 대상자

가) 선정 기준

- (1)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2)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나) 선정 제외 기준

- (1)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 (2)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700m 이내인 경우
 - (나) 버스 정류소 정차 구간이 3개소 이하인 경우
 - (다)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이동시 10분 내외인 경우 등

※ 단, (가)~(다)항의 선정 제외 기준에 해당할지라도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해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하여 개별적인 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예: 휠체어 이용 학생 등)

(라)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2) 특수학교 지원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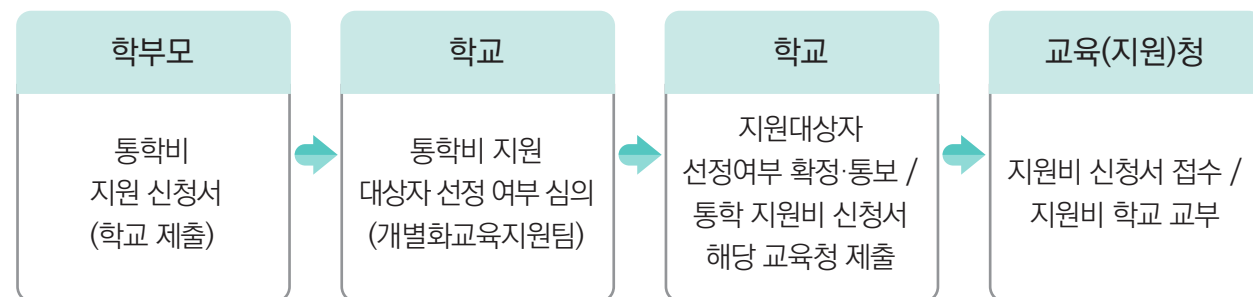
가) 선정 기준

(1)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여 개별 통학하는 경우

(가) 통학버스 노선 승차 지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통학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나) 질병, 통제가 어려운 부적응 행동 등 특별한 사유로 학교버스를 이용한 통학이
불가능하여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단, 일시적 이용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1)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대상

- 2026학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 재학 중 거주지 변동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재학생 중 통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보호자

※ 지원 대상자로 기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재학생은 변동 사항이 없을 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추가 심사 불필요)

2) 지원 대상자 심의 및 선정 기구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결정

- 특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기구에서 결정

※ 관련 회의 개최 시 학부모 민원 소지 방지를 위해 학부모 대표 1인 이상, 또는 해당
보호자를 선정 심의 과정에 참여토록 조치

※ 통학비 신청자 명부 및 심의 결과(서식2-1)) 필히 작성·보관

다. 통학비 지급 기준

1) 2026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2)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
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 수학여행(예: 2박 3일인 경우 1일 교통비만 지급), 출석인정결석(미지급) 등을 고려

※ 보호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학생의 통학을 보조한 경우 보호자 교통비만 시내버스 요금
기준 지원(학생 통학비 지원 불가)

※ 예기치 못한 학생의 건강상 문제 발생 또는 신학기 통학 적응지도 등과 같은 사유로 1개월
이상 보호자 동행 또는 개별 통학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통학비 지원을 요구할
시에는, 해당하는 기간만큼 학교에 교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학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관련 심의회에서 결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친인척, 활동지원사 등은 동행 보호자로 판단하여 보호자 지급 기준으로 지원 가능

2026학년도 통학비 지원 기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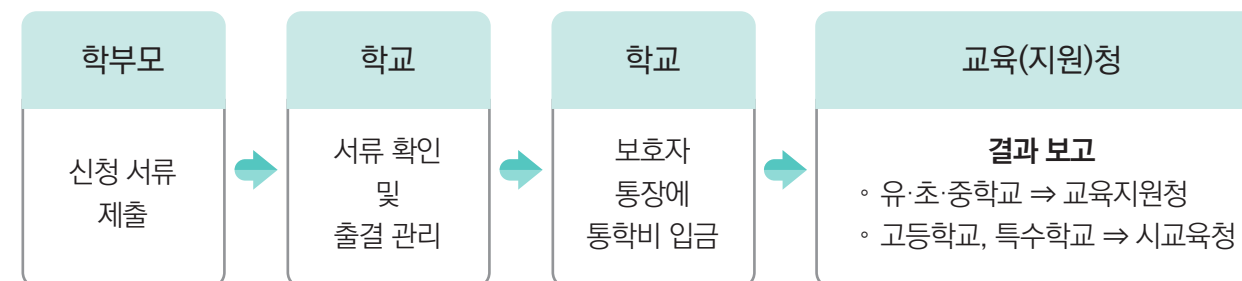
지원 대상	학생				동행 보호자 (1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구분	만6세 미만	만6세~ 만12세	만13세~ 만18세	만19세 이상	최대 4회
요 금 (1일 편도)	무료승차	무료승차	400	1,400	1,400
지원금액 (1일 최대)	무료승차	무료승차	800	2,800	5,600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지자에 한함)

※ 2007~8, 2013~14년생은 생년월일에 따라 요금 변동이 있으니 유의하여 지원

라. 지급 방법

1) 절차



2) 시기

-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로 분기별(또는 학기별) 교부 예정

- 학교: 분기별(또는 학기별)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실제 등교한 날을 적용 지원

- 분기별 지급 시: 1/4분기의 경우 3, 4, 5월 분을 6월 초에 지급
- 학기별 지급 시: 1학기 분은 여름방학 전, 2학기 분은 2학기 종료 후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배치 받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는 선정·배치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함

3) 지급내역 관리

- 분기(학기)별 통학비 지급 내역<서식2-2>을 작성 보관

4 행정사항

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안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비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의무교육 책무성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바, 본 지원의 취지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람

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절차 간소화

통학비 지원대상자로 기 선정된 학생은 거주지 변동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인해 별도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 대상으로 함

다.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치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도 통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대중교통(또는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관련 심의기구에서 심의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라. 통학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학교에서는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준수, 해당 교통수단의 이용 여부 점검, 소요 예산 산출 및 예산 집행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 대상으로 함

마. 통학비 관련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제출일
학부모 → 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학교 보관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선정 심사 대상자만 해당) ◦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서식1	3월 중 학교 제출
학교 →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제출용) ※ 유, 초, 중은 교육지원청 제출 ※ 고, 특수학교는 시교육청 제출	서식3	3월 중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집행 결과 ※ 유, 초, 중은 교육지원청 제출 ※ 고, 특수학교는 시교육청 제출	서식4	12.24.(목)
	◦ 통학비 집행 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안내

〈서식1〉 (보호자 ⇒ 학교) (학교보관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 년 반			학 생 명		
보호자명					
주 소					
신청 기준 부합 여부 (해당란 √)	학교~집까지 이동 거리()	버스정류소 승하차 구간	도보 등하교 시간 ()		
	집~통학버스 노선 거리()		통학버스 승차 시간 ()		
	km		개소	분	
지급 횟수 (1일 기준)	시내버스 이용 시			자가용 이용 시	
	학생		보호자		보호자
	1회	2회	2회	4회	2회 4회
	※ 등·하교 교통 수단이 다른 경우 해당란에 실 지급 횟수 기록				
지급 기간					
신 청 사 유					

위와 같이 통학(보조)함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생과의 관계:)
확인자: (인) (특수학급담임교사)
(인) (통합학급담임교사)

붙임: 첨부 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학교장 귀하

〈서식2-1〉 (학교보관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신청자 명부 및 심의 결과

순	학년반	학생명	심사일	지급여부 (○, X)		심의 결과 내용	확 인		
				학생	보호자		담당	교감	교장
1									
2									
3									

- ※ 위 서식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작성 가능
- ※ 요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자료 보관 및 관리 철저

〈서식2-2〉 (학교보관용)

() 분기(학기) 통학비 지급 내역

순	학년 반	이름		출석일수				금액(원)			계좌번호 (은행명)
		학생명	보호자 동행 횟수(일)	() 월	() 월	() 월	계	학생	보호자	계	
1											
2											
3											
합 계											

- ※ 위 서식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작성 가능
- ※ 요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자료 보관 및 관리 철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학교명	지원대상자 현황	순	학년	학생명	성별	학생신청내역						보호자신청내역						교통수단		비고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특수교육대상자 총 수		1				여름	겨울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겨울
지원대상자 수	학생만																			
	보호자만																			
	학생+학부모																			
	학교 버스																			
	도보																			
사립유·초·중·고·특수학교	기타																			
	신청총액																			
학생	보호자																			
	계																			
교부예정금액(단위:천단위 올림)																				

- 1. 신청기준 요건 기술 내용
학교버스 노선 불편, 1시간이상 탑승, 특별사유(질병, 부적응행동, 신변치리미흡 등) 등
- 2. 등하교 교통수단 기술 내용
지내버스, 자가용, 장애인 콜택시, 활동지원인 지원 등
- ※ 학교에서는 1학기 말 집행 내역 정산 후, 지원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 신청

〈서식4〉 (유, 초, 중 ⇒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 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비 집행 결과

(단위: 원)

학교명								
교부 금액 (A)			집행 금액 (B)			반납 (예정) 금액 (A-B)		
지원 결과	지원자 수			집행 금액 (B)				
	학생	보호자		학생		보호자		
합계								
지원비 세부 집행 내역표								
연번	학교급 및 학년	학생명	지원 일수	보호자 동행일수	집행 금액			비고
					학생	보호자	계	
1								
2								
3								
4								
5								

- ※ 집행 결과 보고
 - 2026.12.24.(목)까지(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 (중요) 집행 잔액(10만원 이상) 변경 시에 집행결과를 수정 제출: 2027.2.5.(금)까지
 - 수신처: 고·특수학교는 중등특수교육과, 유·초·중학교는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 집행 잔액 반납(10만원이상인 경우): 수기 고지서가 아닌 가상계좌를 통한 반납
 - 반납 시기: 재정과에서 별도 안내
 - 가상계좌는 반납일 내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반납기간 외에는 입금불가
 - 반납 가상계좌 등록방법: 재정과에서 안내하는 ‘반납처리 업무매뉴얼’ 참조
 - 비고 : 반납 공문 제출 불필요



1 목적

-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 및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 및 특기 신장 기회 제공
 나. 방과후학교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2 기본 방침

- 가.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나.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 정규수업 이후의 시간으로 편성 운영
 다.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는 교내 방과후학교(늘봄학교 방과후교육)와 외부 기관 방과후학교(개별지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초등학교 늘봄학교 방과후교육 참여 학생, 중·고등학교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에서 지원받지 않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지침 및 일반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지원
- 마. 「2026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에 의거 학교별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되, 본 지원계획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청의 「2026 광주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26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준용함
- ※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며,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단, 개별지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는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개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고 이후 각각의 학생에 대해 개별지원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우리 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업 등록 기관에서 제공하며,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전자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는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개별지원비 결제(2027년부터는 전자카드를 통해 개별지원비 결제)

가. 지원 개요

- 1) 지원 기간: 2026. 3. ~ 2027. 2.(12개월)
 - ※ 학교 내·외 개설(위탁) 강좌 운영 시 준비기간 및 방학기간 포함 여부는 학교 자체 계획에 따름
- 2)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3) 개별지원(월 최대 100,000원) 제외 대상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초등)의 늘봄학교 방과후교육 참여 학생, 중·고등학교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 ※ 방과후교육 및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시, 자유수강권 신청을 통해 지원하며 방과후 학교 비용을 개인 부담하더라도 개별지원 신청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 내·외 개설(위탁) 강좌 참여 학생(단, 특수학교의 경우 방학 중 개별지원 가능)
 - 교육청 지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통해 타고,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무상 프로그램 이용 학생
 -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방학학교(외부기관) 참여 학생: 해당 방학기간 특기·적성교육비(개별지원비 10만원, 1개월분) 부지급
- 4) 지원 유형별 강좌비 책정 기준
 - 가)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예시안 참조)
 - 나)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실비 지원
- 5) 예산 신청(지원) 기준
 - 가) 강좌 운영 시: 개설 강좌 수 × 운영 개월 수 × 강좌별 운영비
 - 나) 개별 지원 시: 개별지원 신청자 수 × 수강 개월 수 × 강좌 수강료
 - ※ 개별지원비 예산 신청 시 유의 사항
 -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학생의 개별 수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신청 바람(학부모의 지원 여건 및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6) 수강료 청구 및 지급

- 분기별 청구(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지급 시기 자율 적용
- 학부모 및 관련자와 사전 협의, 동의 절차를 거침으로서 민원 발생 소지 예방
- 위탁 기관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강좌비 부담 청구 시 환수 조치

나. 지원 유형별 세부계획

1) 학교 내 강좌 개설 및 지역사회기관 강좌 위탁

가) 편성 기준

- 개설 강좌의 성격과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강좌 당 인원수는 탄력적 편성 운영하되, 강좌별 최소 편성 인원수는 5명을 원칙으로 함
 - 단, 동일 강좌에 수강 희망자가 많을 경우 2개 부서로 조직 운영 가능
- 강좌 당 인원수를 4명 이하로 편성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총 참여 학생 수 대비 강좌 당 최소 편성 기준 인원(5명)으로 운영 가능한 최대 강좌 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예) 총 참여 학생 수가 230명일 경우, 편성 가능한 총 강좌 수는 46개임
따라서 총 강좌 수 기준으로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를 자율 조정 편성 가능함
(에어로빅부 4명, 종이공작부 5명, 태권도부 10명, 기타 43개 부서 211명)

나) 운영 시간

- 강좌 당 주 **4회(회당 45분)**, 월 **16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다) 운영 형태 및 강좌비 책정

유형	계약 주체	개설 장소	강사비 기준	내용(주제)
강좌 개설	학교장-강사	학교 내	강사비 최대 월 64만원	강좌 위탁은 사업자 등록이 된비영리 기관, 또는 대학부설기관 등에 한함 ※ '라'의 강사 채용 및 운영을 준용하되, 필요시 자체 위탁강좌 세부운영규정 마련
강좌 위탁	학교장-기관	학교 내 또는 지역 기관	운영비 최소 월 10만원	

- 강사비는 프로그램 성격, 수강학생 수, 지도 시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강좌별 적정 강사료를 지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 책정 편성 운영 가능함
 - 강사비 책정(지급)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월 또는 시간 단위 책정, 교육 미실시 등에 따른 강사비 부지급 조항 등)

- 운영비는 강좌 운영상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집행 가능
(강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재교구, 수업자료(재료), 소요 물품 구입 등)

라) 개설 및 위탁 강좌 유형(예시)

- 각종 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공예, 창의수학, 독서토론 등
- 각종 문화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체육활동 관련: 태권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등

2) 개별지원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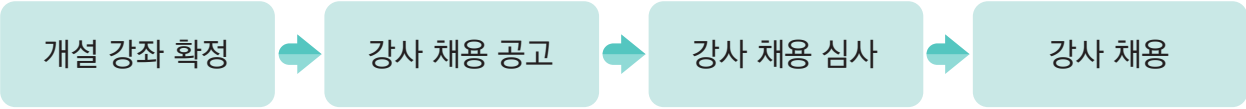
구분		개별 지원 요건 및 지원 절차
수강 가능 기관 등		◦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및 신고된 기관 등 - 학원(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사본 제출) - 교습소(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사본 제출) - 개인과외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사본 제출) ◦ 관할 구청에 신고된 기관 - 체육시설업(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사본 제출) ◦ 기타 미등록 및 미신고 기관 - 복지관 등 기타 미등록·미신고 기관으로서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회)
		〈유의 사항〉 ※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외부기관의 교과 관련 프로그램: 교과 진도 나가기, 교육과정에 앞서는 프로그램(선행교육) 등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은 참여할 수 없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기초학습 등을 위한 보충 내용일 경우에 수강 가능함 ※ 직접 지도하는 지도강사가 없는 온라인 기관은 지원 불가(2020년 3월~)
지원 대상		◦ 학교 내(외) 개설(위탁) 강좌가 아닌 개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 원 액		1인당 월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패키지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
집행 절차	개별지원비	(학부모→학교) 신청서 제출 ⇒ (이용 기관→학교) 교육비 지급 청구서 제출 ⇒ (학교→이용기관) 수강료 송금
	전자카드	(학부모→학교) 개별지원 카드 발급 신청 ⇒ (이용기관→농협) 개별지원 기관 가맹 등록 ⇒ (학생→개별지원기관) 강좌 수강 ⇒ (이용기관) 수강료 카드 결제

다. 교육활동 운영 절차

순	절차	내용	비고
1	지원계획 안내	◦ 2026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계획 안내	◦ 운영계획 설명회
2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 계획 수립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업무담당자 지정 ◦ 학부모 희망조사(강좌 형태, 종류 등) ◦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 학생·학부모의 요구, 전년도 성과분석 등을 근거로 한 운영계획 수립	◦ 전년도 성과 분석 반영 ◦ 학운위 심의 (개별지원 포함)
3	수요 조사	◦ 가정통신, 학부모회의 등을 통한 홍보 및 안내 ◦ 강좌별 수요조사 및 개설 강좌 확정	
4	개설강좌 확정 등	◦ 강좌별 희망학생 수를 고려한 편성 운영 ◦ 개별지원 희망자 파악 및 신청서 접수	
5	강사비 책정	◦ 강좌 성격 및 학생 수 고려한 강사비 책정	◦ 학교장
6	강사 채용	◦ 강사 채용 공고 및 심사 ◦ 임용 서류 청구 및 계약 체결	◦ 학교장 ◦ 학운위 보고
7	교육활동 전개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지원비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 ◦ 연간(월간) 활동계획 수립 및 지도일지 작성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실시 ◦ 특기적성 교육활동 발표회, 작품전시회 등 특기 적성교육 관련 실적 공개 권장	◦ 학교 → 교육(지원)청
8	모니터링·평가	◦ 교육 활동 결과 가정으로 통보 ◦ 만족도 평가(설문조사) 실시 및 성과 분석	

라. 강사 채용 및 운영

1) 채용 절차



2) 채용 공고 및 선정

- 가) 시기: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 나)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5일 이상의 기간(등록일 제외, 토요일과 공휴일 미산입)을 두어 학교 홈페이지 및 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코너 등 2곳 이상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 채용 공고(늘봄학교는 늘봄 허브 승인(서류) 강사를 학교별 자체 면접을 통해 우선 활용하되, 필요 시 학교장 채용 병행)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제안서, 면접, 시연 등 자체 심사 계획에 의함)

3) 강사 자격

- 가) 자격 요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 제시 가능
 - 개설 강좌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특기자, 대학생, 학원강사 등 일반 외부 강사
 -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개설 강좌 지도 능력이 있는 현직 교사
 - 해당 강좌에 응모한 외부 강사가 없는 경우
 - 해당 교사가 아니면 개설 또는 운영이 어려운 경우

나) 결격 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등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

4) 강사 채용 구비 서류

- 이력서 1통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1통
- 경력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통(계약 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동의서 1통(계약 시)
- 채용 신체검사서 1통(계약 시)
- 잠복 결핵 감염 검진확인서 1통(계약 시)
 - ※ 현직교사는 채용계약서로 강사 채용 구비 서류 일체를 대체 가능함
 -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같음
 - (단, 범죄 전력 조회와 신체검사서는 매년 징구)

5) 채용 계약서 작성

- 채용 계약은 학교장과 강사 개인 자격으로만 계약 가능(계약시 학교장 직·사인 날인, 강사 파견업체 강사 채용 금지)
 - ※ 지역사회 기관에의 강좌 위탁 시, 계약 주체는 학교장과 위탁 기관의 장이 되며, 운영 주체는 학교장임
-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① 계약기간 ② 강의시간 ③보수 ④주요복무사항 ⑤ 해임에 관한 사항 등
- 계약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을 찍음
-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원 계약서와 같이 보관

※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 4대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4시간(분야별1시간)/ 대면연수 1회 포함)
- 응급처치 안전연수 4시간(2시간 실습 포함)

6) 강사의 복무

- 강사는 연간활동 계획서를 수립하고, 지도 일지 작성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학생 지도
- 복무는 교원의 복무에 준하도록 하고 해당하는 중요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
-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강의 시작 20분 전부터 강의 종료 후 20분까지로 함
- 강의 및 학습지도 자료는 본인이 준비하고 관리
- 교내에서는 신분증(명찰 등)을 패용하고 근무
- 교육활동 종료 후 해당 강사 책임 하에 활동 장소(교실, 강당, 운동장 등) 정리 및 청소

7) 계약 해지

가) 사유: 다음의 계약 해지 사유들을 학교 실정에 맞게 계약서에 명시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보호자와 학생들이 강사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등

나) 계약 해지 유형

(1) 자동 해지: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별도 통보 조치 불필요)

(2) 학교장에 의한 계약 해지

- 즉시 해지: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계약 기간 중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사를 교체한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에 공문(서면)으로 보고
- 절차 해지: 절차진행(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수신 확인)후 효력 발생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 결강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생보호자와 학생들이 강사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거나 기타 민원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강사 본인 요청에 의한 해지

- 강사 본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절차진행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 학교장 수신)후 효력 발생

(4) 해지 통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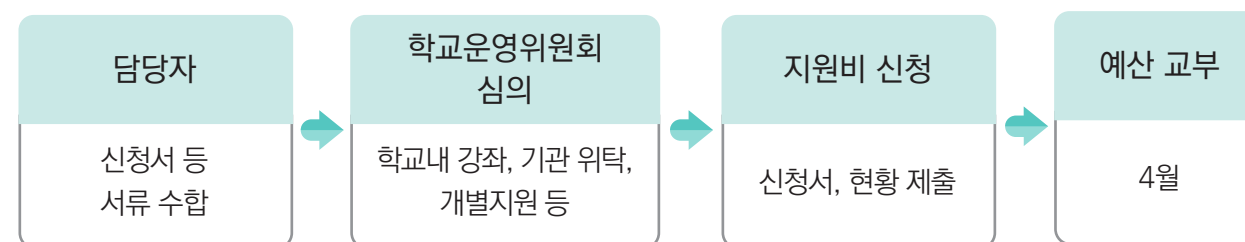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학교장 결정 통보

8) 강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강사비는 지도계획 대비 실제 지도시간(횟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구체화하여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가능한 학사일정 범위 내에서 수업 보장 적극 유도)

마. 특가·적성교육비 신청 및 지급 절차

1) 각급학교의 지원비 신청 절차 및 교부 시기



초·중학교: 지역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고·특수학교: 중등특수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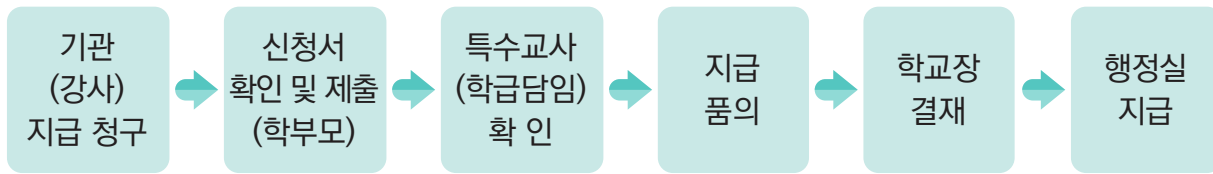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생별 개별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않은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개별지원 수강 가능 기관, 수강 가능 프로그램(내용) 등에 대해 심의 실시

※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교과 관련 프로그램: 교과 진도 나가기, 교육과정에 앞서는 프로그램(선행교육) 등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은 참여할 수 없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기초학습 등을 위한 보충 내용일 경우에 수강 가능함

※ 수강 기관 변경시에는 가능한 매월 1일 기준으로 하되, 서류를 제출받아 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 실시 <교육(지원)청에 공문 제출하지 않음>

2) 개별지원 특기적성교육비 지급 절차



3)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청구(지급) 시기

- 보호자: 학교에 지원 신청서 제출(처음 제출 후, 수강 기관 변경 시만 추가 제출함)
- 기관, 강사: 학교에 분기(월)별 익월 첫째 주까지 청구
- 학교: 청구자 통장으로 분기(월)별 익월 10일 이전 지급

※ 교육비 청구(지급) 시기 등 운영 방법은 학부모와 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 **분기별 청구(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 적용

바. 평가 및 환류

1) 수업의 질 관리

- 강사는 연간, 월별, 주별, 일일 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지도
- 학교 공개행사 시 특기·적성교육활동 결과를 공개하는 기회 부여 권장
- 방과후학교 운영관리 담당자를 두어 강사 및 수업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

2) 강좌 운영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특기적성교육 활동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적, 수준별·개별화 교육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 수립
- 연간 지도 계획 수립과 이를 근거로 한 주간 교육계획안 작성·지도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정도, 능력,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실시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함께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수업 이동 시, 수업 중, 하교지도 시 등)

3) 활동 평가 및 환류

-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만족도 평가 결과를 차년도 운영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4) 개별지원 전자카드 사용 및 지급 시기

- 보호자: 전자카드 발급 신청(카드 1회 발급으로 지속사용 가능)
- 기관, 강사: 강좌 운영 전·후 전자카드 결제
- 교육청: 기관 등록시 제출한 통장으로 다음 영업일 지급(결제일 +1일)

사. 방과후특기적성 개별지원비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운영

1) 개별지원 전자카드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발급 대상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특기적성 개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방과후특기적성 개별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특징	◦ 「개별지원 전자카드」는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없음 ◦ 「개별지원 전자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개별지원 전자카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없음
지원액	◦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우리 교육청 개별지원 전자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 (개별지원 전자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제외대상	◦ 개별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미등록기관 이용자 ◦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결제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단말기 미보유기관은 PC결제)
유의사항	◦ 미등록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2) 개별지원 전자카드 발급 절차

절차	내용	담당
신청서 작성·제출	■ 개별지원 전자카드 신청서(서식3-1, 3-2) 작성 및 제출 (보호자 → 소속 교육기관 담당교사)	보호자
신청서 공문 발송 (특수학교는 자체 내부결재)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지원 전자카드 신규·재발급 신청 및 이용 현황(서식1) 공문 제출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특수학교: 학교 자체 내부결재 후 신청정보 작성	담당자
신청서 접수 및 카드 발급	■ 「개별지원 전자카드」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정보 입력 및 카드 발급 ※ 매월 25일 이후 발급 신청 건은 다음 월에 발급	특수교육 지원 센터, 특수학교
카드 수령	■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개별지원 전자카드' 수령 (요청 시 해당 학교로 등기 발송) ■ 특수학교는 보호자(학생) 카드 수령 ※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사용등록 없이 사용 가능	교사, 보호자

3) 개별지원 전자카드 사용

- 개별지원 제공기관(가맹점) 선택

- 개별지원 전자카드 대상자는 개별지원 전자카드 홈페이지에서 개별지원 가맹점을 조회하여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신청
- 지급된 「개별지원 전자카드」는 우리 교육청이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가맹점의 개별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 개별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가족의 희망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 적합한 구체적 목표 및 제공 계획 수립(연간지도계획 제출)
- 개별지원 계획에 따라 강좌 수강 후 수강 내용 및 출결사항을 포함한 개별지원 결과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송부

- 개별지원 전자카드 결제

- 결제는 매월 1회 결제
- 결제액은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를「개별지원 전자카드」포인트로 결제하고 초과분은 학부모 부담
- 포인트는 매월 1일 생성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매달 말일에 소멸됨
 - ※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사용 또는 현금화 불가
 - ※ 등기 발송시 당월 미수령으로 인한 소멸된 포인트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 개별지원 전자카드 사용 자격 정지 및 해지 기준

- 정지: 유예, 학부모 개별지원기관 미선정 및 개별지원 중지 희망(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 시행(신청)일 기준으로 정지처리)
- 해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타시도 전출 등(선정 및 시행일 기준으로 해지처리), 국립학교(광주교대부설초, 전대사대부중, 전대사대부고) 전출 학생

4 행정 사항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등에 따른 강사 관리 강화

구분	수강 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관리 기관
강좌 개설 및 위탁	학교 및 위탁 기관	동의서* 제출받아 조회	학교 및 위탁 기관
개별지원	학원(교습소·개인교습자) 등록(신고) 기관	별도 조회하지 않음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구청에서 연 1회 조회)	교육지원청
	체육시설업 신고 기관		관할 구청
	복지관 등 기타 미등록(미신고) 기관	동의서* 제출받아 조회	학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서식1〉의 붙임 참조)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내 방과후 강좌 개설 시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추가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자체서식)」를 함께
징구 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하여 강사 본인이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나. 강사(지도교사) 및 강좌 운영 관리

- 1)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지도교사)에 대한 사전연수를 필히 실시하여 학생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및 지도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 2) 개별지원에 따른 일체의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지도 및 이동 편의 등은 수강기관과 학부모의 책임 하에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학교는 강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생의 수강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지원비 집행에 철저

다. 지원 유형별 구비 서류

구분	학교 내 강좌	지역사회기관 강좌위탁	개별 지원	
			일반	카드
구비 서류	◦ 강사 채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 강좌 운영계획서 ◦ 출석부	◦ 강좌 위탁운영 협약서 (학교장-기관장) ◦ 학원(교습소·개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강좌 운영계획서 ◦ 출석부	◦ 연간지도계획서 ◦ 교육비 지원 신청서 ◦ 학원(교습소·인외교습자·체육시설업) 등록(신고)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석부 사본	◦ 연간지도 계획서 ◦ 출석부 사본

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관련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서식	제출일
보호자 → 학교	공통	- 개별지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연간 지도 계획서	서식1-3	3월 중
	개별 지원비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신청서	서식1-1 서식1-2	
		- 등록(신고) 기관 및 강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체육시설업)등록(신고)증명서 사본		
		- 미등록(미신고) 기관: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기관 (강사) → 학교	공통	- 개별지원 카드 신청서	서식 3-1, 3-2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개별 지원비	- 미등록(미신고) 기관: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출석부 사본 1부		
학교 → 교육청	개별 지원비	- (분기)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급 신청서	서식2	월(분기)별 다음 달 첫째 주까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변동시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 참여현황(일반학교용/특수학교용) ※ 개별지원 전자카드 신규 신청 또는 기관 변경시 <서식 4-1> 수정 제출 (특수학교에서는 별도 관리)		서식 4-1, 4-2	3월 중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계획서 (연간 지도 계획, 출석부 등 학교 자체 양식 활용, 강사 자격 현황 포함)		자체 양식 (강좌 개설 및 위탁 시)	4.17.(금)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좌(개설, 위탁) 운영 현황		서식5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집행 결과		서식6	12.24(목)
교육청	- 특기·적성교육비 집행 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안내

마. 개별지원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활성화

- 1) 결제는 매월 1회 결제가 원칙임
- 2) 개별지원 전자카드의 부정사용 금지 및 조치 사항

- 부정사용 예시
 - 「개별지원 전자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개별지원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시 조치 사항
 - 제공 기관의 고의 및 과실,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이 확인 될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부정사용액 환수 조치 및 사용 정지, 가맹점 등록 취소

- 3) 2027년부터 개별지원 전자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
- 4) 학기 중 개별지원 전자카드로 전환 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개별지원 신청서

학 교 명		학 생 명		학 년 반	-
보 호 자 명		관 계			
수강 신청 유무	☐ 신청: 개별지원 신청시 아래 내용 작성 ☐ 미신청(미신청 사유: _____) ※ (초등)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중고등)교내 방과후학교 참여시 자유수강권을 신청바람 ※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교내 방과후학교 비용을 개인 부담하더라도 개별지원 신청 불가				
교육기관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		송금 계좌번호			
수강강좌명		월 수강료			
지도강사명		수강 신청기간 (개월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수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 호 자) : (서명) ()학교장 귀하					
붙임 서류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 기관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학원 등 미등록(미신고) 기관 -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1부 - 학원 등 미등록(미신고) 기관 강사: 학교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출 ☐ 개별지원 신청자는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 연간 지도계획’[서식1-3] 제출				

※ 수강 기관 변경은 가능한 매월 1일 기준으로 하되, 전월 초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받아야 함
※ 위탁 기관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강좌비 부담 청구 시 환수 조치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 교 명		학 생 명		학 년 반	-
보 호 자 명		관 계			
수강 신청 유형 (해당 칸에 ◦ 표시)					
학교 내 개설 강좌(특수학교 내 해당)			개별지원		
교육기관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		송금 계좌번호			
수강강좌명		월 수강료			
지도강사명		수강 신청기간 (개월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수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 호 자) : (서명) ()학교장 귀하					
붙임 서류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 기관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체육시설업)등록(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학원 등 미등록(미신고) 기관 -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 1부 - 학원 등 미등록(미신고) 기관 강사: 학교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출 ☐ 개별지원 신청자는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 연간 지도계획’[서식1-3] 제출				

※ 수강 기관 변경은 가능한 매월 1일 기준으로 하되, 전월 초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승인) 실시
※ 위탁 기관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강좌비 부담 청구 시 환수 조치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이
이
이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illegible]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I.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II. 광주특수교육의 방향

III. 중점 추진 과제

IV. 특수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

V.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 연간 지도계획 (예시)

교육기관명		대표자명	
수강강좌명		지도강사명	
지도 기간	()년 ()월 ~ ()년 ()월		
학교명		학년 반	-
학생명			
월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계획 (교육 시작 월부터 기록)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7월		1월	
8월		2월	
위와 같이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 학생에 대한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도강사: (인) 대 표 자: (인) ()학교장 귀하			

※ 교육기관 현황, 학생 현황, 교육계획을 포함하되, 교육기관의 자체 양식으로 변경 가능함

(분기) 특수교육대상자 특가·적성교육비 지급 신청서

학 교 명		학 생 명 (학년 반)	
교육기관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체육시설업)등록(신고)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		송금 계좌번호 (은행명)	
수강강좌명		월 수강료	
지도강사명		수강 월 (개월수)	
청구 금액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장 또는 강사): 인 확인자(보 호 자): 인 ()학교장 귀하			
붙임 서류	1. 출석부 사본 1부 2.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당해 학년도 1회)		

〈서식3-1〉 (보호자⇒학교⇒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개별지원 전자카드 신청서

학 생 명		성 별		생년 월 일		학 년 반	-
보 호 자 명			학 생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주 소							
교 육 기 관 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체육시설업)등록(신고)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대 표 자 명 (연락처)			교 육 기 관 주 소				
수 강 강 좌 명			월 수 강 료				
지 도 강 사 명			수 강 신 청 기 간 (개월수)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전자결제카드 (발급, 재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 호 자) : (인, 서명)(학생과의 관계:) 확인자(담당교사) : (인, 서명)							
()학교장 귀하							
붙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개별지원 기관 가맹점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추후 안내)

※ 2027년부터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이 전자카드로만 운영되니 반드시 연내 카드 신청

〈서식3-2〉 (보호자⇒학교) ※학교 자체 보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 전자카드 발급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학교명, 성명,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별지원 카드 신청일로부터 개별지원 서비스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지원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제 제공 동의서】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비즈플레이(전자카드 결제시스템 운영사업자)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 전자카드 발급

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학교명, 성명,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별지원 카드 신청일로부터 개별지원 서비스 종료 시까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지원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은 개별지원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4-1〉 (일반학교 ⇒ 교육(지원)청) (3월) ※ 별도 안내된 엑셀 파일을 활용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신청 및 참여 현황(일반학교용)

학교명	지원대상자 현황		순	신청 여부	카드 발급 여부	카드 사용 여부	학생명	성별	학년반	수강 유형	교육 기관명	수강 강좌 (과목명)	실시 개월	월 지원 단가	신청 총액	비고
	남	여														
전체학생 수 참여자 수	계		1													
			2													
			3													
			4													
			5													
			6													
신청총액			7													
			8													
			9													
			10													
			11													
교부예정금액(원, 천단위올림)			12													
			13													
			14													
			15													

- 1. 교육청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생,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무상 프로그램 이용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2. 개별지원 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및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해당 참여기간 특기적성교육비 부지급(1개월분)
- 3. 미신청 학생도 입력(신청여부, 학생명, 성별, 학년 반만 기입)

〈서식4-2〉 (특수학교 ⇒ 시교육청) (3월) ※ 별도 안내된 엑셀 파일을 활용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신청 및 현황(특수학교용)

학교명	지원대상자 현황				구분	강좌/ 학생수	실시 개월	학교급별 참여 학생수						월 지원단가				신청총액	비고
	남	여	계					초	중	고	전공	계	강사수당	운영비	계				
전체학생 수	일반	카드	교내	미참여자 수	교내 개설														
								강좌 운영											
					교외 위탁														
신청총액					개별지원 (학생기준)														
교부예정금액(원, 천단위올림)					미참여자														

- 1. 교육청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생,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무상 프로그램 이용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2. 개별지원 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및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해당 참여기간 특기적성교육비 부지급(1개월분)
- 3. 미신청 학생도 입력(학교급별 남,여 학생 수만 기입)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좌(개설위탁) 운영 현황

학교명									
강좌명	학교급별 참여 학생수					강사 성명			주당 교육횟수 (시간)
	초	중	고	전공	계	교내		교외	
						현직 교사	외부 강사	위탁 강사	
총 참여 학생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집행 결과

학교명	(단위:천원)					
교부금액 세부 내역				예산 집행 내역		
1학기 교부금액 (A)	2학기 교부금액 (B)	총 지원금액(C) (A+ B)		집행 금액 (D)	반납(예정) 금액 (C-D)	
전체 학생수 a	학교 (기관) 개설 운영 강좌 수	특기적성교육 참여 현황 (강좌수강+ 개별지원 수혜자의 경우 강좌 참여자수에만 인원 계상)			특기적성교육 참여율 (b+ c)/a×100	
		강좌참여자 수 b	개별지원자 수 c	미참여자 수		
학교(기관) 개설 강좌비 집행 내역			개별지원비 집행 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강좌비*강좌수*개월수=	집행금액	참여 학생수	강좌비*학생수*개월수=	집행금액	참여 학생수	
합계			합계			
(비고)			(비고)			

- ※ 집행 결과 보고
 - 2026.12.24.(목)까지(2월말 집행 예정액 포함)
 - (중요) 집행 잔액(10만원 이상) 변경 시에 집행결과를 수정 제출: 2027.2.5.(금)까지
 - 수신처: 고·특수학교는 중등특수교육과, 유·초·중학교는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 집행 잔액 반납(10만원이상인 경우): 수기 고지서가 아닌 가상계좌를 통한 반납
 - 반납 시기: 재정과에서 별도 안내
 - 가상계좌는 반납일 내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반납기간 외에는 입금불가
 - 반납 가상계좌 등록방법: 재정과에서 안내하는 ‘반납처리 업무매뉴얼’ 참조
 - 비고 : 반납 공문 제출 불필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 근무 규정

광주○○학교

1. 목적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담당한 강사의 출퇴근 및 근무 규정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알찬 방과후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

2. 근무 규정

- 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는 수업시간 20분전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수업준비를 한다.
- 나. 강사는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해야 하며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다. 수업시간 중의 수강 학생의 생활지도 및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하교시킨다.
- 라. 사용한 교실의 청소와 정리정돈 및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한다.
- 마. 수강 학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 바.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할 경우는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
- 사.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복장과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 아. 결강한 학생이 발견될 시에는 담당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린다.
- 자. 수업에 필요할 경우 교내에서의 학생 상담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가정방문 또는 교외에서의 개별 또는 그룹지도는 하지 않는다.
- 차.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도에 그만 둘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 카. 근무 중에는 학교장, 교감 및 담당교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도 및 운영에 대한 각종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타. 학교장의 요청 시 교사의 교수 활동 상황을 공개한다.(공개 수업 등)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자격 심사표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심사결과	비고
1. 전문가적 자질과 전문성	◦ 강좌 운영 및 학생지도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 특수교육 이해	◦ 교수-학습에 대한 이론과 특수학생의 발달 및 행동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3. 강사로서의 자격 요건	◦ 강사로서의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평가표

성 명		평 점	자 질 및 태 도				근 무 실 적				계	비고
			품격		사명의식		학 습 지 도					
성명	분야 (부)		언행. 품격	품위 유지	명령 수행	제반 복무	교재 연구	지도 연구	수업 의질	평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연간 지도계획

결	부 장	교 감	교 장
재			

프로그램명		지도강사	(인)
대 상	()부 ()학년 ()명	지도시수	시간
지도기간	년 월 일 ~ 월 일(차시 예정)		
지도목표			

월	주	월일	학습주제	지 도 내 용	준 비 물	시수	비고

〈참고5〉 (학교 및 강사(기관)용)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수강자 명단

강좌명		운영기관명				
강사명		(인)			(특수)교사명	(인)
연번	학생명	성별	학년반	보호자명	연락처	특기사항
1						
2						
3						
4						
5						

〈참고6〉 (강사 및 기관용)

()월 출석부

기 관 명								학 교 명									
강 좌 명								강 사 명		(인)							

회 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날 짜																	
요 일																	
연번	학생명																
1																	
2																	
3																	
4																	
5																	
참고 사항																	

〈참고7〉 (강사 및 기관용)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결과 통지서

()학교	() 반	성 명 ()
(가정통신문)		
출석률		활동 평가 및 도움말
주요 활동 내용		
1.		
2.		
3.		
4.		



1 목적

- 가.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의 교정 및 경감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

2 근거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

3 기본 방침

- 가.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 훈련, 보행·시기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다.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튼튼e카드」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라. 치료지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치료지원 제공 기관 맞춤형 컨설팅 및 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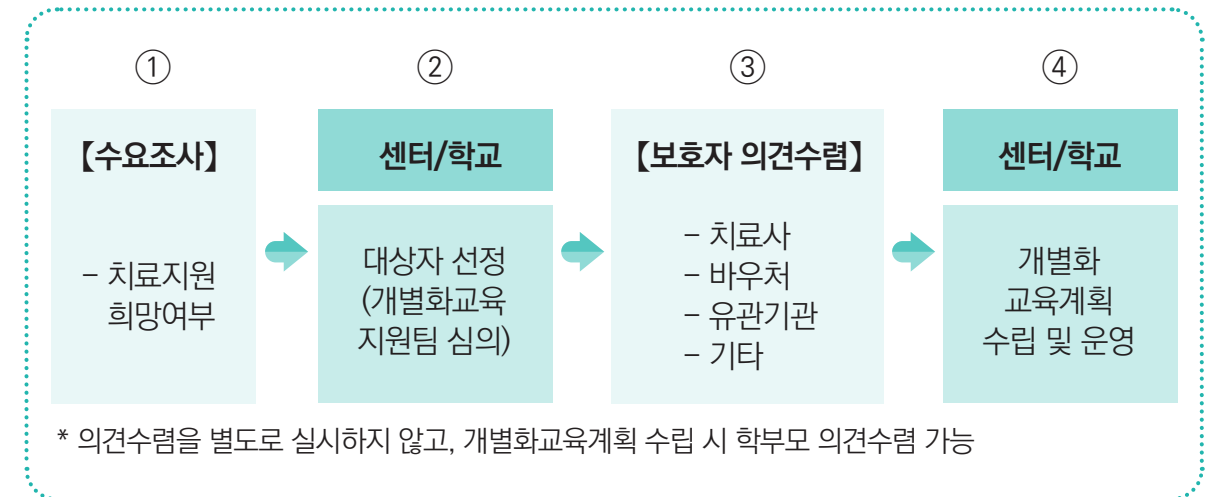
4 세부 지원계획

가.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치료지원 관련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단,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재원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치료지원 불가

나. 치료지원 제공 절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치료지원 제공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



① 수요조사

- 치료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②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③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보호자 의견수렴

- 바우처, 유관기관 활용 등 치료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호자 의견수렴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의견수렴 가능

④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다. 치료지원 제공방법 및 제공인력 자격

1) 치료지원의 제공방법

-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기관의 장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방법 결정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은 국가면허소지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제공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치료지원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조

-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함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 치료지원 서비스의 경우 예외 적용
- 치료지원비: 월 12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치료지원 바우처 제도 활용 등
※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2)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치료지원 인력은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함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양성될 때까지 다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 민간자격 소지자(단, 해당영역)
- 결격 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등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3) 치료지원 제공기관

-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업자등록 된 재활바우처 인증기관, 사설치료실 등

라. 치료지원비 전자카드 결제시스템 운영(튼튼e카드)

1) 튼튼e카드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발급 대상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특징	◦ 「튼튼e카드」는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없음 ◦ 「튼튼e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튼튼e카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없음
지원액	◦ 월 12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우리 교육청「튼튼e카드」치료지원서비스 지원 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 (튼튼e카드 홈페이지(http://gen.nhdream.co.kr/)에서 조회 가능)
제외대상	◦ 치료지원 가맹점 미등록기관 이용자 ◦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한 치료영역 지원 금지
결제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
유의사항	◦ 진단서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할 수 없음

2) 튼튼e카드 발급 절차

절차	내용	담당
신청서 작성·제출	■ 치료지원카드 신청서(서식4-1, 4-2) 작성 및 제출 (보호자 → 소속 교육기관 담당교사)	보호자
신청서 공문 발송 (특수학교는 자체 내부결재)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규·재발급 신청 및 이용 현황 〈서식1〉 공문 제출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특수학교: 학교 자체 내부결재 후 신청정보 작성	담당자
신청서 접수 및 카드 발급	■ 「튼튼e카드」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정보 입력 및 카드 발급 ※ 매월 25일 이후 발급 신청 건은 다음 월에 발급	특수교육 지원 센터, 특수학교
카드 수령	■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튼튼e카드’ 수령 (요청 시 해당 학교로 등기 발송) ■ 특수학교는 보호자(학생) 카드 수령 ※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사용등록 없이 사용 가능	교사, 보호자

3) 튼튼e카드 사용

- 치료지원 제공기관(가맹점) 선택
 - 치료지원대상자는 튼튼e카드 홈페이지(<http://gen.nhdream.co.kr/>)에서 치료지원 제공기관(가맹점)을 조회하여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신청
 - 지급된 「튼튼e카드」는 우리 교육청이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가맹점의 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가족의 희망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 목표 및 제공 계획 수립
 -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치료지원 실시 후 치료지원 내용 및 출결사항을 포함한 치료지원 결과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송부

- 튠튼e카드 결제

- 결제는 매회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은 후 즉시 결제가 원칙임
- 결제액은 월 12만원 범위 내 실비를「튠튼e카드」포인트로 결제하고 초과분은 학부모 부담
- 포인트는 매월 1일 생성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매달 말일에 소멸됨

※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사용 또는 현금화 불가

※ 등기 발송시 당월 미수령으로 인한 소멸된 포인트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 튠튼e카드 사용 자격 정지 및 해지 기준

- 정지: 유예, 학부모 치료기관 미선정, 치료 중지 희망학생 및 어린이집으로 전출한 유아특수 교육대상자(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 시행(신청)일 기준으로 정지처리)
- 해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타시도 전출 등(선정 및 시행일 기준으로 해지처리), 국립 학교(광주교대부설초, 전대사대부중, 전대사대부고) 전입학 학생

5

행정사항

가. 치료지원비 전자카드 결제시스템(튠튼e카드) 운영 안정화 노력

1) 결제는 매회 치료지원서비스를 받은 직후 결제가 원칙임

2) 튠튼e카드의 부정사용 금지 및 조치 사항

- 부정사용 예시

- 「튠튼e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튠튼e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시 조치 사항

- 제공 기관의 고의 및 과실,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이 확인 될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부정사용액 환수 조치 및 가맹점 선정 취소

나. 치료지원 제공기관 점검 및 치료지원 제공 인력 관리 강화

- 1) 특수학교(급)에서는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치료지원 대상자가 이용하는 치료지원 기관 및 사설치료실 명단을 파악 및 관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치료지원대상자가 무자격 치료사, 무허가 치료실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
-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등에 의거 하여 치료지원 제공 기관장 및 치료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연 1회 이상 실시

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관련 서류 제출

구분	제목	서식	제출일	비고
학교 →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규·재발급 ◦ 신청 및 이용 현황	서식1	3월 중	변경 시 공문 제출
제공기관 → 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서	서식2	3월 중	
	◦ (분기)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결과	서식3	분기 익월 첫 주	
보호자 → 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전자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4-1 서식4-2	수시	신규, 재발급 시 제출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해 지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서식1〉을 수정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신청 및 전자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주소, 장애등급, 장애명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치료지원 신청일로부터 치료지원 서비스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학 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1 목적

가.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하여 장애의 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이후의 발달 촉진

나. 장애가 있거나 장애위험이 있는 영아에 대해 무상의 조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

2 지원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3 기본 방침

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아에 대해 진단평가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 영아학급 설치·운영

- 특수학교 내 영아학급 편성 및 교사 배치, 가정순회교육 등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4 세부 지원계획

가. 지원 대상

-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영아

나.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 지원 대상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영아

- 지원 대상 선정 절차

-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영아에 대한 진단·평가 의뢰(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필수)
-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병의원에서 특수교육대상영아에 대한 진단·평가 실시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다. 2026 특수학교 영아학급 설치 현황

(기준: 2026.2.1.)

구분	학교	학급 수	비고
공립	광주선광학교	1	
	광주선명학교	1	
	광주선우학교	1	
사립	광주세광학교	1	
계		4	

4 행정사항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수학교 영아학급 담당 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업무담당자 배치

-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
 - 병원, 보건소, 기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아에 대한 정보를 부모 동의하에 수집하여 그 실태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아 수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영아 교육지원사업 홍보자료를 유관기관에 비치하여 장애영아 및 장애위험 영아 보호자에게 홍보 실시

10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지원계획



1 목적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교육 실현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2 지원 근거

- 가.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3 기본 방침

- 가.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누락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 나. 취학유예자는 유아학비 및 특수교육대상자 추가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음
-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원활한 지원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강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운영

4 세부 지원계획

가. 지원 대상

- 1)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유아
 - 특수학교가 아닌 유치원(공·사립 단·병설)에 취원한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 ※ 초등학교 취학 유예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지원 불가

-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중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여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아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1) 지원대상자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대상
-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 초, 신입생은 학년 초로 하되 중간 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등 탄력적 운영

2) 지원 절차

①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교육장에게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제출서류:** 진단·평가 의뢰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진단서(택일)
※ 의사진단서에 발달검사보고서, 언어검사보고서 포함할 것



② 교육장: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이 배치



③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 공립: 유아학비 신청
- 사립: 유아학비 신청 + 해당 교육지원청(중등특수교육지원과)에 특수교육대상자 추가지원비 신청
(※ 단, 저소득층 추가지원비와 중복지원 불가)



④ 교육장: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 ※ 교육지원청은 선정·배치 받은 달부터 추가 의무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5일 이상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⑤ 집행 실적 보고: 유치원장 → 교육장 → 교육감

다. 지원 방법

1)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시스템에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지원

2)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 가) 유아학비 시스템에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지원 + 중등특수교육지원과에서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해 추가 학비(의무교육비) 지원(월 2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단, 저소득층 추가지원비와 중복지원 불가
※ 추가 지원비 사용 범위: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등)
※ 입학 배치와 재배치 시에 입학금 추가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면 교육지원청은 선정·배치된 달부터 유치원에 추가지원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5일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 다) 학비를 지원받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추가지원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며,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함
(※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교육일수로 인정)

라. 2026년 사립유치원 추가지원비 단가

-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1인당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포함) 외에 추가 **월 20만원 범위 내** 실제 경비 지급

- ※ 3~5세 교육비, 방과후과정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신청

-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집행 및 관리 철저

5 행정사항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상담 및 업무 담당자 지정 배치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 1)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제도 상담창구 운영 및 홍보 강화
 -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창구' 운영
 - 언론(신문, 지역방송 등), 교육청, 학교홈페이지, 기타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제도' 및 3세~5세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홍보

- 2)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 3)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비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집행 및 관리 철저
 - 지원 실적 보고(보고 서식 및 일정 등은 별도 안내)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대상 엄선 및 선정절차 준수

-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곤란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을 연기하거나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
- 2) 지원이 꼭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일반유치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추가 배치 가능하며, 유아 1인당 학비가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에게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

마.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신청 및 결과 보고

번호	제출 서류	제출대상	제출처	비고
1	-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지원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지원 신청서 세부내역	해당 유치원	교육지원청	서식 및 제출일 별도 안내
2	특수교육대상유아 추가지원비 집행 결과 보고(유치원용)	해당 유치원	교육지원청	

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어린이집 이동 관련

- 1) 유치원 → 교육여건을 갖춘 어린이집(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으로 전출 시
 - 보고 방법: '이동현황'(<참고>공문 예시 p220)을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제출
 - ※ [필수 안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가 어린이집으로 이동 시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았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통학비 등)는 중지됨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p221 <서식>활용 및 첨부 제출)
- 2) 교육여건을 갖춘 어린이집(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 유치원 전입학 시
 - 기존 유치원으로 복귀: '이동현황'(<참고>공문 예시 p220)을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제출
 - 타 유치원으로 배치 희망: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를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참고1> 신청 공문 양식(예시)

○○○○유치원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경유)

제 목 [보고]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어린이집 이동 현황 보고

1. 관련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 나. 「2025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5.)
2. 본원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으로 이동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황을 보고합니다.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어린이집 이동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기존소속	전출일	전출사유	전출기관	비고
1	김○○	2019.○.○.	○○유치원	2025.○.○.	학부모 희망	○○장애 전문어린이집	

붙임 어린이집 이동에 따른 지원서비스 중지 안내 및 확인서 1부. 끝.

【어린이집 이동에 따른 지원서비스 중지 안내 및 확인서】

가. 대상 유아 정보

유아 성명		생년월일	
기존 소속 기관(유치원)		전출 예정 기관(어린이집)	

나. 지원서비스 중지 안내

- 유치원 소속이 종료됨에 따라 유치원 기반으로 제공되었던 치료지원(튼튼e카드) 및 통학비 지원이 중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서비스 관련
 - 수집 항목: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학생의 의무교육 기간)
-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어린이집 이동에 따라 기존에 제공되던 지원 서비스 중지를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서명)

※ 본확인서는 행정 기록 보관 목적이며 서비스 중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목적

장애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2 지원 근거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3조(교육과정 등)
-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3 기본 방침

- 가. 특수학교(급) 유치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급 편성 기준 수에 의거 편성하되 최저 2명 이상으로 편성(2명 미만인 경우 유치원은 일반 유아방과후과정에 참여, 특수학교는 돌봄교실 참여 또는 별도 운영)
- 나. 특수학교(급)의 교육과 보육의 연계체제 구축으로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시간으로 편성
- 다. 참여 유아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운영 내용을 편성하고, 운영일수는 담당강사 근무 기준 일수에 맞게 설정 운영

4 세부 지원계획

가. 지원대상 기준

- 1) 대상: 특수학교 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유아
- 2) 선정 절차
 - ① 학교: 방과후과정 운영 학부모에게 공지

② 교사: 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서식: 학교자체 작성)

③ 학교: 담임교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직원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하여 교육청에 신청

3) 선정 시기: 학기 시작 전에 선정하되, 단위학교 및 유아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나.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자 채용 및 관리, 업무

1) 신분

-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2명

-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2013. 9. 1.)
-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관리 및 인건비 지원

- 유아특수교육기관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34명

- 학교 및 유치원의 신청에 따라 시교육청에서 채용 결정
- 각 유치원에서 채용 후 해당 교육(지원)청 급여 담당부서에서 인건비 지급
-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에서 인건비 총괄 및 지원

2) 자격 기준: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 2급 중 1개 자격 이상 소지자

※ 기타 채용 방법 및 기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26.1.1.)'에 따름

3) 채용 절차 및 복무 관리

-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 채용 및 인건비 지원: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 복무 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따름

- 유아특수교육기관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 채용: 학교장(원장) 채용 및 관리
- 복무 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함

- 공무원복무규정, 단위학교 교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및 관련규정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 채용 계약서 작성(유아특수교육기관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학교장과 채용 강사가 직접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인건비, 복무사항,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 사전 방지 철저

4)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자 업무

- 수업지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담당하고 유치원 실정에 맞게 방과후과정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다.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1)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 조성

2) 효율적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교구 구비

라.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1) 기간: 2026. 3. ~ 2027. 2.

2) 일과 운영: 방과후과정 운영의 취지에 맞게 정규 수업 이후 시간을 고려하여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세부 일과 운영은 학교(급) 장애영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

3) 프로그램 운영: 유아 교육 및 보육,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일간, 주간, 월간 계획 수립하여 운영

4) 급당 운영비 지원

① 학기 중(2,000천원): 교실환경 개선, 교재·교구 구입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② 방학 중(4,000천원): 교실환경 개선, 교재·교구 구입비, 놀이강사,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 방학 중 급당 운영비는 특수학교만 지원하며, 학기 중에는 인건비 활용 불가

마. 연수계획

1) 연수방법: 학교별 자체연수 실시하고 원격 직무연수에 참여토록 안내

2) 연수장소: 국립특수교육원, 광주교육연수원 등

바. 2026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기준: 2026.2.1.)

구분		운영기관	학급수	담당 인력 구분		비고
				교육 공무직원	시간제근무 시간제교원	
공립	동부 병설	학운초병설유치원	1		1	
		서산초병설유치원	2		2	
		광주양산초병설유치원	1		1	
		삼각초병설유치원	1		1	
		광주수창초병설유치원(신설)	1		1	
	동부 단설	정덕유치원	1	1	-	유아 2명 이상 시 배치
		신용유치원	1		1	
		건국유치원	1		1	
		지한유치원	1		-	
		새미르유치원	1		-	
		효동유치원	2		2	
	서부 병설	광천초병설유치원	1		1	
		새별초병설유치원	1		1	
		성진초병설유치원	1		1	
		불로초병설유치원	1		1	
		극락초병설유치원	1		1	
		수완초병설유치원	1		1	
		대촌중앙초병설유치원	1		1	
		송정서초병설유치원	1		1	
		첨단초병설유치원(신설)	1		1	
		고실초병설유치원(신설)	1		1	
	서부 단설	진남유치원	1		1	
		빛고을유치원	1		1	
		봉산유치원	1	1	-	
		예향유치원	1		1	
		방림유치원	1		1	
		효천다솜유치원	2		2	
		화운유치원	1		1	
		운수유치원(신설)	2		2	
	특수 학교	광주선광학교	1		1	
		광주선우학교	1		1	
		선예학교	2		2	
계			37	2	33	
	특수학교	광주세광학교	2	1	-	
총계			39	3	33	공립35, 사립1

5

행정사항

가. 학부모 대상으로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업에 대한 바른 이해 정립
홍보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한 활용·관리 철저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부모의 사회생활 활동 및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계획(교육과 보육 포함)을 수립·운영

다. 소요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관리 철저
-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업 집행관련 보고 철저

라.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 보고

번호	제목	서식	제출일	비고
1	◦ 2026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서식1	3.13(금)	교육지원청은 3.27.(금)까지 교육청으로 제출
2	◦ 2026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서(참여 유아 현황 포함)	자체 서식	3.13(금)	교육 프로그램 세부 작성
3	◦ 2026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예산 집행 결과	148쪽 서식	12.28.(월)	

2026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번호	학교명	학생수	운영시간 (부터~까지)	강사 현황					특수교육 연수 이수 시간	비고
				강사명	성별	연령 (세)	소지자격	근무경력 (년월)		
1	○○유치원	5	13:00~18:00	홍길동	여		유평2정			



1

목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2

지원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3

기본 방침

가.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급 편성 기준 수에 의거 편성하되 최저 4명 이상으로 편성

나. 특수학교의 교육과 보육의 연계체제 구축으로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시간으로 편성하되 정규수업이 끝난 후 운영

다. 참여 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운영 내용을 편성하고, 운영일수는 담당강사 근무 기준 일수에 맞게 설정 운영

4

세부 지원계획

가.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

1) 대상: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희망자

2) 선정 절차

① 교육청: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학급 수 배정

② 학교: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학부모에 공지

③ 교사: 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서식: 학교자체 작성)

④ 학교: 담임교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운영계획서 제출

⑤ 교육청: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3) 선정 시기: 학기 초에 선정하되, 단위학교 및 학생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나.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1) 지원규모

특수학교: 16학급(광주선광 3, 광주선명 3, 광주선우 3, 선예 4, 광주세광 1, 은혜 2)

2) 기간: 2026. 3. ~ 2027. 2. (방학 제외)

3) 일과 운영

- 특수학교 돌봄교실의 취지에 맞게 정규 수업 이후 시간을 고려하여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세부 일과 운영은 학교 장애영역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 수립 추진

4)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보육, 특기·적성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일간, 주간, 월간 계획 수립하여 운영

5) 급당 운영비 지원: 3,000천원(인건비 별도)

다. 2026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현황

(기준: 2026.2.1.)

구분	운영기관	학급 수	담당 인력(명)	비고
			교육공무직원	
공립	광주선광학교	3	3	시교육청
	광주선명학교	3	3	"
	광주선우학교	3	3	"
	선예학교	4	4	"
사립	광주세광학교	1	1	"
	은혜학교	2	2	"
계		16	16	공립: 13 / 사립: 3

라.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담당자 채용·관리 및 업무

1) 자격 기준: 정교사 1, 2급, 보육교사 1, 2급 중 1개 자격 소지자

2) 근무기준: 1일 8시간 이상 근무

3) 채용 및 인건비 지원: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교육감 채용권 전환 (2013.9.1, 사립학교 제외)

4) 복무 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따름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 2013. 9. 1.)

5) 담당 업무: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계획 수립)

마. 특수학교 돌봄교실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1) 독립적인 돌봄교실 확보 및 환경개선비의 효율적 투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안락한 환경 조성

3) 효율적인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교구 구비

바. 연수계획

1) 연수 방법: 학교별 자체연수 실시하고 원격 직무연수에 참여토록 안내

2) 연수 장소: 국립특수교육원, 광주교육연수원 등

5 행정사항

가.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철저히 운영

1) 학부모 대상으로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사업에 대한 바른 이해 정립 홍보

2)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의 사회생활 활동 및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계획(교육과 보육 포함)을 수립·운영

3) 특수학교 돌봄교실을 선택한 경우 맞춤형교육(초1~2) 중복지원 불가

4) 맞춤형교육과 돌봄교실에 참여하더라도 외부 개별지원비 월100,000원 중복 지급 가능

5) 소요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소요예산 관리 철저

-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사업 집행 관련 보고 철저

6) 교육활동 중 신체적 피해(3일 이내)가 발생 시에는 교직원 복지비로 치료비 지급 가능

나.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관련 보고

번호	제목	서식	제출일	비고
1	◦ 2026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현황	서식	3.13.(금)	
2	◦ 2026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계획서	자체 서식	3.13.(금)	교육 프로그램 세부 작성
3	◦ 2026 특수학교 돌봄교실 예산 집행 결과	148쪽 서식	12.28.(월)	

2026 특수수학고교포럼
신앙과 공리
공공의 힘

[illegible]

13

특수교육실무사 지원계획



1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등을 지원하는 인력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에 의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2

지원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기준 일부개정 노사 합의서(21.12.21.)

다.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4 단체교섭 직종 실무교섭
결과(2026.1.2.)

3

기본 방침

가. 지원 대상교 선정은 보호자 및 지도교사의 지원 희망서에 근거하여 각급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다.

나.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1명일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한다.

라. 지역자활센터 및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지원 대상 학생 성별, 장애특성 등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사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다.

4 세부 지원계획

가. 지원 대상교 선정 시기

- 1) 관리부서(노동정책과)의「정수관리 운영 계획」및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에 의함
- 2)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후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된 학생은 기 배치된 특수교육 실무사가 추가 지원함

나. 지원 대상교 선정 절차

절차	내용	대상
공문 안내	■ 특수교육실무사 수요조사 (다음 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후)	시교육청
↓		
자체 심의 및 관련 서류 작성	■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자체 심의	각급학교
↓		
공문 제출	1. 수요조사 현황 2. 특수교육실무사 가. 학교 실태<서식1> 나. 지원희망서<서식2> 다. 행동평정표<서식3>	-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 고: 시교육청
↓		
대상교 선정	■ 제출서류 및 현장 점검	교육지원청 및 시교육청
↓		
배치 안내		시교육청

- 1) 지원희망서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 평정표에 의한 평가 후,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또는 자체 심의를 거쳐 요청
 - ※ 필요 시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방문을 통해 배치 검토 후 우선 지원 대상교 선정
 - ※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 교사의 의견 수렴 후 요청
 - ※ 특수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 또는 자체 심의(지원희망서, 행동평정표)를 통해 특수교육실무사 수요조사 현황만 제출

- 2) 교육(지원)청은 각급학교의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요청 절차의 적정성 점검
- 3) 지원 사유 소멸 즉시(지원 대상학생의 전출, 졸업 등) 특수교육실무사 재배치 요청

다. 특수교육실무사의 자격 및 역할

- 1) 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②항)
- 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에 의한 복무 및 규정 준수
- 3)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①항)
 - 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지원 역할 담당
 - * 중도중복장애 학생 1~2명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이 해당
 - ※ 방과후학교 지원은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내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지원 가능(2026년 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 교수학습활동, 개인육구, 적응행동의 구체적 지원 내용은 58쪽 참조
 - 나)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등을 대리할 수 없음
 - 다) 단, 교육감으로의 채용권 전환(2013. 9. 1.) 이후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로서 당사자와 협의하여 단순 업무 보조가 아닌 정규직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고유 업무 부여 등 **각급학교의 형편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분장 가능함**
 - ※ **업무분장 시 특수교육실무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
 - 라) 업무분장 가능 내용

지원 영역	업무 내용
교수·학습 활동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육구	◦ 용변 및 식사 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등
적응행동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타	◦ 각급학교의 형편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분장에 의해 부여된 업무

- 마) 학교장 및 교사는 특수교육실무사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활동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여 상호 존중 및 협력

라. 활동 및 복무 관리

1) 학교(급)별 관리 및 업무담당자

지원학교		배치·활동	관리자	업무담당자
일반 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학급	학교장	학급 담임교사
	특수학급 설치교	통합학급·특수학급	학교장	특수학급 담임교사
특수학교		해당학급	학교장	학급 담임교사

2) 지원 방법

- 가)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이 확정된 경우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서식4>’ 수립
- 동일학교 내에서 지원 대상 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대상 학생 전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학기 중 전입생 발생 시 수정 지원 계획 수립 후 지원
- 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시 특수교육실무사의 참여 권고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자 및 특수교육실무사 간 협의 후 참여 결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지도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로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확대 및 책무성 강화
- 다) IEP 기록과 학생 평가 및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또는 특별히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협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활동 내용(업무 일지)’ 작성
- 3) 복무 관리
- 가) 신규 채용·배치된 특수교육실무사는 3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지원 대상학생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자체 연수 실시
- 나) 특수교육실무사는 동계·하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17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다.
- 다) 학교장은 특수교육실무사와 협의하여 활동 시간 등을 고려, 근무 시간 내 30분의 휴게시간 부여(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 준수 및 복무 관리 철저)
- ※ 시교육청 재정지원과-8289(2018.2.23.)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근로시간 운영 계획 알림」
- 라) 교내 직원 모임 등에 참여를 보장하고, 특수교육실무사의 학생 지원, 업무 관련 출장 시 출장 조치 및 여비 지급
- 마) 교육활동 중 신체적 피해(3일 이내)가 발생 시에는 교직원 복지비로 지급 가능
- 바) 기타 복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 등에 따름

마. 2026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학교 현황

(기준: 2026.3.1.)

과정	구분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학교명(인원)	학교 수	배치 인원
유치원	동부	정덕유(1), 신용유(1), 건국유(1), 지한유(1), 새미르유(1), 효동유(2), 광주수창병설유(1), 광주서산병설유(2), 광주양산병설유(1), 광주학운병설유(1), 삼각병설유(1), 참미르초병설유(1)	12	14
	서부	봉산유치원(1), 진남유치원(1), 예향유치원(1), 빛고을유치원(1), 화운유치원(1), 효천다솜유치원(2), 방림유치원(1), 운수유치원(2), 고실초(1), 광주광천초(1), 광주극락초(1), 대촌중앙초(1), 성진초(1), 불로초(1), 송정서초(1), 수완초(1), 첨단초(1), 새별초(1)	18	20
초등학교	동부	광주수창초(1), 광주계림초(1), 광주서림초(1), 광주효동초(2), 광주남초(1), 광주동초(1), 광주동산초(1), 광주양산초(1), 광주산수초(1), 광주문화초(1), 광주학운초(1), 광주풍향초(1), 각화초(2), 태봉초(1), 오치초(1), 문흥중앙초(1), 율곡초(1), 문산초(1), 매곡초(1), 삼각초(2), 동림초(2), 용두초(1), 연제초(1), 양지초(1), 신용초(2), 건국초(2), 지한초(1), 참미르초(1)	28	34
	서부	고실초(1), 광주광천초(2), 광주극락초(1), 광주방림초(2), 광주백운초(1), 광주봉주초(2), 광주서초(1), 광주양동초(1), 광주월산초(1), 광주제석초(1), 광주효덕초(1), 광림초(1), 금구초(1), 금당초(1), 금부초(1), 금호초(2), 대반초(1), 대촌중앙초(2), 만호초(1), 목련초(1), 미산초(1), 성진초(1), 봉산초(1), 봉선초(1), 비아초(1), 산월초(1), 삼도초(1), 서광초(1), 선운초(2), 선창초(2), 성덕초(2), 송우초(2), 송정동초(1), 송정서초(1), 송정중앙초(2), 송학초(1), 수문초(1), 수완초(1), 신암초(2), 신창초(1), 어등초(2), 어룡초(2), 염주초(1), 영천초(1), 운남초(1), 운천초(1), 월계초(1), 월곡초(1), 월봉초(1), 유덕초(1), 유안초(2), 임곡초(1), 장덕초(2), 장산초(1), 정암초(1), 진만초(1), 진월초(1), 첨단초(1), 치평초(1), 큰별초(1), 평동초(1), 풍암초(1), 풍영초(1), 하남초(2), 화개초(1), 화정남초(1), 은빛초(1), 효천초(1), 새별초(1), 주월초(1), 빛여울초(1)	71	87
중학교	동부	광주충장중(1), 무등중(1), 운암중(1), 일곡중(1), 일동중(1), 지산중(1)	6	6
	서부	광산중(1), 광주중(1), 금당중(2), 봉선중(1), 산정중(1), 송광중(2), 송정중(1), 수완중(1), 신가중(1), 영천중(1), 운남중(1), 월계중(1), 월곡중(1), 월봉중(1), 주월중(1), 풍암중(1), 하남중(1), 수완하나중(1)	18	20
고등학교	시	광주여고(1), 광주자연과학고(3), 광주전자공업고(1), 상무고(1), 운남고(1), 첨단고(1), 장덕고(1), 수완고(1), 빛고을고(1)	9	11
특수 학교	시	광주선광학교(23), 광주선명학교(18), 광주선우학교(22), 선예학교(18)	4	81
		광주세광학교(8), 은혜학교(26)	2	34
계			168	307

구분	기관명	유	초	중	고	특	계
특수 학급	동부교육지원청	14	34	6			54
	서부교육지원청	20	87	20			127
	시교육청				11		11
	소 계	34	121	26	11		192
특수 학교	광주선광학교					23	23
	광주선명학교					18	18
	광주선우학교					22	22
	선예학교					18	18
	공립 합계					81	81
	광주세광학교					8	8
	은혜학교					26	26
	사립 합계					34	34
총계		34	121	26	11	115	307

※ 국립학교 5명 미포함: 전대사대부고 2명, 전대사대부중 2명, 광주교대부설초 1명

※ 수어통역사 4명 미포함: 광주선우학교 2명, 성진초 2명(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바. 인건비 지원

- 1) 인건비 관리 및 교부: 교육청 노동정책과
- 2) 지원 단가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의함

사. 연수 계획

- 1) 신규 채용자의 직무 연수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규임용예정자 기본교육: 35시간, 광주교육연수원
 -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30시간 이상 **의무 이수**(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과정 활용)
- 2) 직무 연수(매년)
 -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방학 중 원격연수로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 연수 (국립특수교육원 ‘[고급]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과정 활용, 최대 3일)

3) 학교 자체 연간 연수계획 수립·시행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 및 직무능력 향상 연수
- 연수 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등

5 행정사항

가. 특수교육실무사 신분 변동(또는 지원 사유소멸 등)이 있을 경우 **5일 이내 반드시 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및 중등특수교육과)

나.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관련 보고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제출대상	제출일	제출처
지원계획	2026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서식4	특수교육실무사 배치교	3.27.(금)까지 수립 후 학교 자체 보관(별도 요청 시 제출)	
지원현황	2026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현황	서식5	특수교육실무사 배치교	3.27.(금)	자료집계 제출

※ 지원 현황 제출: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일괄 제출

0000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희망 학교 실태

확인자: 교 장 (인)
교 감 (인)
작성자: 특수교사 (인)

■ 학교 현황

학 교 명		특수학급 수		특수교사 성명	
학생 수		장애등록자 수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학급	일반(완통)	특수학급	일반(완통)	지원인력 수	지역자활센터 지원인력
				2026	2027
				2026	2027
지원인력 지원학생 현황		전담		매일	
		예) 실무사1명(지원학생1명)		예) 사회복무요원1명(지원학생3명)	

■ 지원인력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순	학년 (2026)	학생명	성별	장애 현황			배치 희망 학생 행동 발달 수준				지원인력 주요 교육 지원 유형	비고 (특수학교는 학교급 기록)
				장특법 장애유형	복지카드 장애유형	중복 장애	신변 자립	의사 소통	통합학급 활동	특이사항		
예	3	홍길동	남	지적 장애	지적 장애	없음	보통	미흡	미흡	미흡	매일, 특수교육실무사	초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 ※ 작성요령
- 상급학교 진학 하는 경우 기존학교와 협의한 <서식 2, 3>을 토대로 상급학교에서 작성합니다.
 - 「지원인력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에는 모든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역자활센터 지원인력) 지원 현황을 기록합니다.
 -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된 학교: 소집해제 등에 따른 배정 신청 유무를 고려하여 예정 인원을 작성
 - * 지역자활센터 지원인력 배치된 학교: 해당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하여 2026학년도 배치 예정 유무를 작성
 - 특수학교의 경우 지원인력 업무 담당자가 작성하고, ‘일반(완통)’은 제외하며, 비고란에 학교급(유,초,중,고)을 기록합니다.

0000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희망서

1. 특수교육대상자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세)	예) 10.05.20 (13세)	장애 등록여부	등록, 미등록 중 선택
소속	0000학교	학교급			학년	2026학년도 기준	배치유형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선택
주소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신청 사유 (해당 영역 중복 체크 가능)							
지원 요청 영역	◎ 신변처리영역: 대소변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 교과학습영역: 통합학급 활동 지원() ◎ 문제행동영역: 문제행동 지원(), ◎ 사회성영역: 지원() ◎ 기타영역:						
지원 요청 영역의 현재 수행 능력							
지원 정도	지원 정도는 '전담', '매일', '가끔 필요시' 중 하나를 선택						
실무사 지원 기대효과							

2. 보호자 및 특수학급 교사

구 분	성명	관 계	비고
보호자		대상자의 ()	
특수교사		○○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기존학교 특수교사
특수교사		○○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상급학교 특수교사(상급학교 진학이 아닌 경우 본 행은 삭제)

위와 같이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00학교장

-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사본 첨부
-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유치원→초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기존학교와 상급학교 특수교사 간
유선연락 후에 기존학교에서 본 서식을 작성하여 내부메일로 상급학교로 발송하고, 상급학교에서는 기존학교에서 보내준 자료를
참고하여 본 서식을 최종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합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요구 학생 행동 평정표

학교명		학교급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선택					학 년	2026학년도 기준
학생명 (성별)		기존학교 특수교사						상급학교 특수교사	상급학교 진학이 아닌 경우, 공란으로 둘
영역	세부 영역	기준					수행 기준(보통 이하) 세부 내용 기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신변 자립	이동 능력(걷기 등)								
	대·소변 처리								
	밥(음식) 먹기								
	자립(착탈의, 위생 등)								
	자기 보호 능력 (위험 회피, 자기방어)								
의사 소통	자기 의사 표현력								
	타인 의사 이해력								
	적절한 질의 응답 능력 (언어적, 신체적)								
	지시(금지) 사항 이행								
통합 학급 활동	통합학급 적응 정도								
	과제 수행 정도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행동 심리 등 특이 사항	부적응(행동문제) - 이탈, 방해, 고성, 다동 등								
	부적응(행동문제) - 폭력, 자해, 반항 등								
	기타 고려사항 - 약물복용, 희귀질환 등 - 성(가정) 문제 등								
	기타 고려사항 - 중도중복장애 여부 등								

※ 작성요령

1. 교육(지원)청 현장방문 시 본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신중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변자립, 의사소통, 통합학급활동 영역은 잘 수행할수록 우수 방향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저조 방향으로 체크합니다.

3. 행동심리 등 특이사항 영역은 부적응 및 기타 고려사항이 크지 않을 때 우수 방향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저조 방향으로 체크합니다.

4. 특수학교의 경우 ‘통합학급활동’영역은 ‘학급활동’영역으로 바뀌어서 체크하고, 특수학교 초등은 담임, 교담, 특수학교 중등은 담임, 부담임이 함께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학교명	학교명 기록	학교급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중 선택
통합학급 담임	여러 학급의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통합학급 교사 모두 기록	특수교육 담당	특수학급: 특수학급교사 특수학교: 담임, 부담임(교담)
지원기간	2026.3~2027.2	특수교육 지원인력	특수교육실무사 이OO, 사회복무요원 김OO

I. 일과 시간별 지원 계획

구분	지원 대상 (성명, 학년반)	주요 지원 활동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 장소 (지원 인력명)
수업 이전				
오전 수업				
점심 시간				
오후 수업				
수업 이후				

2026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현황

2026년 3월 기준

1. 특수학급 서식

순	학교명	성명	성별	구분	본 고 배치일	총 경력 (사회복무 요원은 소급해제 예정일)	연수 이수 현황				비고
							국특원 전문성 (17차시)	원격연수 기본 (30차시)	이수 고급 (17차시)	기타 연수 ※ 특수교육 관련 연수명, 이수시간, 연수기관	

2. 특수학교 서식

순	학교명	성명	성별	구분	본 고 배치일	총 경력 (사회복무 요원은 소급해제 예정일)	연수 이수 현황				비고 (학교급/ 학년/반)
							국특원 전문성 (17차시)	원격연수 기본 (30차시)	이수 고급 (17차시)	기타 연수 ※ 특수교육 관련 연수명, 이수시간, 연수기관	
예) 1	광주OO학교	이OO	여	실무사	24.3.1.	13년 2월				장애학생의 이해, 30시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중2-3
예) 2	광주OO학교	김OO	남	사회복무	25.7.22.	27.1.22.	1			-	고1-2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연수(30시간) 미 이수자는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연수명(차시): [기본]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30차시), [고급]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17차시)

[기본]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30차시), [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17차시)

14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계획

※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으로 명칭 변경(법률 제11849호-2013.6.4.)

1

목적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등을 보조하는 인력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에 의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2

지원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3

기본 방침

가. 지원 대상자 선정은 보호자 및 지도교사의 지원 희망서에 근거하여 각급학교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다.

나.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1명일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한다.

라. 사회복무요원의 여학생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4

세부 지원계획

가. 임무

- 1) 학습활동,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 지원

※ 수업, 학생지도, 상담 등을 대리할 수 없고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 지도를 보조(특수교육실무사의 업무 수행)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 제2항 중 ‘협오’ 규정 삭제(병무청 훈령 제1775호, 2021.3.18.)

2) 특수교육대상자 활동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업무 지원

나. 복무 관리

1) 근거: 병무청훈령 제2058호(2024.5.1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 복무 분야: 교육문화-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유·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학생 활동 지원)

3) 복무 감독 및 관리

- 복무 감독: 교육(지원)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담당 부서

- 복무 관리

◦ 각급학교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복무 관리 담당직원은 의무적으로 월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3조 ②항)

- 지원할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 활용계획도 운영계획안에 포함 수립하여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특별휴가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활동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함(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5조 특별휴가)

- 특별휴가 대상: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참조

- 신청 방법: 특별휴가 신청일 1주 전까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복무 담당 부서로 공문 시행

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규정 참조)

1)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등 인건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 교육(지원)청 → 해당 학교에 예산 배정 → 개인 통장에 입금

※ 인건비는 2026년 병무청 지침에 의해 지원

※ 피복비는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규정된 피복 착용 권장)

2) 연수

- 신규 배치 요원의 직무연수 이수(배치 3개월 이내 실시)

◦ 16시간 이상 연수 의무 이수(국립특수교육원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17차시)’ 원격 연수 등 활용)

- 각급학교 단위 연수계획 수립·운영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할, 특수교육대상자 특성, 활동지원 방법 등 자체 직무교육 계획(장애인권 교육 연2회 이상 포함) 수립 후 월1회 이상 실시

※ ‘특수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가이드북’(광주, 2019.3.) 참고

- 교육지원청 단위 집합 연수 운영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연수 참여(학기별 1회)

3) 고충상담: 분기 1회 이상(복무 기관장)

4)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고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청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라. 2026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

(기준: 2026.2.1.)

구분	기관명	유	초	중	고	특	계
특수 학급	동부교육지원청	3	44	2		1	50
	서부교육지원청	1	31	3		1	36
	시교육청				11		11
	소 계	4	75	5	11	2	97
특수 학교	광주선광학교	28					28
	광주선명학교	20					20
	광주선우학교	28					28
	선예학교	21					21
	공립 합계	97					97
	광주세광학교	10					10
	은혜학교	16					16
	사립 합계	26					26
총계		218				2	220

5 행정사항

- 가. 교육지원청, 배치 학교에서는 실정에 맞게 자체 운영계획 수립
- 나. 배치 학교의 복무관리자는 사회복무포털(<http://sbm.mma.go.kr>)에서 매일 근태 관리
- 다. 복무사항 보고 철저: 복무사항 변동(근무지 이동, 소집해제 등)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5일 이내 보고
- 라. 특수학교에서는 2027년도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소요 신청을 병무청인 아닌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로 신청을 하여야 함('26년 2월에 추후 안내)
- 마.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 보고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제출대상	제출일	제출처
1	2026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신청	별도 안내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별도 안내	
2	2026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계획	서식1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3.27.(금)까지 수립 후 학교 자체 보관(별도 요청 시 제출)	
3	2026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연수 계획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3.27.(금)까지 수립 후 학교 자체 보관(별도 요청 시 제출)	
4	2026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현황	서식2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3.27.(금)	자료집계 제출
5	2026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결과	148쪽 서식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12.28.(월)	유/초/중: 교육지원청 고/특: 교육청
6	집행 잔액(10만원 이상) 반납		사회복무요원 배치교	별도안내	148쪽 참조

※ 지원 현황 제출: 특수교육실무사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일괄 제출

〈서식1〉 (학교 ⇒ 교육(지원)청)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계획

학교명	학교명 기록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선택
통합학급 담임	여러 학급의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통합학급 교사 모두 기록	특수교육 담당	특수학급: 특수학급교사 특수학교: 담임, 부담임(교담)
지원기간	2026.3~2027.2	특수교육 지원인력	특수교육실무사 이OO, 사회복무요원 김OO

I. 일과 시간별 지원 계획

구분	지원 대상 (성명, 학년반)	주요 지원 활동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 장소 (지원 인력명)
수업 이전				
오전 수업				
점심 시간				
오후 수업				
수업 이후				

II. 영역별 지원 계획

구분	지원 대상 (성명, 학년반)	주요지원 활동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 장소 (지원 인력명)
신변 자립				
의사 소통				
통합 학급활동				
행동심리 등 특이 사항				
기타				

III. 방학 중 근무 계획

구분	복무분야		재지정 기간	복무 내용	복무 형태
	현근무지	재지정 근무지			
여름 방학	예시) 장애학생활동지원 (특수학급)	예시) 일반행정지원 (행정실)	예시) 2026.00.00~2026.00. 00 (방학기간)	예시) 행정실 업무 지원	예시) 주간
겨울 방학					

- ※ 작성요령
- 지원대상이 1명 이상인 경우 일정을 조정하여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이 때 통합학급 담임이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성명을 기록합니다. (단, 특수학교에서는 담임교사, 교담(초등), 부담임(중등) 모두 성명을 기록함)
 - 일과시간별 지원 계획은 일과시간별대로 학생과 교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중 학생의 문제행동 관찰 기록 및 관리, 휴식시간 중 이동보조 등을 주요 지원활동으로 선택하고, 그 수행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영역별 지원 계획은 영역별로 학생과 교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학급활동 영역에서 과제수행 지원, 행동심리 등 특이사항 영역에서 부적응행동 지원 등을 주요 활동으로 선택하고, 그 수행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특수교육실무사와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인력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서 작성합니다.
 - 활용계획 I, II, III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해서 사용하십시오.

〈서식2〉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청)

2026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현황

2026년 3월 기준

1. 특수학급 서식

순	학교명	성명	성별	구분	본 교 배치일	총 경력 (사회복무 요원은 소급해제 예정임)	지 원 학급수	지 원 학생수	연수 이수 현황				비고
									국특원 전문성 (17차시) (30차시)	원격연수 이수 기본 (30차시) (17차시)	고급 (17차시) (17차시)	기타 연수 ※ 특수교육 관련 연수명,이수시간,연수기관	

2. 특수학교 서식

순	학교명	성명	성별	구분	본 교 배치일	총 경력 (사회복무 요원은 소급해제 예정임)	지 원 학급수	지 원 학생수	연수 이수 현황				비고 (학교급/ 학년/반)
									국특원 전문성 (17차시) (30차시)	원격연수 이수 기본 (30차시) (17차시)	고급 (17차시) (17차시)	기타 연수 ※ 특수교육 관련 연수명,이수시간,연수기관	
예) 1	광주OO학교	이OO	여	실무사	24.3.1.	13년 2월	1	4				- 장애학생의 이해, 30시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중2-3
예) 2	광주OO학교	김OO	남	사회복무	25.7.22.	27.1.22.	1	3	이수			-	고1-2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연수(16시간) 미 이수자는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연수명(차시): **[기본]**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30차시), **[고급]**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17차시)

[기본]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30차시), **[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17차시)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 2 특수교육 관련 연수(안)
- 3 기타 행정사항

1) [전국]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일 시: 2026. 5. 12.(화) ~ 5. 15.(금)
- 장 소: 부산광역시 일원
- 주 최: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기종목: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조정, e스포츠 등 17종목(예정)
- 참석대상: 전국 장애학생(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특수교육교원 등

2) [전국] 2026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일 시: 2026. 9. 8.(화) ~ 9. 9.(수)
- 장 소: 미정
- 주 최: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
- 후 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
- 참석대상: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3) [전국] 2026년 전국 장애영유아교육 워크숍

- 일 시: 7월경(예정,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 장 소: 경남(예정)
- 주 최: 교육부
- 주 관: 경상남도교육청
- 주요내용: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우수사례 발굴 및 유치원 운영 사례 공유 등
- 참가대상: 특수교육교원,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4) [전국] 2026년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 일 시: 2026. 10. 7.(수) ~ 10. 8.(목)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 최: 교육부
-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대상영역: 발달장애(지적·자폐성·정서·행동)
- 참가대상: 전국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지적·자폐성·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5) [광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2026 장애 인권 주간」운영

- 기 간: 2026. 4. 13.(월) ~ 4. 24.(금), 2주간
- 대 상: 각 기관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전체
- 주요내용: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교육감 서한문 게시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식 개선 기여 유공자 표창

6) [광주] 2026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 일 시: 2026. 4. ~ 11.
- 참가대상: 특수교육교원, 통합학급 담임교사
- 주요내용: 연구발표대회 참가 계획서 제출, 사례 발표 및 등급 표창

7) [광주] 2026년 광주장애학생 정보경진 및 e스포츠대회

- 일 시: 2026. 6.(예정)
- 참가대상: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 주요내용: 정보경진대회 및 e스포츠대회 실시, 최우수 학생 및 지도교사 표창

8) [광주] 2026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한마당

- 일 시: 2026. 6.(예정)
- 참가대상: 특수학급 유·초·중·고 학생, 특수교육 교원 및 일반 교원 등
- 주요내용: 인권보호 관련 부스 체험, 캠페인, 공모전 전시 등

9) [광주] 2026년 꿈꾸는 문화예술제

- 일 시: 2026. 11. 6.(금) 14시
- 장 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 참가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일반학생(10팀 예정)
- 주요내용: 학교 교육활동 등을 통하여 기른 문화예술적 기량 발표

10) [광주] 제4회 광주수업페스티벌

- 일 시: 2026. 11.(예정)
- 장 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예정)
- 참가대상: 특수교육 교원 및 일반 교원 등
- 주요내용: 통합교육 연구회 및 특수교육관련 교과 연구회 등

02

특수교육 관련 연수(안)

2026 연수 운영 내용(예정)

유형	대상	주제		과정명	시기	시간	인원
직무 연수	교원	교수 학습	교육과정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설계 · 운영 역량 강화	5월	2	30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역량 강화Ⅰ	5~6월	2	30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역량 강화Ⅱ	10~11월	2	30
			수업	특수교사, 수업 성장 더하기(1과정)	5월	3	40
				특수교사, 수업 성장 더하기(2과정)	6월	3	40
				특수교사, 수업 성장 더하기(3과정)	7월	3	30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반 맞춤형 수업 코칭	8월	3	30
			미래교육	AI 디지털 교육자료 특수 교과 교원 연수	9~12월	4	80
			진로 · 진학	장애학생 진로 · 진학 역량 강화(1과정)	5월	2	20
		장애학생 진로 · 진학 역량 강화(2과정)		9월	2	20	
		학교(급) 경영	건강장애학생 담당 교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3월	2	90	
			통합학교 교(원)장 · 감 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 1, 2기	6월	3	700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통합교육의 실제	8월	2	30	
			학급 경영 로드맵(특수학급편/특수학교편)	9월	3	40	
		생활 교육 및 상담	행동중재	정신 약물 특성 이해를 통한 교실 속 관찰과 지원	10월	2	30
				교원 대상 행동중재 역량 강화	7~9월	3	90
			장애 공감 및 인권	학교 내 장애인권 침해 예방과 갈등 관리	6월	2	30
				경계 없는 교육, 장애학생 맞춤형 소통법	10월	2	30
				직무능력	진단 · 평가 도구 활용의 실제	2월	3
자율 연수	교원	직무능력	순회교사 진로 · 직업 · 전환 실무 역량 강화	9~10월	20	20	
	지원 인력	직무능력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Ⅰ	7~8월	3	170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Ⅱ	11~12월	2	170	
	보호자	행동지원	보호자 대상 행동지원 역량 강화	10~11월	2	120	
		진로 및 직업	보호자 진로 · 진학 역량 강화	9월	2	20	
현장 기획 직무 연수	교원	교육과정 · 수업	5개 과정 직무연수 개설 예정(추후 공문 안내)				
		생활교육 · 상담					
		문화 · 예술 · 체육					
		진로 · 진학 · 직업					
계		직무연수 19과정(1,410명), 자율연수 5과정(500명), 총 24과정(1,910명)					

※ 연수 과정 세부 계획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시기 및 인원과 운영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음.

03 기타 행정사항

1) '2026년 특수교육통계' 실시: 2026. 4.

- 대 상: 각급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 내 용: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및 교원 현황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
- 방 법: 나이스 통계 자료 입력 및 검토, 제출 기한 준수
- 주 관: 국립특수교육원
- 비 고: 조사 자료 확인 철저 및 기한 준수

2) '202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2026. 6.

- 대 상: 각급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 내 용: 특수교육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국회 제출
- 방 법: 엑셀 서식 자료 입력 및 검토
- 주 관: 국립특수교육원
- 비 고: 조사 자료 확인 철저 및 기한 준수

3)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

- 대 상: 특수교육대상학생(초4~전공과), 보호자, 교원
- 기 간: 2026. 4. ~ 9. (예정)
- 내 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관한 사항
- 방 법: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대면조사 실시
- 주관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및 제출

- 대 상: 각급학교(내용에 따라 국립학교 일부 포함), 교육지원청
- 내 용: 운영계획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운영, 각종 서류(신청서 등) 제출
- 비 고: 운영계획에 따른 계획 수립 시기 및 내용 확인, 서류 제출 기한 준수
※ 학교급에 따른 제출처(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등) 확인 후 제출

5)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적극 참여

- 대 상: 일반학교 교원, 특수교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
- 내 용

연수 기관	연수 방법	연수 유형	연수 시기	비고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출석	직무연수	연중	매월 공문 안내
광주교육연수원	원격	직무연수	연중	홈페이지 및 연수계획 확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출석	직무연수, 자율연수	연수계획 참조	



2026학년도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이 책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자료마당/ 부서별 공개자료실/중등특수교육과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sc.gen.go.kr>)/ 공지사항



**2026학년도
광주특수
교육운영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